
농림부
연구용역 보고서

청과물유통법 도입방안 연구

2006. 11.



농식품신유통연구원

www.newma.re.kr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청과물 유통법 도입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1월

연구기관: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 구 진: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채성훈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연 구 진

김 동 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채 성 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유통환경 변화와 농안법 체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법체계는 농안법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세부 법률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현행 농안법은 품목 중심의 유통기능을 위주로 한 법도 아니고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법의 형태도 아닌 혼합 형태로 법의 포괄 범위가 너무 넓음.
- 현행 농안법은 과거 청과물유통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해온 도매시장만을 규율하고 있어 신유통의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도매시장의 설치 및 관리, 산지유통 활성화 및 생산자 지원, 불공정거래 제한 등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농안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같은 기금관련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함.
- 일본의 경우 중앙도매시장법과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등 유통관련 법과 과수농업특별조치법, 채소생산출하안정법 등 수급안정 관련 법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음.
- 아울러 우리의 농안법은 품목 범위가 농수산물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부패하기 쉽고 표준화가 어려운 청과물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 미국의 경우 청과물은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축산물은 Packers & Stockyard Act, 곡물의 경우 United States Grain Standards Act에 의해 품목별 유통을 관리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에 있어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산지직거래와 그 외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표 1-1).

표 1-1. 청과물의 유통경로별 거래량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천톤, %)

구 분	1998	2000	2002
도매시장	5,544(48.2)	6,161(46.2)	6,367(48.5)
- 공 영 계(A)	4,607(40.0)	5,275(39.6)	5,642(43.0)
공관장	1,147(10.0)	1,319(10.0)	1,483(11.3)
민간법인	3,460(30.0)	3,956(29.6)	4,159(31.7)
- 법 정	184(1.6)	136(1.0)	122(0.9)
- 공 관 장(도매시장미입주)	753(6.6)	750(5.6)	603(4.6)
종합유통센터·민간유통센터	425(3.6)	871(6.5)	1,467(11.2)
- 종합유통센터	224(1.9)	444(3.3)	702(5.4)
- 대형유통업체	201(1.7)	427(3.2)	765(5.8)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713(6.2)	1,022(7.7)	1,424(10.8)
- 직거래	713(6.2)	1,013(7.6)	1,343(10.2)
- 전자상거래	-	9(0.1)	81(0.6)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4,828(42.0)	5,280(39.6)	3,879(29.5)
총 거래량	11,510(100)	13,334(100)	13,137(100)

* 자료: 농림부.

- 농산물유통에서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도매시장외 거래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외 거래에 대한 관리와 생산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도매시장 외 거래가 증가할 경우 교섭력이 열위에 있는 생산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존 도매시장은 효율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제도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
 - 반면, 도매시장 외 거래는 순수하게 거래당사자간 상대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과정이 불투명하고 생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시정할 장치가 부족함.
- 현행 농안법 체계 하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유사도매시장, 직거래 등 비제도권 시장의 유통물량이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유사도매시장에서는 정부가 별다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정책의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농산물 포장화와 같은 유통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매시장 내 거래는 물론 도매시장 외 거래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제도권 물량의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PACA법 체계와 청과물 유통법 도입 방향

- 최근의 농산물 유통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농안법 체계를 개편하여 미국의 PACA(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와 같은 청과물유통관련 기본법을 분리, 제정할 필요가 있음.
- PACA는 청과물의 공정한 거래를 이루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되었으며, 허가제를 기초로 하여 신선 청과물과 냉동 청과물의 매매업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게하고, 거래에 따를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절차를 제공하는 미국 청과물유통의 기본법임.

- 새로이 제정되는 청과물 유통법에서는 제도권 및 비제도권 시장을 포괄하여 청과물 거래 시 분쟁해결절차, 피해구제방안, 대금회수 방안 등을 명시하여 출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유통업자 신용평가제도, 표준규격화, 유통정보화 등 유통조성 기능의 강화 방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청과물 유통법이 제정되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조성 기능을 강화 시킴에 따라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선진 사례와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청과물 유통법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 첫째, 미국의 PACA 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 둘째, 유통참여자간 거래관행을 조사하여 청과물 유통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을 제시하며,
 - 셋째, 주요 항목에 대한 심층 검토와 법조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청과물유통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3. 주요 연구 내용

- 속지주의적 입법이 아닌 기능중심의 입법을 택한 대표적 사례인 미국 PACA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생산자, 산지 출하조직, 소비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세한 거래관행, 계약위반 또는 불공정 행위 유형, 제도적 수요 등을 파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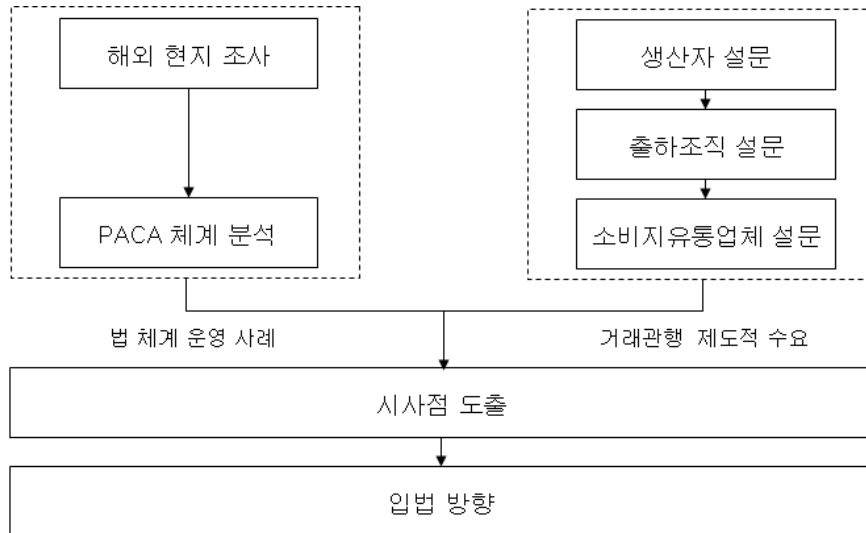
- 상기 사항을 토대로 한국 상황에 맞는 입법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제1 단계로 현행 농안법을 일부 개정하여 PACA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제2단계로 청과물유통법의 전면적인 제정 방안을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4. 연구 방법

- 미국의 PACA 체계분석을 위해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고 한국 상황에 맞는 시사점 도출을 위해 연구진의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음.
- 거래관행 조사를 위해 생산자, 출하조직, 소비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산지 출하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생산자 조사는 225명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2006년 9월에 전화를 통해, 산지 출하조직 조사는 109개소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에 전화와 팩스를 통해 수행되었음.
 - 소비자 유통업체 조사는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에 전화와 팩스를 통해 수행되었음.
- 농안법 개정 및 청과물유통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현실성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5. 연구 체계

< 연구체계도 >



제 2 장. 미국 PACA의 주요 내용

1. PACA의 개념

- PACA(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는 신선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거래 양측에 대해 거래조건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재판 이전의 공식/비공식적 분쟁해결 절차를 제시하는 법률임.
- 재원은 PACA 운영에 따르는 행정비용 부과로 충당되며 정부의 예산지원은 없음.
 - 주된 재원은 면허 취득시 수수료, 법 위반시 과태료, 검품시 수수료 등으로 확보됨.

2. PACA의 내용과 실행

가. 핵심이슈

- 면허와 신용정보의 확산이 거래참여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하게끔 하는 핵심적인 수단임.
 - 연방법에 따라 거의 모든 거래자들이 PACA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이 면허가 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사항임.
 - 불공정 거래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불공정 사항이 Blue Book을 통해 업계에 알려지므로 해당 산업에서 영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함.

표 2-1. PACA의 핵심 내용

항 목	핵심내용	의의
면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준이상 모든 유통, 수송, 가공업체는 면허를 취득해야함 · 업체 정보는 Blue book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의 정지/취소로 영업이 제한되므로 불공정거래 제한 · 업체정보의 확산으로 유통활성화
분쟁조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필요한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분쟁해결로 시간지체에 따른 손실증가 방지
거래조건 및 용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물 유통에 필요한 거래 용어를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차이에서 오는 분쟁 발생의 소지를 차단
검품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물 유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기록함. · 기타 상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직권조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의 신속해결을 위한 증빙 확보 · 공정거래 보장을 위한 상시적 관리수단

-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및 해결 기구는 PACA 면허제도에 이은 2차적인 공정거래 조성 장치임.
- 면허제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PACA에 따라 신속한 해결절차가 제시됨.
- 거래조건 및 용어의 명확한 적시는 분쟁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킴.
- 검품은 분쟁해결에 있어 주요 증빙의 기능을 수행함.

나. 면허제도

□ PACA에 따른 면허제

- 2천파운드/日 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와 개인은 면허를 취득해야함.
 - 규율 대상이 아니라도 자율적으로 면허를 신청할 수는 있으며 면허 유효기간 동안 동일한 의무사항이 발생함.

- 면허취득의 예외
 -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
 - 23만불/年 이하로 거래하는 냉동청과물 브로커
 - 외식업체가 아닌 대부분의 소규모 식당들
 - 23만불 미만을 구입, 판매하는 소매업자
 - 동일 주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청과물을 구입하는 가공업자

- 면허 취득의 제한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PACA위반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및 그와 책임 있게 연루된 자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청문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 제한 사항들이 해소된 후 1년까지는 면허발급이 중단되며 2년 내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면허가 발급되고 3년부터 면허 취득의 제약이 없어짐.

- PACA면허에 따른 책임
 - 거래자들이 계약사항을 준수토록 요구함.
 - 판매자들은 정해진 수량/품질에 맞추어 선적해야하고 구매자측은 계약사항을 충족하는 한 선적을 받아들여야하며 생산물의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결제해야함.

□ 면허 사항 및 기타 법 위반에 따른 징계의 효과

- USDA는 반복적으로 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업체 또는 업자에 대해 처

별할 수 있음.

- 처벌은 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최고 수위의 조치)까지 가능하지만 그 대신 농무부장관이 최고 2천 달러까지 각 위반행위 또는 위반일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조치할 수 있음.
 - 또한 PACA 면허 없이 영업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12백 달러까지, 위반일수에 대해 350달러/일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행을 위한 법정명령도 가능함.
- PACA 면허정지 혹은 취소에 따른 영업과 고용 제한
 - 면허보류 혹은 취소에 따라 해당 업체 및 책임 있는 개인도 자동적으로 면허 및 고용상에 제약을 받게 됨(개인은 업체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자, 관리자, 기업운영의 파트너 등을 포함함).
 - 면허정지 동안 영업도 정지되며 관련 개인도 면허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다른 업체, 관련분야에서 종사할 수 없음.
 - 면허정지 및 취소 1년이 경과하고 채무가 변제된 후 개인들은 면허를 가진 업체에 고용될 수 있음.
 - 2년 경과 후 해당 기업도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만일 불법적인 취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제한은 연장될 수있음.
 - 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 과거 2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및 고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면허취소 후 1년간은 어떠한 면허 업종의 취업도 불허)
 - 즉, 면허 취소로부터 2년 경과 후 해당 개인과 업체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새로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없이도 면허 취득이 가능.

- 면허 수수료는 연간 550달러임.
- 9개의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1개소 초과당 200달러 요금 부과하며 연간 총 면허요금이 4,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소매업자나 식품도매업자는 1회 100달러의 요금을 납부하고 갱신 요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 Blue Book의 발간과 신용평가

□ 개요

- 미국에서 청과물 거래는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의 직거래는 물론이고 도매시장 경우 시에도 상대거래(private treaty)에 의존
- 대금도 우리와 달리 별도의 정산 창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에 지불
-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신용 파악이 거래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
-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평가뿐 아니라 신규거래처 개발시에도 평가가 매우 중요

- 청과물 산업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중요함
- 청과물의 부패성
- 시장 상황의 지속적인 변화
- 구두 계약의 보편화
- 품질의 계절적 변동이 큼
- 정시 배송의 필요성
- 운송문제 발생 여지 및 운송 중 품위저하의 문제점 발생
- 거래에 있어서 기술적, 법적 문제점 발생 가능성

- 금융상의 문제점 발생
 - 대금지불의 안전성이 중요함.
 - 마진률이 낮고 회전률이 높은 산업적 특성
- 미국 청과물 유통산업에서 양대 평가자료는 The Blue Book과 The Red Book임.
 - The Blue Book과 The Red Book 발간은 PACA에 의거한 사항은 아니며 USDA가 자체적으로 외부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임.
 - 면허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면허의 취소/정지를 신속히 시장에 알려야 추가적인 불공정 거래 발생이 방지될 수 있음.
 - 취급품목, 거래규모, 거래상 도덕성 등이 수록되는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조성 및 탐색비용 절감과 같은 유통활성화 효과가 있음.
- The Blue Book과 The Red Book은 업체 리스트와 평가 방식 등이 유사하나 관련 업체들은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구독하는 것이 일반적임.
 - Blue Book 과 Red Book 발간 업체는

The Blue Book
 Producer Report Company
 315 West Wesley Street
 Wheaton, Illinois

The Red Book
 Vance Publishing Corporation
 P.O. Box 2939
 Shawnee Mission, Kansas, 66201

- Blue Book을 발간하는 Produce Reporter Co.는 1901년부터 청과물 업계의 신용도 평가자료 발간
 - 신용도 평가 대상업자는 청과물 거래당사자 뿐 아니라 운송업자, 농자재업자, 중개인(broker) 등으로 다양함.
 - 면허를 취득한 모든 업체정보는 책자로 발간되어 회원인 생산자, shipper, 유통업체간에 공유될 수 있음.
 - 책자 발간 업체인 “Produce Reporter Company” 에 의해 연락처, 업체명은 물론 업종, 취급규모, 취급상품, 신용등급, 도덕성, 결제일 등이 수록됨.

- 필요 정보는 발행업체 자체 조사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 증빙제공으로 수집됨.
 - 도덕성 정보는 발행업체의 “Trade experience survey” 를 통해 수집되며 재무정보는 결산서를 기초로 가장 최근의 세금 납부 상황, 자발적 회계자료의 제출 등으로 수집됨.
 - 책자로는 연간 2회 발행되나 주별, 월별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수시로 업데이트됨.

- 청과물 업자들은 Blue Book의 리스트와 신용평가를 결과를 참조, 거래 상대방의 취급상품과 신용도 등을 파악하여 신규거래 개설 및 거래유지 여부를 판단함.

- Produce Reporter Co.는 Blue Book 뿐 아니라 다양한 부속자료를 발간하고 거래관련 서비스를 제공(일부 부가서비스에는 요금 지불)함.
 - Blue Book은 4월 1일과 10월 1일, 일년에 두 차례 발간
 - Blue Book에서는 업체 리스트 및 평가결과 뿐 아니라 청과물 거래관행, 운송업자 거래관행, 정부규제, 정부기관 리스트, 청과물관련 협회 리스트, 청과물 정보, 해외시장정보, 농자재 업체 정보 등 청과물관련

참고자료 제공

- 최근 Blue Book이 CD-ROM 형태로 발간(Electronic Blue Book)됨.
 - 단기적인 변화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Weekly Credit Sheets를 발간 (사업의 변화, 직원의 변화, 새로운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매주 제공) 함.
 - 아울러 FAX, 위성 등을 통한 update 서비스도 시행
 - 이외에도 분쟁 발생시 조정기능 및 대금회수 업무 수행
 - 우수 거래자에 대한 인증서비스도 수행
 -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및 일부 외국업체 정보도 제공
- Blue Book의 업체리스트와 평가의 중요성
 -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여 청과물산업의 이익 극대화
 - 신규거래처를 개발할 때, 기존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Blue Book의 업체 리스트와 평가 등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평가 항목

- Blue Book에서의 업체 평가는 기본적으로 6가지 차원(6 point rating)에서 이루어짐.
 - 업종(classification)
 - 사업규모(volume)
 - 취급상품의 종류(commodities)
 - 신용한도(credit worth rating)
 - 도덕적 책임감(moral responsibility)
 - 대금결제기간(pay description)

□ 업종 분류

- 산지출하자(shippers, S)
 - 산지에서 자기의 상품이나 남의 상품을 출하하는 업체나 상인

- 반출상(distributors, Dsr)
 - shipper나 다른 distributor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다른 지역에 반출하는 업체나 상인
 - 대부분의 경우 상품을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음

- 도매상(receiver, R)
 - 소비지에서 차량단위로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

- 위탁상(commission merchant, C)
 - 위탁 형태로 상품 매매를 대리

- 중개인(broker, B)
 - 판매시 중개기능 수행
 - 판매중개인은 shipper를 대리, 구매중개인은 원격지의 바이어를 대리

- 중매인(jobber, J)
 - receiver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소규모로 판매

- 외식업체 납품상(foodservice, Fdsv)
 - 외식업체나 학교, 기관 등에 청과물 납품

- 종합도매업체(wholesale grocers, Wg)
 - 소매상에 공산품은 물론 청과물을 납품

□ 사업규모

- 연간 취급량(차량단위)으로 표현

□ 상품 종류

-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를 약자로 표현(중요도 순으로 나열)

□ 신용한도(credit worth rating)

- 신용한도(Credit Worth)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며, 신용한도는 다음의 요인에 의해 결정
 - 지불 의무를 수행할 정도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부
 - 재무 상태의 일반적인 건전도(부채비율 등)
 - 기타 재무 및 신용 관련 요인 고려
- 신용한도 평가시 고려요소
 - 운전자본의 크기가 중요: 지불 의사나 약속보다 현금 확보가 중요
 - 고정자본 투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음: 그 이유는 고정자본은 대금 지불로 신속히 전환될 수 없기 때문
 -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도 신용한도 평가시 고려
- M단위로 표시, M은 \$1,000을 의미
 - 예를 들어 50M은 \$50,000의 신용한도를 나타냄
 - M에 대한 평가가 보고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임.
 - 경우에 따라 특정 코드로 표시(예, 144, 143 등)

□ 도덕적 책임감(moral responsibility)

- 도덕적 책임감은 성실성(integrity), 능력(ability), 지불의사(pay)로 평가
- 도덕적 책임감 평가의 중요성
 - 거래 업체의 비밀 평가에 의해 결정
 -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정직한 거래당사자는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짐
 - 분쟁 발생 시에는 도덕적인 태도가 중요
- 평가 척도
 - XXXX : 최우수(excellent)
 - XXX : 우수(good)
 - XX : 보통(fair)
 - X : 불량(poor)
- XXXX 평가 기준
 - 최고 수준의 신뢰도 및 도덕적 책임감 표현
 - XXXX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고, 신뢰성 있게 거래를 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대금지불관행에 대한 평가도 B 이상 되어야 함
 - 재무상태에도 문제가 없어야 함
- XXX 평가 기준
 - 업무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한 상태를 표현하며 업종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소 상이함.

① Shipper

- 상품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고 윤리적
- 상품을 진실 되게 표현
- 등급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상품 선적시 주의를 기울임.
- 선적 일자를 정확히 지킴
- 시장 상태에 관계없이 출하계약을 준수
-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거래당사자에게 보고
- 타당한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리

② Distributor

- 대부분의 Shipper 항목 적용
- 판매대금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지불 기한을 정확히 준수

③ Receiver

- 상품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고 윤리적
-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계약된 등급의 상품을 수취
- 교묘하게 계약 조건을 어기지 않음
- 문제 발생시 신속히 의사전달
- 불가항력적인 경우 로스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 판매대금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지불 기한을 정확히 준수

④ Commission Merchant

- 대부분의 receiver 항목 적용
- 진실되고 완전하게 판매량 정보 제공
- 시장상황 악화시 위탁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려고 하지 않음.

⑤ Broker

- 판매 의뢰자의 이익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대변

- 시장 상황을 잘 공시
 - 의심가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장려하지 않음
 - 거래의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 필요한 경우 판매확인증 발급
 -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금회수 및 송금
 - 문제 발생시 신속한 의사전달
 - 타당한 클레임에 대해 신속한 처리
- XX과 X 평가기준
 - 낮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감 표현

□ 대금결제기간(Pay Description)

- 대금결제기간은 송품장(invoice) 일자(혹은 송품장 발송일자)와 실제 대금 수취간의 기간을 의미
 - Blue Book의 대금결제기간 정보를 통해 판매자들은 대금회수기한을 예상할 수 있음.
- 대금결제기간의 평가 등급
 - AA : 7일이내 대금 지불
 - A : 14일 이내 대금 지불
 - AB : 21일 이내 대금 지불
 - B : 28일 이내 대금 지불
 - C : 35일 이내 대금 지불
 - D : 45일 이내 대금 지불
 - E : 60일 이내 대금 지불
 - F : 60일 이상이며 대금지불 기간 불확실

- 대금 결제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 송품장의 지연 도착
 - 대금 지불에 따른 분쟁이 늦게 해결되는 경우
 - 상품 도착시 지불대금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다) 평가 방법

- 도덕적 책임감
 - Produce Reporter Co.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경험 조사결과(trade experience survey)에 의해 평가
 - 특정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평가하는 시스템
 - 당년도 조사결과와 평균치와 과거 수치를 종합하여 평가 등급 결정
 -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거래처 리스트를 Produce Reporter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가능하면 많은 거래처로부터 조사결과를 얻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
- 신용한도
 - 업체별 신용한도는 회계연도말에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해 Produce Reporter Co. 가 평가
 - 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연방세금 보고서 제출시 작성된 대차대조표 이용

표 2-2 Blue book 수록사항 예시

예 시	내 용
BB # 106351 SYKES CO., THE. P.O. Box 1057 (85628-1057) 3 Ojo Corte, Rio Rico Industrial Park Long Dist. 520 281-2520 FAX 520 281-0998 E-mail: Sales handled by Bill Sykes & Edgar Condes Bernie Samaniego, Traffic Manager Irene Castillo, Office Manager PACA License # 840406 SDstrB1250 GsFV Mix250M XXXX B	일련 번호 업체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 PACA 면허 번호 업종 및 취급 품목 거래규모, 도덕성, 대금결제기 간

* 조사상황에 따라 브랜드명, 저장창고의 위치, 자회사,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주소 등이 기록될 수도 있어 업체마다 상이함.

3. 불공정 거래와 해결 절차

가. 불공정 거래의 정의

- 불공정거래의 정의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물량의 인도 또는 구매의 거부
-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생산물의 선적 후 미지불 및 정산 지연
- 확보된 생산물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처분, 덤핑판매, 폐기
- 신속하고 완전한 지불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확성이 결여된 회계 처리
- 등급, 품질, 수량, 무게, 州(주), 원산지의 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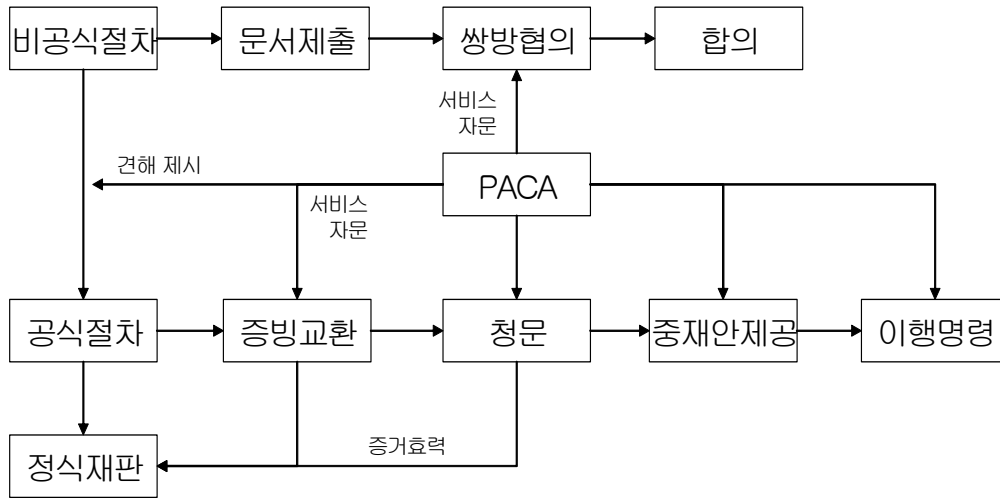
-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필요한 검사기록 제공거절
- 고용이 금지된 사람을 고용한 경우
-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배치된 PACA branch office 가 해결절차를 주도함.

나. 불공정 거래 신고시 해결절차

□ 법적 요구사항

- 클레임 제기의 상대방은 면허있는 업체 혹은 면허에 따라 위임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함.
 - 품목이 PACA가 요구하는 신선/냉동 과일 또는 채소류이어야 함
 - 거래가 州(주)간 혹은 외국과의 거래이어야 함.
 - 클레임 제기자는 거래 상대방의 행위가 PACA가 금지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함.
 - 불만제기는 거래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기간 또는 지불만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하고 문서상 증거를 갖추어야함. (계약서, 청구서, 중개인의 메모사항, 합의서, 회계기록 등 계약의 본질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클레임의 제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 수준임.
 - 비공식 제기: 60달러
 - 공식제기: 300달러(환불가능)

그림 2-1 클레임의 해결 절차



□ 비공식 클레임

- 당사자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토록 우선적으로 양자간 조정(합의)를 제안함.
- 법 시스템 밖에서 양자간 견해 차이를 해결하는 출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양자간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중립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해·환기토록하는 기회를 제공
- 양자간 조정은 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도 가능한데 PACA 직원들은 이러한 조정방법에 대해 훈련받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 같으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비공식 클레임의 처리는 [조정가능성 검토→상대방의 의견제출 및 PACA에 의한 조사→양자합의]의 순으로 진행됨.
- 요구서류의 제출을 시작으로 PACA 사무소(Administration)는 클레임이 적절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고 분쟁이 조정에 적합한지를 결정함.

- 클레임이 제기되면, 반대 측은 조정에 따를 의지가 있는지, 해당 분쟁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 결정해야함.
- 만일 사안이 회계상 정확한 계산을 요구한다면 상대방 없이 PACA사무소가 임의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당사자간 조정이 거절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PACA 사무소가 양측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
- 즉, 당사자 간 합의권고에 이어 협의에 의한 해결 기회를 다시금 부여하고 있음.
- 비공식적 절차로 문제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제소자는 공식클레임 제기가 가능함.

□ 공식 클레임 제기

- 공식 클레임은 수수료 300달러, 클레임 제기 원본 및 세 개의 사본으로 제출되어야함.
- 해외 거주자에 의해 제기된 공식 클레임을 해결해야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은 두 배 즉 600달러임.
- 보증금 요구는 제소자 거주국이 미국 주민에 대한 클레임을 처리한다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현재로서는 캐나다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국가임).
- PACA 사무소는 클레임 상대방(respondent)에게 20일내에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
- 이때 USDA에 의해 준비된 조사보고서가 첨부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함.

- 클레임으로 제기된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클레임이 제기된 금액을 지불토록 요구하는 명령이 발부될 것임.
- 답변은 (금액의) 상쇄 혹은 반대주장, 구체적인 인정, 거부 혹은 제소자의 근거 없음 등 자기방어를 위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어야 함.
 - 만일 해당사항에 지식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어야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제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의사표명을 해야 함.
 - 답변 제출도 세 부를 필요로 함.
- 책임의 부분 인정도 가능
 - 만일 답변 내용들이 제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USDA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지불토록 하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 청문

- 3만 달러를 넘는 손실금액이 문제될 때, 양측 혹은 일방은 구두청문을 요구할 수 있음.
- 3만 달러를 넘더라도 구두청문이 요구되지 않거나 3만 달러이내라면 통상적인 해결규칙(Rules of Practice)에서 제공되는 처리절차에 준하여 진행될 것임.
- 청문일정에 앞서, 양측은 조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환장이 발부됨.
- 조서 제출 기한이 경과된 후, 검사관(examiner)이 청문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장소는 피소자(respondent)의 사업장 인근으로 지

정됨.

- 청문에서는 진술서가 작성되며 검사관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준비함.
- 보고서는 제소자의 손실금액 혹은 (여러 정황을 따졌을 때) 제소의 근거 없음에 대한 최종지시(order)의 형태로 작성됨.

□ 청문 후 공식 클레임의 처리 절차

- 청문 후 양측은 의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회신할 수 있음.
- 양측의 변론은 가능하다면 농무성에 의해 작성된 검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음.
 - 제소자의 공개적 의사표명: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청한 후 20일 이내에 제소자는 적절한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증빙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답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다면 제소자도 그 증빙이 근거없다는 내용의 증빙을 다시 첨부하여야함.
 - 피소자의 의사 표명: 피소자의 응답은 제소자의 공개 의사 표명 후에 이루어지지만 제소자가 의사를 공개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USDA의 통지 후 20일 이내에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제소자의 회신: 만일 피소자가 20일 이내에 응답을 한다면 제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신할 수 있음.
- 양자간 의사표명과 회신은 향후 처리에 있어 증거능력을 보유함.
- 응답 및 회신 완료 후 양측은 요약 자료를 제출해야하나 추가적인 증거를 수록할 수 없음.
- USDA는 양측의 응답과 회신이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양측의 증거들에 대해 검토한 요약된 의사표명을 제출토록 통지함.

- 요약내용은 법률적 사항에 대해 외부 관리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전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임.
- 요약자료 제출 후 중재의 형태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함.
- 중재안 제시 후 20일 이내에 중재안을 재고해달라는 탄원(항소)이 제기될 경우 기존 중재안은 자동으로 파기됨.
- 이 때 탄원은 구체적으로 최종 보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야함.

□ 분쟁해소에 따르는 이행의무

- 중재안의 이행만료일(30일)이 경과한 후 5일까지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는다면 PACA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됨.
- 면허정지는 해당금액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유효함.
- 손해배상이 불완전하게 이행될 경우 중재가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가까운 법원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토록 제소할 수 있음.
-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제재사항을 어길 경우 PACA 사무소는 법무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금전적 페널티와 영구적 거래정지를 요구
- PACA 지방 감독관들은 PACA 제재사항들을 어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반업체 및 대표의 상업활동을 감시함.
- PACA의 중재안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그 중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이 개최된 구역의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즉, 피소자가 소재한 지역).

- 항소는 다음 사항들을 충족해야함.
 - 제소의 통지:
 - 이전 USDA의 진행 경과 및 전후배경
 - 반대측에 제소의 통지
 - 재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 재판비용, 변호사비 등

4. 거래용어의 정의

- 거래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용어의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FOB (Free on Board)
 - 출하지에서 적절한 상태에서 수송기관에 적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판매자의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수송 중 발생한 피해(damage)와 손상(decay)에 따른 위험을 구매측이 감수하게 됨.
 - 예를 들어 수송 중 청과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일단 지불하고 추후 수송업자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하게 됨.
 - 그러나 판매자는 적절한 수정조건하게 운송된 청과물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해야 함.
- 적절한 운송조건(suitable shipping condition)
 - 청과물이 출하시점에 정상적인 수송 조건에서 취급된다면 목적지에 비정상적인 품질저하 없이 배송됨을 보증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
- 양호한 배송(good delivery)
 - FOB 판매에서 청과물이 계약된 목적지에 비정상적인 품질의 저하없이

도착된 상태, 즉 청과물이 적절한 운송조건하에 배송된 상황을 의미함.

- 배송됨 (delivered)
 - 청과물이 계약에 명시된 시장에 배송된 상태.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송 중 발생한 로스와 피해를 책임을 짐.
 - 예를 들어 감자가 “U.S. No. 1 delivered Chicago”로 판매되었으면, 정상적인 품질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시카고 도착시 U.S. No. 1 규격의 품질과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오픈 (open)
 - 가격이 사전에 결정된 것 이외의 다른 거래 조건은 동일함(오픈 판매는 FOB나 delivered 모두에서 발생함.).
 - 오픈 기준으로 구매한 구매자는 정상적인 판매 보증(normal sales warranties)을 가질 수 있고 만일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청과물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 피해보상을 청구(claim damages)할 수 있음.
 - 그러나 양 방이 가격에 일치하지 않으면 오픈 기준으로 구매한 구매자는 판매자에 합리적인 가격(reasonable price)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됨.

- 판매 후 가격 (price after sale)
 - 구매자가 청과물을 재판매한 후 양 방이 합의하는 가격을 의미. 양방이 가격 합의에 실패하면 합리적인 가격은 재판매가격 자료 등에 의해 산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USDA Market News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을 사용함.

- 위탁 (consignment)
 - 이 용어는 판매를 의미하지 않고 청과물은 피위탁자(위탁상)에 의해 판

매될 때까지 위탁자 소유로 되는 위탁관계를 의미함.

- 판매 종료 후에는 피위탁자(위탁상)자는 재판매 관련 비용 및 위탁수수료(commission)를 공제하게 됨. 출하자가 위탁상을 선택하게 되며, 사기나 명백한 PACA 규정의 위반이 없는 한 위탁상 선택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함.
- FOB 수용(acceptance)
 - 구매자가 출하지점에서 청과물을 인수하였으며,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없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청과물이 적절한 출하 조건(suitable shipping condition)이나 계약의 물질적 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의 물질적 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이란 품질, 상태(condition)이외의 요소 즉 크기, 품종, 라벨 등에 관련된 계약 위반을 의미함.
- 검사 후 구매(purchase after inspection)
 - 구매자나 그 대리인이 검사를 수행한 후 청과물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품질과 상태에 관련된 보증을 면제받게 됨. 단 판매자가 명시한 보증은 면제받지 않음.
- 보호(protection)
 - PACA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나 업계 관행을 따름.

5. 거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 표현된 보증 대 암묵적 보증(express vs. implied warranties)
 - 표현된 보증(express warranties)은 다음 경우 발생
 - 판매자가 거래의 일부 사항으로 상품과 관련된 사실이나 약속을 확인한 경우
 - 판매자가 거래의 일부 사항으로 상품에 관한 기술을 한 경우
 - 판매자가 거래의 일부 사항으로 견본을 제공한 경우
 - 위의 경우 보증(warranty)나 인증(guarantee)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증이 된 것으로 인정함.

- 암묵적 보증(implied warranties)은 거래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합의사항 없이 이루어진 계약에서 나타남.
 - 예를 들어 판매자가 감자를 판매한 경우 판매된 감자가 유통될 수 있는 상품(merchantable)이어야 한다는 보증이 계약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것으로, 즉, 상품성의 보증(warranty of merchantability)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암묵적 보증을 배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상품성(merchantability)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함.
 - 예를 들어 “표면적 기술 사항을 초과하는 보증은 없다(There are no warranties that extend beyond the description on the face hereof)” 등으로 표현해야 함.

- 상품 수취(acceptance)와 거부(reject)
 - 도착된 청과물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a material breach of contract) 품질 및 상태에 문제가 있고 아직 하역이 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는 하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짐.
 - 그러나 도착된 청과물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빙할 USDA의 공식

적인 검사를 득해야 함.

- 거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간의 정의
 - 트럭 운송의 경우 도착을 공지하고 검사가 가능한 이후 8시간 이내
 - 철도 운송의 경우 도착 공지 후 검사가 가능한 이후 24시간 이내
 - 그러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을 연장할 있는데 검사결과 통지 후 2시간 이내로 연장 가능함.
 - 아울러 휴일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청과물이 도착한 경우도 시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절차적으로 유효한 거부
 -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품의 수취 거부를 명확하고 오해 불가능한 용어 (clear and unmistakable terms)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상이나 중개인이 아니라 출하자에게 거부 의사가 전달되어야 함.
 -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유효한 거부를 표현하지 않은 청과물은 일반적으로 수취되는 것으로 인정됨.
- 청과물을 공식적으로 수취한 경우의 법적 책임
 - 수취된 청과물에 계약된 가격을 지불해야 함.
 - 구매자는 거부의 권리를 잃게 됨.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claim)의 시효가 시작됨
 - 계약위반의 증빙 책임이 구매자에게로 귀속됨.
- 보증 위반(breach of warranty)
 - 구매자가 거부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님.

- 청과물이 수취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합리적인 시간(reasonable time) 내에 구매자는 계약 위반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고(notify)해야 함.
- 특히 청과물은 부패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함.

□ 거래 참여자의 유형별 권리와 의무

- 생산자 판매대행자(growers' agents)
 - PACA에서는 생산자 대행자는 생산자들과 서면 계약 요구함.
 - 이 계약서에는 양 측의 권리와 의무 사항 그리고 판매대행자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 계약이 이루어지면 판매대행자는 청과물의 처분 및 경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개별 생산자의 생산물을 구분하기 위해 로트(lot)번호를 명시해야 함.
 - 양 측이 합의하는 경우 공동계산을 위한 청과물의 풀링(pooling)이 가능하나 이는 서면 계약으로 명시해야 함.
 - 특수한 합의에 의해 경비에 관한 기록 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확, 포장, 판매비용을 박스 당 혹은 무게 당 얼마 하는 식의 요율을 사용 가능함.
 - 생산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판매대행자를 활용할 수 없음.
 - 가격 조정 시는 관련 서류(예: 목적지 검사 증빙서)에 의해 증빙되어야 함.
 - 판매대행자는 부주의나 임무 수행 실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생산자에게 책임을 져야 함.
- 위탁상

- 로트번호 할당
 - 가격조정 (adjustments)/크레딧
 - 위탁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상인이나 위탁상을 이용하지 못함.
 - 위탁상의 시장범위를 벗어나 판매 금지
 - 공동계산은 불가
 - 판매 및 운영 기록 유지 의무
 - 회계 기록 유지 의무
 - 위탁수수료에 대한 합의 필요
 - 위탁품의 매입 금지
 - 생산자의 동의 없이 피해보상 청구 불가능
- 중개인 (brokers)
 - 중개가 성립되면 거래 양방에 판매 사항을 확인
 - 거래 성립 시 브로커는 신속히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권리를 가짐
 - 중개수수료는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면 일방에서만 수취
 - 중개인은 다른 중개인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거래 성립 후 중개인은 판매가격, 제반 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명세표를 거래 참가자에게 발급해야 함.
 - 구매중개인은 판매자에게 대금 지불의 의무를 짐.
 - 중개인은 판매자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공제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상인 (dealer)을 겸하고 있는 중개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함.
 - 중개인은 의뢰인 이외의 당사자 거래에는 참여해서는 안 됨.
 - 출하업자 (shippers)
 - 청과물의 취급 상황 기록 의무 (자기 생산물 포함): 수취일자, 물량, 품질, 매입방법, 매입 가격, 공급자 이름 및 주소 등.
 - 판매 기록 유지의 의무 (판매, 위탁 등 처분 일자, 선적 일자, 차량번호 혹은 트럭 면허 번호, 수송업자의 이름 및 주소, 구매자, 위탁상, 경매

업자 등의 이름 및 주소, 거래조건, 판매가격, 대금지불일자 등 거래의 상세 조건)

6. PACA 신탁(Trust) 제도

□ PACA 신탁제도의 개념

- 구매 업체의 영업종료 혹은 파산의 경우 보상수단 보장
 - 1984년 수정으로 PACA 신탁課(Trust Division)라고 불리는 곳에서 구매자 측의 생산물 관련 자산으로 구성되는 적립금 신탁을 운영 중임.
- PACA 신탁은 다른 채권자들이 신탁자산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생산물 판매자 측에 귀속됨.
 - 파산 등 사업실패의 경우, 신탁자산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신탁자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탁수혜자(판매자)에게 귀속됨.
 - 즉, 채무초과 또는 파산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
- PACA 신탁자산은 업체의 신선과실 및 채소류 관련 자산으로 구성됨.
 - 즉, 채고, 과실 및 채소로부터 가공된 생산물 및 과실과 채소 판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령 가능한 것들을 포함.
- 신탁의 효력은 구매측이 소유권을 획득한 즉시 발휘됨.
 - 예로 FOB 거래의 경우 선적 즉시 구매 측에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신탁의 효력도 선적과 동시에 발생함.
- 판매자도 신탁권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상대방에게 통지의무를

수행해야함.

- 즉, 판매자는 판매대금을 완전히 정산받기 위해 구매자 측에 적절한 통지를 해야만 신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
- 거래물품에 대해 신탁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의 통보는 서면에 의해야함.
- 또한 PACA하에서 신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언급해야 함.
-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지불기일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함.

□ 신탁권리의 확보 방법

- PACA 면허에 의한 신탁권리 보장: 통지방법 1
 - PACA 면허는 신탁권리를 보장받는 또 다른 방법임.
 - 즉, 송장(INVOICE)에 “이 송장에 기술된 부패성농산물은 PACA SEC5.에 의거한 적립신탁의 조건으로 판매된 것이며 이 생산물의 판매자들은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재고, 추출물을 포함한 모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 이라는 문구를 명기해야 함.
- PACA에 의하지 않는 신탁자산에 대한 권리 보장: 통지방법 2
 - 송장에 PACA 신탁자산 관련 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면허 업체인 경우 엄격한 양식을 갖춘 서류를 양자 간에 교부함으로써 신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음.
 - 이때 관련 서류에는 거래상대방 선적일자, 상품명, 계약조건, 계약만료일, 상품수량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함.
- 신탁자산제도는 일종의 자조수단이기 때문에 지불의 개시는 판매자 스

스로 법원에 소청함으로써 개시됨.

- 판매자 측은 구매자 측의 즉각적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법원에 지불을 요구하는 소청을 할 수 있음.
 - 구매측이 파산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파산법원에 신탁자산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야함.
- 신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불기일이 30일 이내이어야 함.
 - 만일 합의를 통한 정산이 PACA에 의한 신속결제일(통상 생산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과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더라도 신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그 지불조건에 대한 합의는 서면에 의하고 거래발생에 앞서 제시되어야하며 상세 조건들이 청구서와 다른 정산서류에 반영되어야함.

7. 검품

□ 미국의 청과물 검품시스템¹⁾

- 청과물의 검품(inspection) 업무에 대한 총괄은 미국 농무부 농산물 유통국(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청과물과(fruit and vegetable products)에서 담당하고 있음.
- 청과물의 검품 업무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되며 실비를 징수하게 됨.
- 청과물 검품 업무는 크게 표준화(standardization), 현장 검품업무(field operations), 지원(program support), 훈련 및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로 구분됨.

1) 미국 청과물 검품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Leanne L. Skelton(Chief, Fresh Products Branch, FVP, AMS, USDA)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되었음.

- 표준화(standardization) 업무
 - 미국 등급 표준의 설정과 개정
 - 등급표준에 의거하여 검품 지침과 시각적 보충 교재(visual aid)의 제작 및 개정
 - 국제 표준의 검토와 개발
 - 청과물과 국제표준 담당자에 조언

- 현장 검품 업무(field operations)
 - 산지출하조직, 소비자유통업체, 정부 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에 균일한 등급화 서비스 제공
 - 36 소비지 시장에 164명의 검품관 및 사무담당 직원 배치
 - 오클라호마 중에 9~90명의 땅콩 등급 판정관 근무
 - 연방정부의 면허증을 보유한 주정부 공무원 5,500명 근무
 - 산지출하조직에 발송되는 검품증서(certificate)의 관리

- 지원(program support)
 - 행정 및 회계 업무 총괄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신 업무 담당
 - 주정부와의 협력 협약 관리
 - 감사(audit)

- 훈련 및 개발
 - 훈련 업무 총괄
 - 개별 부서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 신규 검품관(Inspector) 훈련 과정: 10주 교육 및 2주 현장실습

- 검품관 보충 교육과정
- 강사 양성 교육과정
- GAP&GHP 교육과정
- 산업 교육과정
- 국제 교육과정
- 컴퓨터 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검품 프로그램 유형
 - 연방정부 도매시장 검품 프로그램
 - 연방정부-주정부 협력 도매시장 검품 프로그램
 - 출하 산지 검품 프로그램

-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
 - 핸드북, 시각 교재, 훈련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제공
 - 연방정부의 인증제도 확립
 -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에서 검품시스템 활용
 -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국가에서도 인정
 - 미국 농무부내 식품안전관리 부서와 협조체계 확립
 - 산업계에서도 서비스의 균일성, 일관성, 훈련, 가용성 등을 인정
 - 유통명령제와도 연계

- 청과물 검품 및 표준화 기구 협회
 - 주정부의 검품 담당 직원의 협회로 약 30개주가 참여
 - 매년 5월에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 연방정부-주정부 공동 검품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 논의

- 훈련 및 개발 센터 운영

- 신규 검품관 훈련 과정
 - 10주 교육 및 2주 현장 실습

- 중앙 검품 센터(central inspection station)
 - 실제 검품과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에 검품센터 운영
 - 검품 과정
 - 1) 관련 업체에서 요청
 - 2) 업체에서 샘플을 중앙검품센터로 운송
 - 3) 검품관이 샘플을 검품하고 인증서 발급
 - 4) 업체에서 샘플과 인증서를 반출함.

- 검품시점의 두 종류
 - 선적시점(출하지 검품): 패키지에 표기된 사항에 오류는 없는지를 주로 검사
 - 도착도 검품: 검품 업체 사무소가 소재하는 여러 중앙시장에서 실시하는데 주로 구매측이 클레임 제기를 위한 손실액추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판매부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검품요청은 검품업체 사무소 혹은 도매시장 검품사무소에서 이루어짐.
 - 서면, 구두, 팩스, 전화로도 가능(검사관이 서면을 요청할 수 있음)
 - 검품신청은 특정 시점의 특정 상품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내 여러 상품에 대하여 신청할 수 도 있음.
 - 다만, 검품신청은 상품 소재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 신청할 때에만 유효함.
 - 신청 날짜 및 시간이 기록되고 보존되어야함.

- 재검품(Appeal inspection)은 검품결과에 불만족하며 금전적으로 이해 관계 있는 자 또는 PACA 지역사무소가 요청할 수 있음.

- 2명의 검사관이 통상적인 샘플 수량의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검사함.
-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제한 검품과 전체 물량에 대해 실시하는 비제한 검품이 있음.
- 재심결과가 종전 결과와 다를 경우 비용은 무료

- GAP, GHP 프로그램 운영
 - FDA의 지침서에 의거하여 운영
 - 농가, 수확, 포장, 저장, 운송의 제반 과정 추적(traceback)
 - 소비자 유통업체 관련 요소 포함
 - 담당자 교육 및 핸드북 제작
 - GAP 로고 부착

- 등급 표준 개정 프로젝트
 - 158개 품목 개정안 2002년에 제안
 - 등급 표준 개정 과정
 - 1) 업계의 의견 청취 공시
 - 2) 업계의 제안 공시
 - 3) 변경안 공시

□ 검품결과의 효력

- 분쟁해결의 주요 자료로 검품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음.
- 검품은 거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구매 측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실시됨.
- 검사관은 공무원, 검사면허를 받은 업체, 검품을 위해 고용된 자 등으로 한정함.

- 검품은 농무성을 대신하는 여러 검품업체들에 의해 수행되나 이들의 조

사는 법률에 준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검품 내용은 생산물만이 아니라 수송차량, 수령자의 명단 등을 포함하여 검역 상 요구되는 여러 관심사항들을 포함함.
- 거의 모든 州(주)에 최소 1개 이상의 검품 업체들이 있음.

8. 기타

□ 대금 지불 조건

- 신속한 대금 지불도 PACA의 핵심 사항이며 구매된 청과물에 대해 신속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관행임.
- 신속한 대금 지불이란 청과물을 수취한 이후 10일 이내 결제하는 것을 의미함.
 - 위탁의 경우 최종 판매가 일어난 이후 10일 이내 혹은 청과물이 도착된 이후 20일 이내 중 빠른 것을 채택함.
 - 10일이란 중개인의 송품장을 받은 후 10일을 의미하며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날로부터는 5일 이내임.
 - 생산자 판매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생산물을 수취한 이후 30일 이내 혹은 판매대행업체가 판매대금을 회수한 이후 5일 이내 중 빠른 것을 채택함.
- 대금 지불에 대한 서면 합의
 - 상기 이외의 지불조건도 거래 당사자간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신속한 대금 지불 불능시 제재를 할 수 있음.
 - 면허보유자가 완전한 대금을 신속히 변제하지 않아 PACA를 위반한 경

우 반복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적으면 USDA는 그 사실을 공포하고 90일 이내로 면허를 정지시키게 되며,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대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를 대신하여 민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표기사항 오기

- PACA는 라벨 부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부착된 라벨은 내용이 정확해야한다고 규정함.
- PACA에서 정의된 오기는 아래와 같으며 PACA Office는 이러한 사항 모두를 조사할 권한이 있음.
 - 문자, 행위, 표식, 라벨, 인쇄, 캐릭터, 종류, 등급, 품질, 수량, 크기, 포장단위, 무게, 속도, 州(주), 국가, 원산지 등 州(주)간 거래 및 외국교역에서 표시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
- 오기가 발견될 경우 페널티는 사안의 심각성, 해당 업체의 과거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짐.
 - 소매에 앞서 상자 등에 경고를 부착 등으로 수정해야 함.
 - 심각한 오기가 아닌 경우 금전적 페널티로 해결가능 함
 - 심각하고 반복적인 오기인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함.
- 검품을 받은 상품일 경우
 - PLI(USDA Positive Lot Identification)검사 기록을 통해 모든 선적 상황을 확인토록 권고

□ 기록보존

-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
 - PACA면허 업체는 2년간 관련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을 보관해야하며 어길 경우 90일 이내의 면허정지,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가 가능

- 기록보존은 분쟁발생에 대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기록보존은 특히, 상품의 상태가 불량하여 헐값처분하거나 재선별 과정의 멸실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함.
 - 리베이트 혹은 관촉비용을 판매자 측과 정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업소유 및 관리운영 관련 기록은 4년간 보관해야함.
 - 법인 정관, 지사의 위치, 개수, 각각의 시설
 - 지분보유 및 이사선출 관련 내용
 - 협력업체(및 개인)가 있을 경우 그 관계를 보여주는 완전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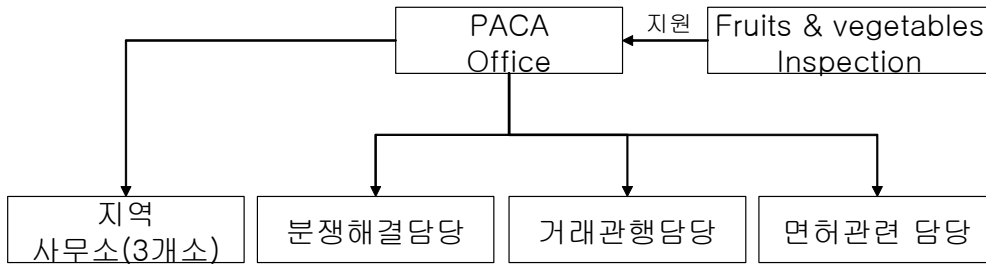
- 조사가 필요할 경우 PACA 감독관에게 상기 정보들을 제공해야하며 협력치 않을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함.

9. PACA Office

□ 조직 현황

- PACA Office는 농무부 산하 행정기관임.
- 농무부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하에 청과물課(Division)가 있고 그 아래에 PACA Office가 있음.

그림 2-2. PACA Office 조직도



- 분쟁 발생 시 관할 지역 PACA Office는 거래 상대방(즉 구매자측)이 소재하는 지역의 PACA Office로 지정됨.
 - 이는 검품이 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점 즉, 통상적인 거래가 도착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 PACA 본부
 - 워싱턴 DC 소재 미 농무부내
 - 본부장 및 부부장 각 1명
 - 분쟁해결부서, 거래실무부서, 면허 및 PACA 프로그램 관련 부서로 구성
 - 각 부서에는 부서장 외에 마케팅 전문가가 배치

- 지역 사무소는 각 주마다 소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를 묶어 광역으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5개소 중 중서부, 북동 지역 사무소가 폐쇄되었으나 기술발달로 지원서비스는 동일함.
 - 남동 지역 사무소(버지니아주 메네사): 플로리다~버지니아, 괌 등
 - 남서 지역 사무소(텍사스주 포트 위스): 알래스카~콜로라도~뉴멕시코~텍사스 등
 - 서부 지역 사무소(아리조나주 투산):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셔널 콜센터를 개발 중임.

□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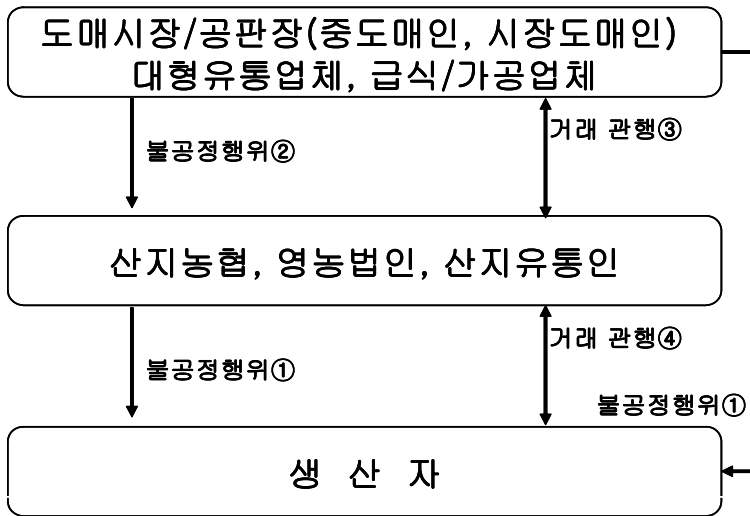
- 면허 관련 서비스
 - 과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의 서면신청(전자문서 포함)에 의해 지역 PACA 지역 사무소에서 발행하였음.
 - 현재는 면허의 신규 발행, 갱신업무를 버지니아 주 메네사에 위치한 내셔널 PACA 면허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
 - 법 위반 발생시 면허의 정지, 취소, 농무성 장관의 명의로 과태료 부과
- 분쟁 발생시 조정 서비스
 - 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문위원을 제공하고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자간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
 - 분쟁 상황에서 양측의 지식이 부족할 경우 조언 및 필요한 조사기능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증빙 확보에 노력
- 조사 및 검품 관련 서비스
 - 검품을 포함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PACA에 의한 조사는 특별한 입법 없이도 법적 권한을 보유함
- 거래관행 관련 서비스
 - 거래용어, 거래조건 등 거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 수행
 - Blue book 발행업체를 감독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 보장

제 3 장. 생산자 및 산지 출하조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목적

- 청과물유통법 도입의 필요성 및 내용을 판단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과물의 유통관행과 불공정행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산지출하조직(산지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청과물의 출하관행 및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빈도 등을 조사하였음.
 - 생산자 조사에서는 산지농협, 상인 및 영농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소비자 유통업체별로 문제점 및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였음.
 - 출하조직 조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소비자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조사하였음.
 - 소비자 유통업체 조사에서는 산지 출하조직과의 출하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

그림 3-1. 청과물 유통 체계 및 설문조사 대상



주: 생산자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① 파악
 출하조직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② 및 거래관행 ④ 파악
 소비지업체 조사를 통해 거래관행 ③ 파악

2.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생산자 현황

- 설문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시간: 2006.09.20~2006.09.28
- 조사대상: 전국 지역별 과일 및 채소 생산자 중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전화조사
- 총 225대가 회수되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1. 조사대상 생산자 지역별 구성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40	33	13	24	3	81	3	3	13	12	225
17.8	14.7	5.8	10.7	1.3	36.0	1.3	1.3	5.8	5.3	100.0

- 조사대상 생산자의 재배품목은 과채류가 가장 많고 그 외 부류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냄.
- 생산자 1명이 두 세 품목을 동시에 경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응답을 허용함.

표 3-2. 생산자 재배 품목(중복허용)

과일	과채	엽채	근채	조미채	기타	계
50	124	61	15	61	12	323
15.5	38.4	18.9	4.6	18.9	3.7	100.0

- 설문조사에 응한 생산자들의 평균 경작규모는 1천~3천평 수준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3. 조사대상 생산자의 경작면적 분포

1천평 이하	1천~3천평	3천~6천평	6천~9천평	9천~12천평	12천평 이상	계
30	89	52	17	15	22	225
13.3	39.6	23.1	7.6	6.7	9.8	100.0

나.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

1) 주 출하경로

- 생산자들의 주 출하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도매시장이 37.5%로 가장 높으며 산지농협에 출하하는 비중이 34.9%로 두 번째임.

표 3-4. 경로별 출하금액 비중(중복허용)

	산지농협	수집상, 영농법인	도매시장, 공판장	소비자유 통업체	기타	계
출하비중	34.9	18.6	37.5	6.2	2.7	100.0

* 기타: 전자상거래, 개인식당 판매 등

- 경작규모가 커지더라도 출하경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규모별 출하경로(중복허용)

	3천평이하		3천~6천평		6천~9천평		9천~12천평		12천평이상		계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산지농협	49	33.1	27	39.7	11	44.0	8	38.1	13	35.1	108	38.2
상인영농법인	22	14.9	18	26.5	5	20.0	5	23.8	14	37.8	64	22.9
도매시장, 공판장	66	61.7	19	17.8	8	7.5	6	56	8	7.5	107	38.4
소비자유통업체	11	7.4	4	5.9	1	4.0	2	9.5	2	5.4	20	7.2
기타	4	2.7	6	8.8	5	20.0	3	14.3	1	2.7	19	6.8
전체	137	100.0	64	100.0	24	100.0	19	100.0	35	100.0	279	100.0

- 품목별 출하경로는 약간씩 상이한데 엽채 및 조미채소류의 경우 상인 및 영농법인의 취급비중이 가장 높고 과일은 농협에 출하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과채류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비중이 높음.

표 3-6. 품목별 출하경로(중복허용)

	과일		과채		엽채		근채		조미채		기타		계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산지농협	34	41.0	57	33.5	30	32.6	8	36.4	23	26.1	7	36.8	159	33.5
상인영농법인	6	7.2	25	14.7	33	35.9	6	27.3	29	33.0	6	31.6	105	22.2
도매시장, 공판장	24	28.9	68	40.0	23	25.0	7	31.8	29	33.0	4	21.1	155	32.7
소비자유통업체	5	6.0	15	8.8	1	1.1	-	-	3	3.4	-	-	24	5.1
기타	14	16.9	5	2.9	5	5.4	1	4.5	4	4.5	2	10.5	31	6.5
계	83	100.0	170	100.0	92	100.0	22	100.0	88	100.0	19	100.0	443	100.0

* 기타: 자체 직판이 다수, 일부 수출

2) 출하경로별 장점 및 문제점

(1) 산지농협

- 생산자들이 산지농협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자 권익보호(29.6%)이며 두 번째 이유는 출하의 편리성(22.2%) 때문으로 조사됨.

표 3-7. 농협에 출하하는 이유

품목	하품처리	판로부족	높은시세	출하편리성	대금회수용이	공동출하	기타	계
응답수	1	10	15	24	13	32	13	108
%	0.9	9.3	13.9	22.2	12.0	29.6	12.0	100.0

* 기타: 조합원이라서, 시세가 안정적이라서, 인간관계 때문에

- 농협에 출하할 경우 가장 큰 불만사항은 시세 및 수수료가 불리 (45.3%)하거나 하품처리 곤란(17%), 인수지체(13.2%)임.
- 농협은 판매능력이 부족해 높은 가격을 받기에 한계가 있고 하품은 마땅히 처리할 거래처가 없어 과잉 생산시 원활한 물량소화가 제약되기 때문임.

표 3-8. 산지농협 출하 시 문제점

항목	응답수	%
검수 비객관성	4	7.5
위탁판매시 대금확인불가능	1	1.9
인수 지체	7	13.2
대금감액	1	1.9
시세및 수수료가 불리	24	45.3
하품처리 곤란	9	17.0
기타	7	13.2
계	53	100.0

* 기타: 선도금 부족, 일요일 휴무로 다음날 시세 폭락, 농가보다 상인 중시, 사업처리의 불투명성 등임.

(2) 상인 또는 영농법인

- 수집상 또는 영농법인과 거래 방법은 주로 포전매매(59.4%) 방식이며 정전판매가 26.6%임.

표 3-9. 상인 및 영농법인과 거래방법(중복허용)

	포전거래 (밭떼기)	계약재배	위탁판매	정전판매	계
응답수	38	3	6	17	64
%	59.4	4.7	9.4	26.6	100.0

* 중복응답이 허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상인 또는 영농법인과 거래시 한가지 방법만을 활용하므로 실제 중복된 응답은 극소수임.

- 상인 또는 영농법인에 출하 시 가장 큰 장점은 출하방법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38.5%로 가장 높고 시세가 더 나온다는 응답이 26.9%임.

표 3-10. 상인 또는 영농법인에 출하하는 이유

항목	응답수	%
하품처리가 쉬워서	2	7.7
다른 판로가 없어서	6	23.1
시세가 더 나와서	7	26.9
선별 및 출하방법이 편해서	10	38.5
대금 떼일 염려가 없어서	-	-
공동출하로 생산자 권익보호	-	-
기타	1	3.8
계	26	100.0

- * 기타: 안정적인 출하가능
- * 포전거래는 하기 별도 질문

- 상인 또는 영농법인에 출하시 다수(65.4%)의 생산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표 3-11. 상인 및 영농법인에 출하시 계약서 작성여부

응답	응답수	%
작성함	9	34.6
작성하지 않음	17	65.4
계	26	100.0

- * 포전거래는 하기 별도 질문

- 상인 또는 영농법인에 출하시 53.8%가 문제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출하처보다 낮은 시세와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26.9%에 이름.

표 3-12. 상인 및 영농법인에 출하시 문제점

항목	응답수	%
검수가 객관적이지 않음	-	-
대금지급이 지연됨	-	-
위탁판매 대금 확인 곤란	-	-
미수금 회수 곤란	1	3.8
물량 인수 지체	2	7.7
이유없는 대금 감액	1	3.8
낮은 시세 및 수수료 부담	7	26.9
하품처리 곤란	1	3.8
별 문제 없음	14	53.8
계	26	100.0

(3) 포전매매(밭떼기)

- 포전매매로 출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확작업을 상인들이 하기 때문 (52.6%)이며 그 외 요인으로는 사전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4%임.

표 3-13. 밭떼기에 참여 하는 이유

항목	응답수	%
사전에 소득이 확정	7	18.4
계약금, 중도금을 활용	1	2.6
수확작업을 상인이 수행	20	52.6
하품처리가 용이	2	5.3
기타	8	21.0
계	38	100.0

* 기타: 다른 판로가 없어서, 물량소화력이 크니까

- 포전매매시 대다수(78.9%)의 생산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설문조사 대상이 농협의 수급안정 자금(계약재배 사업)을 이용하

는 생산자들로서 비교적 계약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임.

-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생산자까지 포함한다면 계약서 작성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3-14. 포전거래시 계약서 작성 여부

응답	응답수	%
작성함	30	78.9
작성하지 않음	8	21.1
계	38	100.0

- 생산자들이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63.2%이지만 상인의 신용도 파악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21.1%로 나타남.

표 3-15. 포전거래 계약 체결 당시 문제점

항목	응답수	%
계약금이 너무 적음	2	5.3
구두예약 때문에 사후증빙 곤란	2	5.3
상인의 신용도 파악 곤란	8	21.1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2	5.3
계약시기가 늦음	-	-
별 문제없음	24	63.2
계	38	100.0

- 포전거래시 수확시점에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세 하락시 인수지연 및 거부, 감액요구, 연락두절(65%)인 것으로 조사됨.
- 이 문제점들은 포전매매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항목에 따라 대응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표 3-16. 포전거래 후 수확 및 판매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항목	응답수	%
물량 인수 후 대금지급 지연	2	5.3
시세차익이 전액 상인에게 귀속	3	7.9
시세 하락시 인수지연 및 거부, 감액요구, 연락두절	26	68.4
근거없는 이유로 문제 제기	1	2.6
문제없음	6	15.8
계	38	100.0

(4) 도시지역 도매시장 및 공판장, 위탁상

- 도시지역 도매시장과 공판장, 위탁상 출하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판로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9%,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3%로 조사됨.

표 3-17. 도시지역 도매시장 및 공판장, 위탁상 출하 이유

항목	응답수	%
하품처리가 쉬워서	8	7.5
다른 판로가 없어서	31	29.0
시세를 더 받으니까	15	14.0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26	24.3
대금 떼일 염려가 없어서	2	1.9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자 권익보호	11	10.3
기타	14	13.1
계	107	100.0

* 기타: 예전부터 관행, 물량 소화력이 크니까, 운송비가 절감되니까

- 도시지역 도매시장, 공판장, 위탁상에 출하시 다수의 생산자(79.5%)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3-18. 도매시장, 공판장, 위탁상 출하시 계약서 작성 여부

응답	응답수	%
작성함	22	20.6
작성하지 않음	85	79.5
계	107	100.0

- 도매시장, 공판장, 위탁상 출하시 가장 큰 불만은 시세불리 및 수수료 부담이 42.1%로 가장 높으나 중도매인이 시세를 담합한다는 응답도 25.2%로 조사됨.

표 3-19. 도매시장 공판장 위탁상 출하시 불만사항

항목	응답수	%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않음	3	2.8
대금지급이 지연됨	2	1.9
위탁판매 대금을 알 수 없음	2	1.9
미수금 회수가 어려움	-	-
물량 인수가 지체됨	5	4.7
이유없이 대금을 감액함	6	5.6
시세 및 수수료가 부담됨	45	42.1
하품처리가 곤란	2	1.9
중도매인이 시세를 담합함.	27	25.2
별 문제가 없음	15	14.0
계	107	100.0

(5) 소비자 유통업체

- 소비자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를 더 받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고 기타(안정적 출하, 오랜 거래관계)의견이 25%임.

표 3-20. 소비지 유통업체 출하의 이유

항목	응답수	%
하품처리가 용이	-	-
다른 판로가 없어서	1	5.0
시세를 더 받아서	10	50.0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1	5.0
대금 때일 염려가 없어서	1	5.0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자 권익보호	2	10.0
기타	5	25.0
계	20	100.0

* 기타: 물량이 안정적, 인간관계 때문에

- 소비지 유통업체에 출하 시 60%의 생산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3-21. 소비지 유통업체 출하시 계약서 작성 여부

응답	응답수	%
작성함	8	40.0
작성하지 않음	12	60.0
계	20	100.0

- 소비지 유통업체 출하시 45%가 불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40%의 생산자들은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응답함.

표 3-22. 소비지 유통업체 출하시 가장 큰 불만사항

항목	응답수	%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않음	-	-
대금지급이 지연됨	8	40.0
위탁판매 대금을 알 수 없음	-	-
미수금 회수가 어려움	-	-
물량 인수가 지체됨	-	-
이유없이 대금을 감액함	-	-
시세 및 수수료가 부담됨	2	10.0
하품처리가 곤란	1	5.0
별 문제가 없음	9	45.0
계	20	100.0

3) 불만사항에 대한 생산자들의 경험과 대응

- 13.8%의 생산자들이 거래처로부터 정도에 관계없이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 3-23.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경험 여부

응답	응답수	%
있다	31	13.8
없다	194	86.2
계	225	100.0

-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가 주로 발생하는 거래처는 상인 또는 영농법인(61.3%)이며 도매시장, 공판장, 소비지유통업체, 산지농협의 순임.

표 3-24.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받은 거래처

	산지농협	상인, 영농법인	도매시장, 공판장	소비자유 통업체	기타	계
응답수	3	19	6	3	-	31
%	9.7	61.3	19.4	9.7	-	100.0

-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발생빈도는 6개월 정도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51.6%,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3%임.
- 그러한 요구는 주로 시세하락시에 나타남.

표 3-25. 계약위반 또는 과도한 요구의 발생빈도

	일주일 1번	한달에 1번	두달에 1번	6개월에 1번	거의 발생하지 않음	계
응답수	1	1	3	16	10	31
%	3.2	3.2	9.7	51.6	32.3	100.0

-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유형은 이유 없는 대금감액이 35.5%, 대금지급 지연이 32.3%로 조사됨.

표 3-26. 계약위반 또는 과도한 요구의 유형

항목	응답수	%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지 않음	4	12.9
규격 또는 품위를 일방적으로 결정	6	19.4
대금지급 지연	10	32.3
물량인수 기한 초과	-	-
이유 없이 대금을 감액	11	35.5
기타	-	-
계	31	100.0

- 생산자들의 대응은 협의를 통한 해결이 다수(64.5%)이지만 거래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함.

표 3-27.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

항목	응답수	%
양쪽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20	64.5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결정	9	29.0
제3자의 중재에 따름	2	6.5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따름	-	-
기타	-	-
계	31	100.0

- 거래처의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38.7%),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다(32.3%)가 다수로 조사됨.

표 3-28. 법적 절차 또는 공식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

항목	응답수	%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워서	-	-
다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서	12	38.7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아서	10	32.3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서	4	12.9
기타	4	12.9
무응답	1	3.2
계	31	100.0

* 기타: 계약서대로 한다, 업체 부도/파산

-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유형 중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84.4%)가 전혀 없다고 응답함.
- 다만, 9.3%의 생산자들이 가끔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29. 대금지급 기한 초과 발생빈도

항목	응답수	%
매우 자주 발생	1	0.4
자주 발생	7	3.1
가끔 있음	21	9.3
거의 없음	6	2.7
전혀 없음	190	84.4
계	225	100.0

- 대금지급 지연의 유형은 물량 수령 후 대금지급 지연(37.9%), 계약 후 (인수전) 시세하락에 의한 인수거부 또는 감액(34.5%), 판매부진을 이유로 대금지급 지연(24.1%)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0. 대금지급 기한 초과 유형

항목	응답수	%
계약 후 시세하락에 따른 인수거부 또는 감액	10	34.5
물량 수령 후 대금지급 지연	11	37.9
수량 또는 품질을 핑계로 대금감액 요구	-	-
판매부진을 이유로 대금지급 지연	7	24.1
기타	-	-
무응답	1	3.4
계	29	100.0

* 대금지급 지연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만 대상으로 질문

- 대금지급이 지연될 때 생산자들은 단순히 전화 또는 구두 독촉이 대부분(86.2%)이며 13.7%의 생산자들은 계약서대로 한다고 조사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응답함.

표 3-31. 대금지급 지연시 대응 방식

항목	응답수	%
전화나 구두로 독촉	25	86.2
내용증명 발송	-	-
법률상담을 받음	-	-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함	-	-
기타	4	13.7
계	29	100.0

* 기타: 계약서대로 한다

- 거래 상대방의 계약파기, 계약위반 등의 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한 생산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3-32. 법률상담 혹은 법적 조치 경험 유무

응답	응답수	%
있다	-	-
없다	29	100.0
계	29	100.0

-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응답이 40.7%로 다수였고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25.9%로 나타남.

표 3-33.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항목	응답수	%
다른 출하처를 찾기 어려워서	-	-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서	11	40.7
방법을 몰라서	7	25.9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
해봐야 손해만 날 것 같아서	3	11.1
기타	6	22.2
계	27	100.0

* 기타: 계약서 대로 한다, 업체의 부도/파산

4) 정부에 대한 제도적 수요

-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4.2%로 집계됨.

표 3-34. 공정거래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

항목	응답수	%
매우 필요	74	32.9
다소 필요	93	41.3
보통	25	11.1
별로 불필요	26	11.6
전혀 불필요	6	2.7
무응답	1	0.4
계	225	100.0

-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조치로는 기존 공정거래 규정 강화를 통한 거래처의 과도한 요구행위 차단이 29.3%, 신속한 분쟁해결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1.8%로 조사됨.

표 3-35.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

항목	응답수					
	1순위	%	2순위	%	합계	%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	66	29.3	32	14.2	98	21.8
공정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12	5.3	22	9.8	34	7.6
성실한 거래처를 선별할 수 있는 신용 정보 제공	39	17.3	42	18.7	81	18.0
결제 지연 또는 업체 파산 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	29	12.9	27	12.0	56	12.4
기존 공정거래규정을 강화하여 유통업체의 과도한 요구 차단	66	29.3	66	29.3	132	29.3
기타	13	5.8	36	16.0	49	10.9
계	225	100.0	225	100.0	450	100.0

* 2가지 복수 응답.

3. 출하조직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출하조직 현황

- 조사방법 및 설문대상 출하조직
 - 조사대상: 산지출하조직 중 농협 54개소, 영농법인 20개소 산지유통인 35명
 - 유의한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산지농협은 산지유통 전문조직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산지유통인은 지역별 산지유통인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사용함.
 - 조사기간: 2006.10.10~2006.10.18
 - 조사방법: 판매사업 담당자에 대한 전화 및 팩스

표 3-36. 설문대상 출하조직 현황

출하조직	산지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계
대상	54	20	35	109
%	49.5	18.3	32.1	100.0

- 설문대상 조직별 주 취급품목은 과일류(24.1%), 업체류(20.9%), 근채류(17.8%)의 순서임.

표 3-37. 설문대상 출하조직 주 취급품목

		과일	과채	업체	근채	조미채	기타	계
농협	응답수	35	26	9	6	7	11	94
	%	37.2	27.7	9.6	6.4	7.4	11.7	100.0
영농법인	응답수	10	5	2	3	8	2	30
	%	33.3	16.7	6.7	10.0	26.7	6.7	100.0
산지유통인	응답수	1	1	29	25	9	2	67
	%	1.5	1.5	43.3	37.3	13.4	3.0	100.0
전체	응답수	46	32	40	34	24	15	191
	%	24.1	16.8	20.9	17.8	12.6	7.9	100.0

* 중복 응답 허용

- 조사대상 출하조직의 청과물 매출규모 분포는 25억원 이하 조직이 50.5%, 25억~50억원인 조직이 18.3%임.

표 3-38. 설문대상 출하조직의 청과물 취급규모

		25억원 이하	25억~50억원	50억~100억원	100억~200억원	200억원 이상	계
농협	응답수	13	12	11	12	6	54
	%	24.1	22.2	20.4	22.2	11.1	100.0
영농법인	응답수	11	4	5	-	-	20
	%	55	20	25	-	-	100
산지유통인	응답수	31	4	-	-	-	35
	%	88.6	11.4	-	-	-	100.0
전체	응답수	55	20	16	12	6	109
	%	50.5	18.3	14.7	11.0	5.5	100.0

* 과일류 및 채소류 합계금액임.

- 출하조직들의 판매처는 소비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지 유통인들의 판매처 중 도매시장이 점하는 비중은 89.5%에 달함.

표 3-39. 설문대상 출하조직의 판매처별 비중

(단위: %)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소비지 도매시장, 공판장	61.0	57.0	89.5	69.1
소비지일반유통업체	14.5	28.6	0.3	12.7
농협소비지유통	16.4	4.6	-	9.1
가공/급식/외식	4.1	3.8	5.5	4.5
소비지 직판	2.5	1.5	3.2	2.5
산지공판 및 상인	1.5	4.5	1.5	2.1
계	100.0	100.0	100.0	100.0

* 중복응답 허용.

나. 출하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원물조달 및 검품 실태

- 원물조달 방법은 28.9%의 출하조직이 단순수탁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공동계산을 도입한 출하조직도 조직수는 22.8%에 이릅니다.

표 3-40. 출하조직별 원물조달 방식

		단순매취	서면 계약재배	포전매매	단순수탁	공동계산	계
농협	응답수	17	13	-	48	39	117
	%	14.5	11.1	-	41.0	33.3	100.0
영농법인	응답수	15	4	1	8	6	34
	%	44.1	11.8	2.9	23.5	17.6	100.0
산지 유통인	응답수	2	13	34	1	-	50
	%	4.0	26.0	68.0	2.0	-	100.0
전체	응답수	34	26	35	57	45	197
	%	17.3	13.2	17.8	28.9	22.8	100.0

* 중복 응답 허용

- 원물조달 시 검품(검수) 시점은 산지농협의 경우 선별장 입고시 실시한다는 응답이 38.9%이지만 산지유통인은 수확기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97.1%로 나타남.

표 3-41. 원물조달시 검품 시기

		수확기	농가 보관시	입고시	선별시	기타	계
농협	응답수	10	-	21	15	8	54
	%	18.5	-	38.9	27.8	14.8	100.0
영농법인	응답수	4	1	10	2	3	20
	%	20.0	5.0	50.0	10.0	15.0	100.0
산지 유통인	응답수	34	-	-	-	1	35
	%	97.1	-	-	-	2.9	100.0
전체	응답수	48	1	31	17	12	109
	%	44.0	0.9	28.4	15.6	11.0	100

*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

- 검품시 검수기준은 농관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응답과 자체 수립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으나 관행에 따라 판단한다는 응답도 22%에 달하며 특히 산지유통인은 91.4%가 관행에 따라 판정한다고 응답함.

표 3-42. 산지출하조직의 검품기준

		관행에 의거	농관원 기준 활용	자체기준 활용	수량만 적용	기타	계
농협	응답수	7	21	19	1	6	54
	%	13.0	38.9	35.2	1.9	11.1	100.0
영농법인	응답수	4	6	10	-	-	20
	%	20.0	30.0	50.0	-	-	100.0
산지 유통인	응답수	32	2	-	-	1	35
	%	91.4	5.7	-	-	2.9	100.0
전체	응답수	43	29	29	1	7	109
	%	22	26.6	26.6	0.9	6.4	100

- 검품 결과에 대해 생산자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66.1%의 출하조직들이 생산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바 없다고 응답하였고 22.9%는 양측이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응답함.

표 3-43. 검품결과에 대한 의견불일치 시 대처 방식

		이의없음	협의조정	재검사	제3자 중재	기타	계
농협	응답수	37	10	4	-	3	54
	%	68.5	18.5	7.4	-	5.6	100.0
영농법인	응답수	11	6	3	-	-	20
	%	55.0	30.0	15.0	-	-	100.0
산지 유통인	응답수	24	9	-	-	2	35
	%	68.6	25.7	-	-	5.7	100.0
전체	응답수	72	25	7	-	5	109
	%	66.1	22.9	6.4	-	4.6	100.0

(2) 단순수탁 또는 위탁 사업²⁾

- 수탁 또는 위탁사업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직접 생산자를 찾아가며 출하물량을 확보하는 방법과 찾아오는 생산자의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병행(44.6%)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4. 수탁/위탁물량 확보 방법

		농가를 찾아다니 며	찾아오는 농가중심	둘 다 활용	기타	계
농협	응답수	16	9	23	-	48
	%	33.3	18.8	47.9	-	100.0
영농법인	응답수	3	3	2	-	8
	%	37.5	37.5	25.0	-	100.0
전체	응답수	19	12	25	-	56
	%	33.9	21.4	44.6	-	100.0

2) 산지유통인의 경우 응답자가 1명에 불과해 집계 의미 없으므로 배제함.

- 단순수탁 또는 위탁사업 시 생산자와 계약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직이 66.1%로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5. 단순 수탁 또는 위탁시 계약서 작성여부

		작성	작성하지 않음	계
농협	응답수	15	33	48
	%	31.3	68.8	100.0
영농법인	응답수	4	4	8
	%	50.0	50.0	100.0
전체	응답수	19	37	56
	%	33.9	66.1	100.0

- 수탁 또는 위탁 판매 후 제반 정산 근거를 제공하는 출하조직은 75% 이나 제공하지 않는 조직이 5.4%, 요구할 때만 제공하는 조직도 25%로 조사되었음.

표 3-46. 수탁/위탁 판매 후 정산 근거 제공 여부

		매번 제공	제공 안함	요구할 때만	기타	계
농협	응답수	32	3	13	-	48
	%	66.7	6.3	27.1	-	100.0
영농법인	응답수	7	-	1	-	8
	%	87.5	-	12.5	-	100.0
전체	응답수	39	3	14	-	56
	%	69.6	5.4	25.0	-	100.0

- 수탁 및 위탁 판매 후 생산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간은 41.1%의 조직이 판매 즉시라고 응답하였고 37.5%의 조직이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7. 수탁/위탁 물량 판매완료 후 지급기일

		즉시	5일이 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40일 이내	40일 이상	계
농협	응답수	23	18	5	2	-	-	48
	%	47.9	37.5	10.4	4.2	-	-	100.0
영농법인	응답수	-	3	2	2	1	-	8
	%	-	37.5	25	25	12.5	-	100.0
전체	응답수	23	21	7	4	1	-	56
	%	41.1	37.5	12.5	7.1	1.8	-	100.0

- 제3자에게 물량을 판매한 후 미수금이 발생할 때 생산자에게는 어떻게 정산하는가에 대해 48.2%가 자체 자금으로 우선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5.4%의 조직은 대금지급이 연기되는 동안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8. 수탁/위탁 판매 후 미수금 발생시 처리방법

		농가에 우선 정산	이자는 지급	지급연기	문제없음	계
농협	응답수	21	-	2	25	48
	%	43.8	-	4.2	52.1	100.0
영농법인	응답수	6	-	1	1	8
	%	75.0	-	12.5	12.5	100.0
전체	응답수	27	-	3	26	56
	%	48.2	-	5.4	46.4	100.0

- 미수금 발생에 대비해 담보나 보증증권 등을 제공하는 출하조직은 7.1%이고 92.9%의 조직은 미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9. 미수 발생에 대비해 담보나 보증증권 제공 여부

		제공	비제공	계
농협	응답수	3	45	48
	%	6.3	93.8	100.0
영농법인	응답수	1	7	8
	%	12.5	87.5	100.0
전체	응답수	4	52	56
	%	7.1	92.9	100.0

(3) 공동계산

- 공동계산 물량의 확보방법은 농협의 경우 작목반과 생산협약을 체결한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으나 영농법인은 개인별 서면계약을 선호(50%)하고 있음.

표 3-50. 공동계산 물량 확보 방법

항 목	농협		영농법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개인별 구두계약	1	2.6	1	16.7	2	4.4
개인별 서면계약	8	20.5	3	50.0	11	24.4
작목반과 생산협약	20	51.3	-	0.0	20	44.4
개인별 계약과 생산협약을 병행	9	23.1	1	16.7	10	22.2
기타	1	2.6	1	16.7	2	4.4
계	39	100.0	6	100.0	45	100

- 생산자의 포전 또는 저장고에서 출하조직의 선별장까지 이송은 농협과 영농법인 모두 생산자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임.

표 3-51. 농가로부터 작업장(선별장)까지 운송책임 주체

		생산자	작목반	농협, 영농법인	모두 활용	기타	계
농협	응답수	20	2	7	9	1	39
	%	51.3	5.1	17.9	23.1	2.6	100.0
영농법 인	응답수	4	-	2			6
	%	66.7	0.0	33.3	0.0	0.0	100.0
전체	응답수	25	1	9	9	1	45
	%	55.6	2.2	20.0	20.0	2.2	100.00

* 산지유통인은 직접 수거.

- 생산자가 물량 또는 품위기준을 위반했을 때 35.6%의 출하조직이 위약 시 처분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농협의 경우 작목반에서 제명되는 경우는 영농법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15.4%)인 것으로 평가됨.

표 3-52. 공동계산시 생산자 위약 대응 방식

		위약처분 없음	규정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음	경고나 벌금	작목반에 서 제명	기타	전체
농협	응답수	7	14	12	6	-	39
	%	17.9	35.9	30.8	15.4	-	100.0
영농법 인	응답수	-	2	1	3	-	6
	%	-	33.3	16.7	50.0	-	100.0
전체	응답수	7	16	12	9	1	45
	%	15.6	35.6	26.7	20.0	2.1	100.0

(4) 계약서 없는 단순 시가매취

- 단순 시가매취는 농협의 경우 고정거래처에 납품할 물량이 모자랄 때 (41.2%) 주로 활용하지만 영농법인은 일상적인 판매사업의 하나

(64.3%)로서 활용하고 있음.

표 3-53. 시가매취를 하는 이유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일상적인 판매사업의 일환	6	35.3	9	64.3	-	-	15	45.5
고정거래처 납품 양이 모자랄 때	7	41.2	1	7.1	-	-	8	24.2
산지폐기시	1	5.9	-	-	-	-	1	3
시세상승이 예상될 때	2	11.8	4	28.6	-	-	6	18.2
기타	1	5.9	-	-	2	100.0	3	9.1
계	17	100.0	14	100.0	2	100.0	33	100

- 매취가격의 결정은 농협의 경우 작업장 입고시 결정한다는 응답이 41.2%이지만 영농법인은 생산자 보관시(포전 또는 저장고) 결정한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하여 출하조직별로 가격결정 시점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

표 3-54. 매취가격 결정 시점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농가보관시	6	35.3	6	40.0	2	100.0	14	41.2
작업장 입고시	7	41.2	5	33.3	-	-	12	35.3
선별 후	2	11.8	2	13.3	-	-	4	11.8
기타	2	11.8	2	13.3	-	-	4	11.8
계	17	100.0	15	100.0	2	100.0	34	100

* 기타: 시장조사와 농가 통보 후

- 시가 매취시 매입단가는 70.6%가 주변 시세를 참고로 생산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농협이 상대적으로 많이(23.5%) 택하고 있음.

표 3-55. 매취단가의 결정 방법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품질과 주변시세를 참고하여 통보하는 방식	4	23.5	1	6.7	-	-	5	14.7
품질과 주변시세를 참고하되 농가와 협의하는 방식	10	58.8	12	80.0	2	100.0	24	70.6
농가제시가격과 품질 기준으로 통보하는 방식	1	5.9	-	-	-	-	1	2.9
농가제시가격과 품질기준으로 협의	2	11.8	2	13.3	-	-	4	11.8
계	17	100.0	15	100.0	2	100.0	34	100

- 물량 인수 후 대금정산은 52.9%가 인수 즉시 지급한다고 응답하였으나 40일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2.9%)도 일부 있어 생산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

표 3-56. 물량인수 후 대금지급 기일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즉시	10	52.6	7	50.0	1	100.0	18	52.9
5일이내	2	10.5	2	14.3	-	-	4	11.8
10일이내	5	26.3	1	7.1	-	-	6	17.6
20일이내	-	-	3	21.4	-	-	3	8.8
40일 이내	1	5.3	1	7.1	-	-	2	5.9
40일 이상	1	5.3	-	-	-	-	1	2.9
계	19	100.0	14	100.0	1	100.0	34	100.0

(5) 계약재배(포전매매 포함)의 경우

- 산지유통인의 경우 계약재배 혹은 포전매매 시 67.6%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32.4%는 여전히 구두계약에 의존하고 있음.
- 선행연구들에서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율은 보통 30% 내외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등록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서면계약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3-57. 계약재배 또는 포전매매시 계약서 작성 여부

		구두계약	서면계약	계
농협	응답수	-	23	23
	%	-	100.0	100.0
영농법인	응답수	1	3	4
	%	25.0	75.0	100.0
산지유통인	응답수	11	23	34
	%	32.4	67.6	100.0
전체	응답수	12	49	61
	%	19.7	80.3	100.0

* 포전매매 계약을 포함

- 구두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면계약이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41.7%) 나타나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못했음을 시사함.

표 3-58. 구두계약을 하는 이유

항목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서면계약이 번거로워서	-	-	5	45.5	5	41.7
구두계약이 관행이라서	-	-	2	18.2	2	16.7
상대방이 서면계약을 원치 않아서	1	100.0	1	9.1	2	16.7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	-	-	-	3	25.0
기타	-	-	3	27.3		-
계	1	100.0	11	100.0	12	100.0

* 기타: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명

* 주: 영농법인, 산지유통인만 응답.

- 서면계약 시 산지농협은 주요 항목들 대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산지 유통인들은 핵심사항만 적시할 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3-59. 서면계약시 포함 내용

	농협(23개소)		영농법인(3개소)		산지유통인(23명)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총면적	16	69.6	3	100.0	21	91.3
총물량	21	91.3	3	100.0	19	82.6
총금액	18	78.3	3	100.0	20	87.0
개별단가	18	78.3	3	100.0	7	30.4
수수료	17	73.9	1	33.3	4	17.4
규격	19	82.6	3	100.0	5	21.7
등급	19	82.6	3	100.0	5	21.7
검수방법	17	73.9	3	100.0	4	17.4
운송책임	14	60.9	3	100.0	13	56.5
수확책임	15	65.2	3	100.0	14	60.9
정산주기	15	65.2	3	100.0	7	30.4
위약처분	22	95.7	3	100.0	13	56.5

* 포전매매 계약서를 포함.

- 계약금 지불비율은 출하조직의 성격에 관계없이 대부분 20~50%라고 응답하여 계약금 지급비율과 출하조직의 성격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3-60. 계약금 지급 비율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주지 않음	2	8.7	-	-	1	3.0	3	5.0
10% 미만	1	4.3	-	-	3	9.1	4	6.7
10~20%	3	13.0	1	25.0	2	6.1	6	10.0
20~50%	16	69.6	3	75.0	24	72.7	43	71.7
50% 이상	1	4.3	-	-	3	9.1	4	6.7
계	23	100.0	4	100.0	33	100.0	60	100.0

* 산지유통인 중 1명 무응답

- 계약재배 또는 포전매매시 가격은 사전에 명시되는 경우가 76.3%이고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시세적용)는 18.6%임.

표 3-61. 계약재배 시 가격 결정 방식

항 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 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사전고정가격	17	73.9	2	50.0	27	84.4	46	76.3
수시로 변경	5	21.7	1	25.0	5	15.6	11	18.6
기타	1	4.4	1	25.0	-	-	2	3.4
계	23	100.0	4	100.0	32	100.0	59	100.0

- 고정가격이 명시되지 않을 때 가격결정 방식은 출하조직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생산자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81.8%)인 것으로 나타남.

표 3-62. 수시 변경 시 가격 결정 방법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품질과 시세를 참고로 통보	-	-	-	-	1	20.0	1	9.1
품질과 시세를 참고로 협의	5	100.0	1	100.0	3	60.0	9	81.8
품질과 농가 제시가격 기준으로 통보	-	-	-	-	-	-	-	-
품질과 농가 제시가격 기준으로 협의	-	-	-	-	-	-	-	-
기타	-	-	-	-	1	20.0	1	9.1
계	5	100.0	1	100.0	5	100.0	11	100.0

- 한편 고정가격을 명시한다면 시세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은 시세가 일정 수준을 벗어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50%이지만 고정된 가격에서 변경이 없다는 응답도 39.6%에 달함.

표 3-63. 고정가격의 경우 시세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방식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작기별로 고정되어 변경 없음	1	5.6	-	-	18	66.7	19	39.6
일정기간별로 변경	1	5.6	1	33.3	-	-	2	4.2
시세가 일정수준을 벗어날 때 변경	15	83.3	1	33.3	8	29.6	24	50.0
수시로 시세 반영	1	5.6	1	33.3	1	3.7	3	6.3
기타	-	-	-	-	-	-	-	-
계	18	100.0	3	100.0	27	100.0	48	100.0

- 계약재배(포전매매) 시 물량인수 후 대금지급은 49.2%가 인수 즉시 지급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출하조직 성격별로 살펴보면 산지유통인과 영농법인의 정산 기한이 다소 지체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64. 물량 인수 후 대금지급 기한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즉시	12	52.2	-	-	18	52.9	30	49.2
5일 이내	5	21.7	1	25.0	-	-	6	9.8
10일 이내	4	17.4	1	25.0	7	20.6	12	19.7
20일 이내	1	4.3	1	25.0	5	14.7	7	11.5
40일 이내	1	4.3	1	25.0	2	5.9	4	6.6
40일 이상	-	-	-	-	-	-	-	-
무응답	-	-	-	-	2	5.9	2	3.3
계	23	100.0	4	100.0	34	100.0	61	100.0

- 계약재배 생산자 중 출하의무, 품위기준을 위반하는 비율은 20~40% 라는 응답이 16.4%, 20%미만이라는 응답이 77%로 나타나 생산자의 위약이 상당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65. 계약서를 위반하는 생산자의 비율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100%	-	-	-	-	1	-	1	1.6
80~100%	-	-	-	-	2	-	2	3.3
60~80%	-	-	-	-	1	-	1	1.6
40~60%	-	-	-	-	-	-	-	-
20~40%	3	12.5	2	50.0	5	15.2	10	16.4
20% 미만	21	87.5	2	50.0	24	72.7	47	77.0
계	24	100.0	4	100.0	33	100.0	61	100.0

- 생산자의 출하의무 위반 시 42.6%의 출하조직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32.8%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응답함.

표 3-66. 생산자의 출하물량 위반시 대응 방식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별다른 조치 없음	6	25.0	1	25.0	19	57.6	26	42.6
계약금 반환요구	11	45.8	2	50.0	7	21.2	20	32.8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요구	3	12.5	1	25.0	1	3.0	5	8.2
법적인 조치	-	-	-	-	-	-	-	-
기타	4	16.7	-	-	6	18.2	10	16.4
전체	24	100.0	4	100.0	33	100.0	61	100.0

* 기타: 그런 경우는 없음

- 생산자의 품위기준 위반시 대응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고 대금감액(18.0%), 재납품 요구(13.1%)가 그 뒤를 이음.

표 3-67. 생산자의 품위기준 위반시 대응 방식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별다른 조치 없음	7	30.4	1	25.0	22	64.7	30	49.2
수취 후 대금 감액	5	21.7	1	25.0	5	14.7	11	18.0
수취거부 및 재납품 요구	6	26.1	2	50.0	-	-	8	13.1
대금지급 보류	-	-	-	-	-	-	-	-
기타	5	21.7	-	-	7	20.6	12	19.7
계	23	100.0	4	100.0	34	100.0	61	100.0

* 기타: 공판장에 출하토록 유도, 계약금 반환, 그런 경우는 없음

- 생산자의 계약위반이 반복될 때 67.2%가 추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별다른 조치가 없거나 다음 계약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13.1%, 8.2%로 조사되었음.

표 3-68. 출하의무 또는 품위 위반이 계속될 때 조치 사항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별다른 조치 없음	1	4.3	-	-	7	20.6	8	13.1
경고는 하지만 다음 계약에는 영향 없음	-	-	-	-	5	14.7	5	8.2
추후에 재계약하지 않음	20	87.0	4	100.0	17	50.0	41	67.2
기타	2	8.7	-	-	5	14.7	7	11.5
계	23	100.0	4	100.0	34	100.0	61	100.0

(6) 판매시 불만사항

- 출하조직이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판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3%이며, 선별 및 출하방법이 편해서 20.2%,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2%로 나타났다.

표 3-69.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하는 이유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하품처리가 쉬워서	6	12.2	2	11.1	1	3.1	9	9.1
다른 판로가 없어서	12	24.5	4	22.2	11	34.4	27	27.3
시세를 더 받아서	4	8.2	-	-	4	12.5	8	8.1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8	16.3	6	33.3	6	18.8	20	20.2
대금 떼일 염려가 없어서	8	16.3	3	16.7	6	18.8	17	17.2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자 권익보호	5	10.2	1	5.6	-	-	6	6.1
기타	6	12.2	2	11.1	4	12.5	12	12.1
계	49	100.0	18	100.0	32	100.0	99	100.0

* 기타: 도매시장의 물량소화력이 크기 때문 등.

- 도매시장, 공판장 출하시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금지급 지연(27.3%), 미수금 회수 곤란(20.2%)으로 나타났다.
- 대금지급 지연과 미수금 회수곤란은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과 거래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70. 도매시장, 공판장 출하시 문제점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검수가 까다롭고 주관적	6	12.2	2	11.1	1	3.1	9	9.1
대금지급이 지연됨	12	24.5	4	22.2	11	34.4	27	27.3
위탁판매시 최종대금 미확인	4	8.2	-	-	4	12.5	8	8.1
미수금 회수 곤란	8	16.3	6	33.3	6	18.8	20	20.2
물량인수 지연	8	16.3	3	16.7	6	18.8	17	17.2
이유 없는 대금 감액	5	10.2	1	5.6	-	-	6	6.1
시세 및 수수료 가 불리	6	12.2	2	11.1	4	12.5	12	12.1
계	49	100.0	18	100.0	32	100.0	99	100

- 농협 소비자유통을 포함하여 소비자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를 더 받기 때문(50.0%)이지만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응답도 14.8%로 나타났음.

표 3-71. 농협유통 및 소비자유통업체에 출하하는 이유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하품처리가 쉬워서	1	2.4	-	-	-	-	1	1.9
다른 판로가 없어서	1	2.4	-	-	-	-	1	1.9
시세를 더 받아서	25	61.0	1	8.3	1	100.0	27	50.0
선별 및 출하방법이 편해서	-	-	1	8.3	-	-	1	1.9
대금 떼일 염려가 없어서	2	4.9	6	50.0	-	-	8	14.8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자 권익보호	5	12.2	3	25.0	-	-	8	14.8
기타	7	17.1	1	8.3	-	-	8	14.8
계	41	100.0	12	100.0	1	100.0	54	100.0

* 기타: 가격안정성, 연중출하가능, 계통출하 기관이므로 신뢰 등.

- 소비자유통업체 출하시 대부분(75.9%)의 출하조직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조직도 24.1%에 이르고 있음.

표 3-72. 소비자유통업체 출하시 계약서 작성 여부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작성	31	75.6	10	83.3	-	-	41	75.9
작성하지않음	10	24.4	2	16.7	1	100.0	13	24.1
전체	41	100.0	12	100.0	1	100.0	54	100.0

- 소비자유통업체의 문제점으로는 검수가 까다롭고 주관적이다(34.6%), 대금지급이 지연된다(15.4%)의 순서로 조사됨.

표 3-73. 소비자유통업체 출하시 문제점

항 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검수가 까다롭고 주관적	15	38.5	3	25.0	-	-	18	34.6
대금지급이 지연	6	15.4	2	16.7	-	-	8	15.4
위탁판매의 대금확인 곤란	-	-	-	-	-	-	-	-
미수금 회수 곤란	2	5.1	-	-	-	-	2	3.8
물량 인수 지연	-	-	-	-	-	-	-	-
정당한 이유없는 대금 감액	3	7.7	1	8.3	-	-	4	7.7
시세불리 및 수수료 부담	1	2.6	-	-	-	-	1	1.9
하품처리 곤란	2	5.1	1	8.3	-	-	3	5.8
기타	10	25.6	5	41.7	1	100.0	16	30.8
계	39	100.0	12	100.0	1	100.0	52	100.0

* 기타: 계약서 때문에 시세반영이 곤란하다, 가격등락이 심하다 등.

- 거래처로부터 과도한 요구 혹은 계약 위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출하조 직이 24.7%에 이르고 특히 그 비율은 산지유통인들에게서 높게 (54.3%) 나타나고 있음.

표 3-74.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받은 경험 유무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있다	6	11.1	3	15.0	19	54.3	28	25.7
없다	48	88.9	17	85.0	16	45.7	81	74.3
계	54	100.0	20	100.0	35	100.0	109	100.0

-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가 가장 많은 거래처는 농협의 경우 소비자 유통업체라고 응답(66.7%)하였으나 산지유통인들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라고 응답(95%)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산지유통인들의 주 출하처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표 3-75.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한 거래처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도매시장, 공판장	1	16.7	-	-	19	95.0	20	71.4
소비자유통업체	4	66.7	2	100.0	-	-	6	21.4
소비자농협판매점	1	16.7	-	-	-	-	1	3.6
가공/급식/외식업체	-	-	-	-	-	-	-	-
기타	-	-	-	-	1	5.0	1	3.6
계	6	100.0	2	100.0	20	100.0	28	100.0

- 거래처가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빈도 역시 농협은 거의 없다(66.7%)고 응답하였으나 산지유통인은 일주일에 1번 정도 발생한다고 응답(90.0%)하여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표 3-76. 거래처의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 발생 빈도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일주일에 1번	-	-	-	-	18	90.0	18	64.3
한 달에 1번	1	16.7	2	100.0	1	5.0	4	14.3
두 달에 1번	-	-	-	-	-	-	-	-
6개월에 1번	1	16.7	-	-	1	5.0	2	7.1
거의 없음	4	66.7	-	-	-	-	4	14.3
계	6	100.0	2	100.0	20	100.0	28	100.0

- 거래처의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유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금 감액이 가장 많으며(53.6%)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규격 및 품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10.7%).

표 3-77.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유형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물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수하지 않음	1	16.7	-	-	-	-	1	3.6
규격 및 품위를 일방적으로 결정	1	16.7	1	50.0	1	5.0	3	10.7
대금지급 지연	3	50.0	-	-	-	-	3	10.7
물량인수 지체	-	-	-	-	1	5.0	1	3.6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금 감액	-	-	1	50.0	14	70.0	15	53.6
기타	1	16.7	-	-	4	20.0	5	17.9
계	6	100.0	2	100.0	20	100.0	28	100.0

* 기타: 할인행사 요구, 선별 작업이 불편

- 거래처의 계약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로 분쟁이 발생할 때 산지유통인의 90%는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고 농협은 양자간 협의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음(50%).

표 3-78. 계약위반이나 과도한 요구로 분쟁발생시 대응 방식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	3	50.0	-	-	2	10.0	5	17.9
거래처가 유리하게 해결	-		-	-	-	-	-	-
제3자의 중재로 해결	1	16.7	2	100.0	18	90.0	21	75.0
계약과기 및 법적 절차	2	33.3	-	-	-	-	2	7.1
계	6	100.0	2	100.0	20	100.0	28	100.0

* 제3자의 중재: 도매시장법인 경매사에 의한 중재를 의미함.

- 거래처의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71.4%)를 차지하였고 법적 대응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7.1% 수준임.

표 3-79. 거래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

항목	농협		영농법인		일반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우니까	-	-	-	-	-	-	-	-
다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서	2	33.3	-	-	-	-	2	7.1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아서	-	-	2	100.0	18	90.0	20	71.4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서	1	16.7	-	-	1	5.0	2	7.1
기타	3	50.0	-	-	1	5.0	4	14.3
계	6	100.0	2	100.0	20	100.0	28	100.0

- 대금지급 기한이 초과되는 빈도는 전혀 없다는 응답도 60.6%에 이르지만 가끔 발생한다는 응답도 14.7%로 조사되어 결제기한 초과 및 미수금 회수 문제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80. 대금지급 기한이 초과되는 빈도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매우 자주 발생	1	1.9	-	-	-	-	1	0.9
자주 발생	-	-	-	-	5	14.3	5	4.6
가끔 발생	11	20.4	3	15.0	2	5.7	16	14.7
거의 없음	17	31.5	3	15.0	1	2.9	21	19.3
전혀 없음	25	46.3	14	70.0	27	77.1	66	60.6
전체	54	100.0	20	100.0	35	100.0	109	100.0

- 대금지급 지연의 유형 중 가장 빈발하는 형태는 물량 인수 후 지급지연 (37.2%)이며 그 외 판매부진을 이유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도 20.9% 수준임.

표 3-81. 자주 발생하는 대금지급 지연 유형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계약 후 시세하락에 의한 인수거부 혹은 감액	1	3.3	-	-	1	14.3	2	4.7
물량 인수 후 대금지급 지연	13	43.3	1	16.7	2	28.6	16	37.2
수량이나 품질을 핑계로 감액	2	6.7	2	33.3	4	57.1	8	18.6
판매부진을 이유로 지급 지연	7	23.3	2	33.3	-	-	9	20.9
기타	7	23.3	1	16.7	-	-	8	18.6
계	30	100.0	6	100.0	7	100.0	43	100.0

* 기타: 단순계산 착오, 명절 등 성수기 때문에

- 대금지급 지연 시 대부분(83.7%)의 출하조직들은 전화나 구두 독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법률상담을 받거나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무하였음.

표 3-82. 대금지급 지연 시 대응 방식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전화나 구두 독촉	24	80.0	6	100.0	6	85.7	36	83.7
내용증명 발송	1	3.3	-	-	1	14.3	2	4.7
법률상담	-	-	-	-	-	-	-	-
고소, 고발	-	-	-	-	-	-	-	-
기타	5	16.7	-	-	-	-	5	11.6
계	30	100.0	6	100.0	7	100.0	43	100.0

* 기타: 특별한 대응을 할 수 없음 등.

- 대금지급 지연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하였고 88.4%의 출하조직이 법적 조치의 경험은 없는 것으로 응답함.

표 3-83. 고소, 고발, 압류 등 법적 조치의 경험 유무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있음	2	6.7	2	33.3	1	14.3	5	11.6
없음	28	93.3	4	66.7	6	85.7	38	88.4
전체	30	100.0	6	100.0	7	100.0	43	100.0

-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2.6%이나 해봐야 손해날 것 같았다는 응답도 34.2%에 달하였음.

표 3-84.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다른 출하처를 찾기 어려워서	-	-	-	-	-	-	-	-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17	60.7	3	75.0	-	-	20	52.6
방법을 몰라서	-	-	-	-	-	-	-	-
비용이 많이 들어서	-	-	-	-	-	-	-	-
해박야 손해 날 것 같아서	6	21.4	1	25.0	6	100.0	13	34.2
기타	5	17.9	-	-	-	-	5	13.2
계	28	100.0	4	100.0	6	100.0	38	100.0

- 한편, 법적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출하조직 전원(100%)이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표 3-85. 법적 조치 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항목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계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서류와 절차가 복잡해서	-	-	-	-	-	-	-	-
비용이 많이 들어서	-	-	-	-	-	-	-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2	100.0	2	100.0	1	100.0	5	100.0
후속작물을 심을 수 없어서	-	-	-	-	-	-	-	-
일손을 뺏겨서	-	-	-	-	-	-	-	-
계	2	100.0	2	100.0	1	100.0	5	100.0

(7) 정부에 대한 제도적 수요

- 청과물 유통의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소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별로 불필요하거나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9.2% 수준에 불과하였음.

표 3-86.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

	농협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전체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매우 필요	16	29.6	6	30.0	16	45.7	38	34.9
다소 필요	25	46.3	8	40.0	13	37.1	46	42.2
보통	7	13.0	4	20.0	4	11.4	15	13.8
별로 불필요	5	9.3	2	10.0	-	-	7	6.4
전혀 불필요	1	1.9	-	-	2	5.7	3	2.8
전체	54	100.0	20	100.0	35	100.0	109	100.0

-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 중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기존 공정거래법 강화하여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야한다 24.3%, 결제지연 또는 업체 파산에 대비해 채권확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가 23.4%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3-87.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제도

항목	응답					
	1순위	%	2순위	%	계	%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	25	22.9	21	19.3	46	21.1
공정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9	8.3	6	5.5	15	6.9
성실한 거래처를 선별할 수 있는 신용 정보 제공	20	18.3	19	17.4	39	17.9
결제 지연 또는 업체 파산 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	27	24.8	24	22.0	51	23.4
기존 공정거래법을 강화하여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	22	20.2	31	28.4	53	24.3
기타	6	5.5	8	7.3	14	6.4
합 계	109	100.0	109	100.0	218	100.0

* 2가지 복수 응답

4. 언론에 보도된 청과물 유통 분쟁 사례

표 3-88. 언론에 보도된 청과물 유통상의 분쟁 사례

계재 일자, 출처	기사 제목	기사 내용
2006년 6월 12일 농수축산신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재' 문제 분쟁현장 직접 입회	산물형태로 출하되기 때문에 품위평가가 어려운 품목(무, 배추)의 출하량 중 일정 비율을 판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재" 관행의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간에 마찰이 빚어짐.
2006년 8월 18일 농민신문	속박이 출하 기승	일기불순으로 무값이 높게 형성되자 속박이가 빈발하여 중도매인들로부터 가격조정 요구가 발생함.
2006년 8월 9일 농민신문	복숭아 부패로 중도 매인과 출하자 시비 빈번	장마 이후 복숭아가 쉽게 부패해 반품, 발주중단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가 부진하나 산지에서는 부패과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함.
2005년 8월 3일 농민신문	하품 출하농가 시세 보전 '얇체' 민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골머리	생산자가가락시장에 출하한 청과물이 터무니없게 낮게 낙찰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조사 결과 선별이 불량하고 상품성이 좋지 않았던 점이 밝혀졌으며 해당 출하주는 전년도에도 동일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음.
2005년 5월 11일 농민신문	발매기 후 실평수 적 다고 감액요구-생활 속의 법률지식	계약날인 이후 수확기에 실평수가 적다고 감액을 요구하는 수집상에 대해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감액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사례
2004년 9월 3일 농민신문	발매기 계약 취소 통 보했는데도 잔금 입 금	시세에 비해 계약금이 너무 적어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나 잔금이 입금된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 통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상담사례
2003년 8월 11일 농민신문	속박이 근절 왜 안되 나	속박이 관행이 끊이지 않고 그 유행도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어 가격하락을 유발시키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보도
2003년 6월 18일 농민신문	제주 마늘농가 침수 피해 입자 상인들 몇 대로 계산	마늘을 발매기로 사들인 상인들이 해당 포전이 침수피해를 입자 대금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구두계약시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
2002년 11월 20일 농민신문	채소류 중량 미달출 하 아직도	버섯, 상추, 고추 등 채소류는 자연감모가 발생하는 데다 애초부터 중량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 중도매인들이 납품처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2002년 9월 25일 농민신문	유통업체 직거래 농 가 '보호막' 없다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행사 기간 저가납품을 강요하고 중량속임, 가격폭리를 자행하지만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보도
2001년 7월 23일 농민신문	재래, 위탁시장 출하 대금 누락지급	재래, 위탁시장 상인들이 수탁후 가격정정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잦아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라는 보도
2000년 6월 23일 농민신문	발매기매매 구두계약 했는데 값폭락하자 수확거부, 잔금 못 받아	배추 발매기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으나 시세가 폭락하자 수확거부, 잔금지급도 미루어 헐값으로 다른 상인에게 처분

5. 설문조사 결과 및 언론보도의 시사점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들의 13.8%(표 3-23)가 청과물 출하시 거래처의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출하조직은 25.7%(표 3-74)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의 유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금감액 또는 대금지급 지연이 가장 많으나 그 해결을 위해 단순독촉 이외의 법적 조치를 취한 생산자나 출하조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생산자와 출하조직 모두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출하조직 중 법적 조치를 취해본 경험이 있는 조직 전원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점이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하였음.
- 아울러 언론 보도에서 지적된 ‘재’ 문제, 정산지연 문제, 중량미달 문제 등도 현 제도 하에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판정의 기준도 모호한 실정임.
- 상기 설문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사례를 종합하면 생산자와 출하조직의 상당수가 청과물 거래시 상대방의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경험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시정요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신속·저렴하고 효과 있는 절차와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적절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공정한 청과물 거래를 위해 정부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생산자의 74.2%(표 3-34), 출하조직의 77.1%(표 3-86)가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분재조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수요가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음.
- 공정한 청과물 유통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치 중 생산자와 출하조직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기존 공정거래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임(표 3-35, 표 3-87).
-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제도는 생산자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장치 도입이고, 출하조직의 경우 채권확보 제도임.

제 4 장. 소비지 유통업체 설문조사 결과

1. 소비지 유통업체 조사의 목적

- 청과물 유통과정 상의 의견충돌은 산지와 소비지간의 의견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산지 생산자(단체)의 의견 청취와 동시에 소비지의 의견도 청취하여 양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함.
- 또한 의견충돌의 원인은 소비지뿐만 아니라 산지에도 있으므로 소비지 유통업체가 보는 산지의 계약관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소비지 유통주체는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외식/급식업체,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임.
- 원물확보 및 판매 측면을 모두 조사한 생산자 단체 조사와는 달리 소비지조사에서는 구매측면의 거래관행과 구매시 불만족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
- 대형유통업체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소매업체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를 의미함.
- 중소유통업체란 할인점, 백화점, 체인스토어를 제외한 슈퍼마켓 중 매장면적이 50m²인 곳을 의미함.
- 외식급식업체란 통계청표준산업분류의 단체급식공급업, 급식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의미함.
- 중도매인이란 법정도매시장에서 경매(또는 위탁, 매수)에 참가하여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도록 허가받은 상인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가락시장 중도매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시장도매인이란 법정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설문대상 소비지 업체 분포

- 설문대상 소비지 업체
 -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청과물 유통을 담당하는 대형/중소 소매업체 38개소, 외식 및 급식업체 22개소,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45개소, 시장도매인 25개소가 최종 회수되었음(총 130매, 업체 리스트는 제4장의 부록 참고).

표 4-1. 조사대상 소비지 유통업체의 업태별 분포

	대형소매	중소 소매	외식/ 급식	중도매인	시장 도매인	계
응답수	15	23	22	45	25	130
%	11.5	17.7	16.9	34.6	19.2	100.0

- 설문에 응한 업체의 매출은 10~20억원이 30.2%로 가장 많고 5억원 이하인 업체가 27.6%임.
 - 대형소매업체는 대부분 300억원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중소소매업체 및 외식/급식업체는 대부분 연간 매출이 5억원 이하 였음.
 -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4-2. 소비지 응답업체의 매출(매입)분포

		5억원 이하	5~10억원	10~20억원	20~50억원	50~300억원	300억원이상	계
대형 소매	응답수	-	-	1	1	-	12	14
	%	-	-	7.1	7.1	-	85.7	100.0
중소 소매	응답수	14	1	1	1	-	-	17
	%	82.4	5.9	5.9	5.9	-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12	-	2	1	-	1	16
	%	75.0	-	12.5	6.3	-	6.3	100.0
중 도매인	응답수	5	5	19	12	3	-	44
	%	11.4	11.4	43.2	27.3	6.8	-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1	3	12	9	-	-	25
	%	4.0	12.0	48.0	36.0	-	-	100.0
전체	응답수	32	9	35	24	3	13	116
	%	27.6	7.8	30.2	20.7	2.6	11.2	100.0

- 매출대비 농산물 비중은 대형소매업체의 경우 15.7%, 중소소매업체는 35.1% 수준이며 외식/급식업체는 41.7% 수준임.
- 부류별 비중은 대형소매업체의 경우는 채소와 과일 매출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외식/급식업체의 경우에는 채소 매출이 약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한식의 특성상 채소는 주 식단에 포함되지만 과일은 기호식품으로서 후식용 또는 디저트용으로 활용되어 주 메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표 4-3. 부류별 청과물 매출(매입) 비중 평균

	농산물	과일	채소
대형소매	15.7	5.9	5.8
중소소매	35.1	18.6	11.7
외식/급식	41.7	7.3	30.5

*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은 과일이나 채소 어느 한쪽에 특화되어있음.

3. 소비자 업체 설문조사 결과

1) 구매채널별 거래방식 및 거래금액 비중

- 유통업체별로 과일과 채소의 주 구매채널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음.
- 대형업체는 구매채널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효율적인 구매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업체는 산지직거래 능력이 미약하여 주로 중도매인(방문구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농가, 농협, 영농법인, 산지수집상을 포함한 산지직거래 비율은 과일의 경우 34.3%, 채소는 39.6% 수준이며 특히 채소에서 중도매인을 통한 구매가 다소 높음.
- 중소유통의 경우 산지 직거래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도매시장 중도매인(과일 81.4%, 채소 72.7%), 도매상, 소비자 중간상/벤더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급식업체도 산지직구입의 비중이 낮으며, 중도매인, 소비자중간상/벤더업체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소비자 중간상/벤더의 비중이 높음.
- 중도매인은 주로 경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확보하나 일부 물량을 산지수집상(과일 14.3%, 채소 4.3%)으로부터 확보함.
- 시장도매인도 산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 직접 거래하기보다 수집상과 주로 거래하지만(과일 72.2%) 채소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 구매경로별 거래금액 비중

항목	품목	농가/작목 반	농협/ 연합 사업단	영농법인	산지 수집상/벤 더	중도매인(경매)	도매상/시 장도매인	농협종합 유통센터	소비자 중간상/벤 더	계
대형 유통	과일	4.3	23.0	2.8	4.2	37.5	22.9	1.5	3.9	100.0
	채소	3.8	23.8	6.2	5.8	44.2	11.9	1.5	2.7	100.0
중소 유통	과일	0.5	-	-	-	81.4	13.6	-	4.5	100.0
	채소	-	0.5	-	-	72.7	22.3	-	4.5	100.0
외식 급식	과일	-	-	-	9.3	52.0	-	3.0	35.7	100.0
	채소	2.6	2.6	-	2.1	46.3	-	2.3	44.0	100.0
중도 매인	과일	-	-	-	14.3	81.0	4.8	-	-	100.0
	채소	2.6	7.4	0.4	4.3	83.9	-	1.3	-	100.0
시장 도매 인	과일	-	5.6	-	72.2	-	5.6	16.7	-	100.0
	채소	10.0	-	10.0	40.0	10.0	13.0	14.0	3.0	100.0

* 구매경로란 소비자 유통업체에게 청과물을 공급하는 공급처 유형을 의미함.

* 중도매인의 경우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의미함.

- 과일과 채소간 구매채널은 사업규모보다 업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됨.
- 대형/중소 소매업체는 과일과 채소간 구매채널 차이가 크지 않으나 급식업체는 당일배송을 요구하는 업태의 특성상 부패하기 쉬운 채소류는 소비자 벤더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
- 시장도매인은 산지 수집상에게서 구매하는 비율이 크게 낮은 40%선이며 농가, 영농법인에게서 구매하는 비율이 과일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과일은 비교적 산지 규모화가 진전되어 수집상도 대규모 사업자가 많은 반면 채소류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수집상이 적어 구매채널 다양화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대형소매업체는 대부분 서면계약(74.6%)으로 원물을 조달하고 있음.
 -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수시구매 비율이 높으나(41.2%) 대량 소비품목은 서면계약으로 소량 구색상품은 도매시장에서 수시구매로 조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중소 소매업체는 서면계약보다 수시방문구매(96.5%)가 많기 때문에 구매채널별로도 서면계약을 체결한다는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 수시방문 구매는 거래 쌍방이 대면하여 품위를 확인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사후 분쟁소지는 적다고 판단됨.
 - 다만, 중형소매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는 검수를 샘플링으로만 실시하고 전체 물량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형소매업체의 거래방식이 대면(현금)거래이기 때문에 품위와 관련한 분쟁소지는 적을 수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채권회수에 의한 분쟁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외식/급식업체는 44.7%를 서면계약으로 구매하며 38.3%는 수시방문구매로 조달하고 있음.
 - 외식/급식업체는 위생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육안검수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고, 소형업체는 서면계약보다 당일 도매시장 방문구매가 많기 때문임.

- 시장도매인은 구두 계약율이 다소 높은 것(60.0%)으로 나타났음.
 - 주 구매채널인 산지 수집상과의 관계에서는 구두계약율(52.9%)과 서면계약율(47.1%)이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표 4-5. 매입처별 구매형태(%)

업체	계약형태	농가/작목반	산지농협/연합사업단	영농법인	산지수집상/벤더	중도매인(경매)	도매상/시장도매인	농협종합유통센터	소비자중간상/벤더	계
대형소매	구두	-	11.1	-	-	-	20.0	-	40.0	8.5
	서면	100	88.9	100.0	100.0	41.2	60.0	100.0	60.0	74.6
	수시	-	-	-	-	58.8	20.0	-	-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소매	구두	-	-	-	-	-	10.5	-	-	3.5
	서면	-	-	-	-	-	-	-	-	-
	수시	100.0	100.0	-	-	100.0	89.5	-	100.	9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식/급식	구두	-	-	-	40.0	19.0	-	-	13.3	17.0
	서면	100.0	100.0	-	40.0	9.5	-	50.0	86.7	44.7
	수시	-	-	-	20.0	71.4	-	50.0	-	3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장도매인	구두	-	100.0	-	52.9	100.0	100.0	66.7	100.0	60.0
	서면	100.0	-	100	47.1	-	-	33.3	-	40.0
	수시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시 구매는 계약 없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

2) 계약관계

- 품목별로 구두계약이 특별히 선호되는 품목은 없으나(87.1%) 시장도매인 중 일부(28%)는 시설채소에 한해 구두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 구두계약이 선호되는 품목이 있는지 여부

		비저장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	노지 조미채소	품목차이 없음	계
대형소매	응답수	-	-	1	-	14	15
	%	-	-	6.7	-	93.3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1	-	-	22	23
	%	-	4.3	-	-	95.7	100.0
외식/급식	응답수	-	1	-	-	21	22
	%	-	4.5	-	-	95.5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1	7	-	-	17	25
	%	4.0	28.0	-	-	68.0	100.0
계	응답수	1	9	1	-	74	85
	%	1.2	10.6	1.2	-	87.1	100.0

- 구두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도 단순히 관행이기 때문(40%)이거나 서면 계약이 번거롭기 때문(20%)이라고 응답함.
- 다만, 산지 생산자(단체)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로 나타나 구두계약 관행이 유통업체의 요구 외에 생산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구두계약 선호의 이유

	서면계약이 번거로워서	구두계약이 관행이라서	상대방이 원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기타	계
응답수	2	4	2	1	1	10
%	20.0	40.0	20.0	10.0	10.0	100.0

- 서면계약시 포함되는 항목은 업태와 사업규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대형소매업체는 결제조건, 규격 및 품위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외식/급식업체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소형소매업체는 중요 항목만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음.
- 시장도매인은 타 업태에 비해 전 항목을 골고루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8. 서면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항목

업태	총면적	총 물량	총 금액	개별 단가	수수료	규격 및 크기	등급과 품위	검수 방법	운송 책임	수확 책임	결제 조건	위약시 처분	
대형소매	응답수	6	7	4	5	4	8	8	5	9	2	12	9
	%	50.0	58.3	33.3	41.7	33.3	66.7	66.7	41.7	75.0	16.7	100.0	75.0
중소소매	응답수	-	1	1	-	-	1	-	-	1	-	1	1
	%	-	100.0	100.0	-	-	100.0	-	-	100.0	-	100.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	10	7	5	5	11	5	7	10	2	11	10
	%	18.2	90.9	63.6	45.5	45.5	100.0	45.5	63.6	90.9	18.2	100.0	90.9
시장도매인	응답수	12	12	11	13	12	12	11	11	12	12	12	12
	%	92.3	92.3	84.6	100.0	92.3	92.3	84.6	84.6	92.3	92.3	92.3	92.3
계	응답수	20	30	23	23	21	32	24	23	32	16	36	32
	%	54.1	81.1	62.2	62.2	56.8	86.5	64.9	62.2	86.5	43.2	97.3	86.5

* %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에 대한 비율임(대형소매 n=12 , 중소소매 n=1 , 외식/급식업체 n=11 , 시장도매인 n=13 , 계 n=37)

- 서면계약의 갱신 주기는 대부분 12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표 4-9. 계약 갱신의 평균 주기

업체		1개월	6개월	12개월	계
대형소매	응답수	-	1	1	2
	%	-	50.0	50.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	11	11
	%	-	-	100.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	-	10	11
	%	9.1	-	90.9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3	1	7	11
	%	27.3	9.1	63.6	100.0
계	응답수	4	2	29	35
	%	11.4	5.7	82.9	100.0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이 파기된 사례는 1건 뿐이었으며 그 사유도 공급업체의 파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통상적인 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으로 계약파기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희박한 것으로 추정됨.
- 계약파기 사례가 없다는 점은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분쟁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또는 판단주체가 없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즉, 일상적인 분쟁을 쌍방이 협의 조율하는 방식을 따를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산지 생산자로서는 손실을 감내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3) 발주 및 수송

- 대기업의 경우 발주 방식은 EDI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73.3%) 중소소매업체는 방문구매방식(78.3%)이 가장 높음.
- 외식/급식업체의 경우 EDI 방식이 36.4%로 가장 높으나 방문구매, 구

두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식도 골고루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 참여 구입이 42.2%에 불과하고 구두주문 비율이 37.8%에 달한 것은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나, 기록상장(형식경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상기 표 4-4에서도 중도매인이 산지 생산자, 영농법인, 농협 등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0. 평소 발주 방식

업태		구두/전화	팩스	EDI	경매참여	방문구매	계
대형소매	응답수	1	1	11	1	1	15
	%	6.7	6.7	73.3	6.7	6.7	100.0
중소소매	응답수	5	-	-	-	18	23
	%	21.7	-	-	-	78.3	100.0
외식급식	응답수	5	4	8	-	5	22
	%	22.7	18.2	36.4	-	22.7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7	9	-	19	-	45
	%	37.8	20.0	-	42.2	-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14	9	-	1	1	25
	%	56.0	36.0	-	4.0	4.0	100.0
계	응답수	42	23	19	21	25	130
	%	32.3	17.7	14.6	16.2	19.2	100.0

- 발주단위에 있어 업태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중량(Kg)단위 또는 박스(망) 단위로 발주함.
- 거래시 대부분(91.5%)의 유통주체가 영수증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은 영수증 수령시 기본적인 검수가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그러나 통상적인 영수증은 청과물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속박이, 부패, 등급미달 등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검수는 영수증 수령만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영수증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교부된다면 표준 영수증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청과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표준 영수증을 엄격히 규정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담는다는 의미가 때문에 해당 사항을 판단하고 인증해줄 판단주체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음.

표 4-11. 거래시 영수증의 수령 여부

업태		발행(수령)	미발행(미수령)	계
대형소매	응답수	14	1	15
	%	93.3	6.7	100.0
중소소매	응답수	22	1	23
	%	95.7	4.3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1	1	22
	%	95.5	4.5	100.0
중도매인	응답수	37	8	45
	%	82.2	17.8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25	-	25
	%	100.0	-	100.0
계	응답수	119	11	130
	%	91.5	8.5	100.0

- 운송책임과 운송비 부담은 업태보다 사업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형소매업체의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소매업체는 대부분 구매자가 부담(방문구매)하는 것(91.3%)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그 외 외식/급식업체,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도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중도매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장된 물량에 한해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은 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경매외 거래가 많은 데다 경매 후 점포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수송비를 하역노조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운송비 부담을 진다는 응답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표 4-12. 청과물 구매시 운송책임과 운송비 부담자

		공급자	구매자	계
대형소매	응답수	6	9	15
	%	40.0	60.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2	21	23
	%	8.7	91.3	100.0
외식/급식	응답수	9	13	22
	%	40.9	59.1	100.0
중도매인	응답수	25	20	45
	%	55.6	44.4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20	5	25
	%	80.0	20.0	100.0
계	응답수	62	68	130
	%	47.7	52.3	100.0

- 특별포장 요구 여부는 업태와 사업규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는 특별포장을 요구하는 비율이 46.7%에 이르나 중형소매업체는 26.1%만 요구한다고 응답하였음. 대형유통업체는 차별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산지에 특별 포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식/급식업체는 사업특성상 특별포장의 필요성은 낮음.
-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도 대부분 특별포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특별포장이 일정 부분 선별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품을 등급별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윤폭이 커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오히려 유통인들이 직접 특별포장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임.

표 4-13. 특별포장의 요구 여부

업체		요구함	요구하지 않음	계
대형소매	응답수	7	8	15
	%	46.7	53.3	100.0
중소소매	응답수	6	17	23
	%	26.1	73.9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	20	22
	%	9.1	90.9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	44	45
	%	2.2	97.8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3	22	25
	%	12.0	88.0	100.0
계	응답수	19	111	130
	%	14.6	85.4	100.0

- 특별포장 요구빈도가 잦은 대형소매업체의 경우 특별포장에 따른 비용은 구매 후 재포장하는 비율까지 합산하면 71.5%로 대부분 구매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양자가 분담한다는 비율도 28.6%에 이르나 특별포장은 마케팅 차원에서 산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원인이 라고 보기는 어려움.

표 4-14. 특별포장 요구시 해당 비용 부담자

		매입가 산입	공급자 부담	양자분담	구매후 재포장	계
대형소매	응답수	3	-	2	2	7
	%	42.9	-	28.6	28.6	100.0
중소소매	응답수	2	-	1	-	3
	%	66.7	-	33.3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	2	1	-	3
	%	-	66.7	33.3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	3	-	-	3
	%	-	100.0	-	-	100.0
시장도매	응답수	-	1	1	1	3

인	%	0.0	33.3	33.3	33.3	100.0%
계	응답수	5	6	5	3	19
		26.3	31.6	26.3	15.8	100.0

- PB(Private Brand) 적용여부도 특별포장과 마찬가지로 업체 및 사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소매업체는 60%가 PB를 적용하지만 중형소매업체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그 외 외식/급식업체,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도 사업특성상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PB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5. PB 적용 여부

업체		적용	미적용	계
대형소매	응답수	9	6	15
	%	60.0	40.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23	23
	%	-	100.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	21	22
	%	4.5	95.5	100.0
중도매인	응답수	-	45	45
	%	-	100.0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	25	25
	%	-	100.0	100.0
계	응답수	10	120	130
	%	7.7	92.3	100.0

- 소비자유통업체들이 운영중인 PB로는
- 롯데수퍼: 프루니에, 와이즐렉
- 이마트: 이플러스
- GS리테일: 햇살가득 신선야채
- CS유통: 잇츠굿
- 대구백화점: 자연마을, 티움, 더프라임, 아름다운 과수원

- 메가마트: 바스케아
 - 대동유통: 행복한 과일나라
 - 동방마트: 동방마트
 - 하늘농가: 하늘농가
- 이들 PB가 해당 부류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과일이 29.2%, 채소가 26.7%이나 업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동유통의 경우는 모든 과일에 100% PB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구백화점은 과일 및 채소 매출 중 PB 상품이 각각 40% 수준임.
 - 메가마트는 과일, 채소 각각 15%, 롯데수퍼는 14%, 25%, CS유통은 과일중 5%를 차지하고 있음.
 - 급식업체 중에서도 채소 전량(100%)에 대해 자체 브랜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표 4-16. PB 품목중 과일과 채소의 매출 비중

부류	과일	채소
%	29.2	26.7

- PB를 적용하는 업체 10개소 모두 일반적인 상품보다 검수기준이 더 높거나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어 PB를 고급화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저가 브랜드에 의한 매출확대보다 고가 브랜드를 이용한 이윤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표 4-17. 일반 상품 대비 PB 상품의 검수기준

	매우 엄격	다소 엄격	차이 없음	더 낮은 기준	매우 낮은 기준	계
응답수	2	5	3	-	-	10
%	20.0	50.0	30.0	-	-	100.0

4) 검수 및 검품

- 대형소매업체는 도착시 구매자가 검수하는 비율이 다수(73.3%)이나 소매업체 또는 외식/급식업체는 도매시장(출고지)에서 구매시 육안으로 직접 검수하는 경우가 많음.
- 중도매인의 경우 산지에서 공급자가 검수한다는 응답이 많은(37.8%) 것은 경매시 검수하는 외에 배추, 무와 같이 산물형태로 반입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검수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직접 산지를 개발하여 산지 생산자 단체와의 신뢰 하에 검수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 시장도매인도 대량의 물량을 일시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일일이 검수를 거처기 어려워 산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검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4-18. 검수시점 및 검수 주체

업체		산지에서 공급자가	산지에서 구매자가	도착시 구매자가	검수하지 않음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	3	11	-	1	15
	%	-	20.0	73.3	-	6.7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20	3	-	-	23
	%	-	87.0	13.0	-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	20	-	-	-	22
	%	9.1	90.9	-	-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7	7	19	2	-	45
	%	37.8	15.6	42.2	4.4	-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18	4	3	-	-	25
	%	72.0	16.0	12.0	-	-	100.0
계	응답수	37	54	36	2	1	130
	%	28.5	41.5	27.7	1.5	0.8	100.0

- 검수기준은 농관원 기준의 활용도가 10.8%에 불과하였고 경험에 따른 기준(35.4%) 또는 자체 기준(36.2%)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우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이 명시적인 검수기준을 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험에 따른 기준과 동일하게 분류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대형소매업체를 제외하면 자체 기준을 수립하거나 농관원 기준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객관적인 농관원 기준 또는 자체 수립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서는 품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표 4-19. 검수적용 기준

업체		농관원 기준	자체 기준	농관원 및 자체기준	경험에 따른 기준	계
대형소매	응답수	1	6	5	3	15
	%	6.7	40.0	33.3	20.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1	2	20	23
	%	-	4.3	8.7	87.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	5	6	10	22
	%	4.5	22.7	27.3	45.5	100.0
중도매인	응답수	5	21	9	10	45
	%	11.1	46.7	20.0	22.2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7	14	1	3	25
	%	28.0	56.0	4.0	12.0	100.0
계	응답수	14	47	23	46	130
	%	10.8	36.2	17.7	35.4	100.0

- 검수방법도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76.2%)으로 조사되어 품위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0. 검수 방법

업체		전수검 사	전체 개봉 후 상단만 검사	일부 개봉 후 상단만 검사	일부 개봉 후 날개 검사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	-	3	10	2	15
	%	-	-	20.0	66.7	13.3	100.0
중형소매	응답수	1	1	13	7	1	23
	%	4.3	4.3	56.5	30.4	4.3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	-	13	5	2	22
	%	9.1	-	59.1	22.7	9.1	100.0
중도매인	응답수	4	2	28	5	6	45
	%	8.9	4.4	62.2	11.1	13.3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8	1	12	3	1	25
	%	32.0	4.0	48.0	12.0	4.0	100.0
계	응답수	15	4	69	30	12	130
	%	11.5	3.1	53.1	23.1	9.2	100.0

- 검수결과에 대한 공급자와의 의견 불일치 비율은 4.6%가 잦음 혹은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4-21. 검수결과에 대한 공급자와 의견 불일치 빈도

업체		매우 잦음	잦음	보통	가끔 있음	거의 없음	계
대형소매	응답수	-	1	2	1	11	15
	%	-	6.7	13.3	6.7	73.3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2	-	-	21	23
	%	-	8.7	-	-	91.3	100.0
외식/급식	응답수	-	-	-	-	22	22
	%	-	-	-	-	100.0	100.0
중도매인	응답수	2	1	1	15	26	45
	%	4.4	2.2	2.2	33.3	57.8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	-	-	7	18	25
	%	-	-	-	28.0	72.0	100.0
계	응답수	2	4	3	23	98	130
	%	1.5	3.1	2.3	17.7	75.4	100.0

- 검수결과에 대한 거래 쌍방의 의견 불일치는 공급자 의식부족(58.2%), 수송상의 문제(25.3%)의 순으로 조사되어 주로 산지 측(생산자 또는 수집상 등)이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22. 의견불일치의 발생 이유

업태		공급자 의식부 족	표준등 급의 애매함	수송상 의 문제	검수자 전문성 부족	너무 엄격한 검수기 준	계
대형소매	응답수	7	2	1	-	-	10
	%	70.0	20.0	10.0	-	-	100.0
중소소매	응답수	17	-	1	-	-	18
	%	94.4	-	5.6	-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8	-	9	1	-	18
	%	44.4	-	50.0	5.6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2	6	4	-	1	23
	%	52.2	26.1	17.4	-	4.3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2	3	5	-	-	10
	%	20.0	30.0	50.0	-	-	100.0
계	응답수	46	11	20	1	1	79
	%	58.2	13.9	25.3	1.3	1.3	100.0

- 소비자 유통업체 자신들의 검수기준에 대해서는 64.6%의 업체가 상당히 객관적 혹은 매우 객관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주관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4%에 불과함.
- 이는 상기 검수 결과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원인이 공급자 의식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검수방법, 검수기준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도매인들의 경우 주관적 또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응답도 일부 있지만 그 비율(15.6%)은 크지 않음.

표 4-23. 구매자 측 검수기준의 객관성 정도

업체		매우 객관적	상당히 객관적	보통	다소 주관적	매우 주관적	계
대형소매	응답수	2	4	9	-	-	15
	%	13.3	26.7	60.0	-	-	100.0
중소소매	응답수	2	10	11	-	-	23
	%	8.7	43.5	47.8	-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	12	9	-	-	22
	%	4.5	54.5	40.9	-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5	27	6	3	4	45
	%	11.1	60.0	13.3	6.7	8.9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5	16	4	-	-	25
	%	20.0	64.0	16.0	-	-	100.0
계	응답수	15	69	39	3	4	130
	%	11.5	53.1	30.0	2.3	3.1	100.0

- 대부분의 공급자가 검수결과에 대해 심각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는 것 (70%)으로 조사되었으나 재검사(6.2%) 또는 일부 의견수용(6.9%)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도매인의 경우는 공급자 의견을 수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17.8%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주의 항의가 있을 때 도매법인(경매사)이 양자간 의견조율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4-24. 검수 결과에 대한 의견 불일치시 처리 방식

업체		심각한 이의제기는 없음	객관적으로 재검사	구매자의 판정을 그대로 적용	공급자 의견을 일부 수용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11	-	2	-	2	15
	%	73.3	-	13.3	-	13.3	100.0
중소소매	응답수	18	1	1	-	3	23
	%	78.3	4.3	4.3	-	13.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0	-	1	-	1	22
	%	90.9	-	4.5	-	4.5	100.0
중도매인	응답수	25	5	6	8	1	45
	%	55.6	11.1	13.3	17.8	2.2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17	2	5	1	-	25
	%	68.0	8.0	20.0	4.0	-	100.0
계	응답수	91	8	15	9	7	130
	%	70.0	6.2	11.5	6.9	5.4	100.0

- 검수기준에 미달하는 물량의 처리는 업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대형/중형소매업체는 반품 후 재입고를 요청하는 비율 43%~65% 수준이지만, 외식/급식업체는 그 비율이 86.4%에 이룸.
- 소매업체는 기준 미달 물량을 입고시키더라도 판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외식/급식업체는 위생사고 발생가능성 때문에 반품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반면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은 하자있는 상품이라도 다양한 거래처에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품 대신 금액을 감액하거나 상품성 있는 일부만 입고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5. 품위 미달 물량의 처리 방식

업체		감액후 매입	반품 후 재입고 요구	상품성 있는 일부만 입고	다른 공급자에 게 공급요청	기타	계
대형소 매	응답수	1	9	1	-	4	15
	%	6.7	60.0	6.7	-	26.7	100.0
중소소 매	응답수	1	15	-	1	6	23
	%	4.3	65.2	-	4.3	26.1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1	19	1	-	1	22
	%	4.5	86.4	4.5	-	4.5	100.0
중도매 인	응답수	18	9	16	-	2	45
	%	40.0	20.0	35.6	-	4.4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15	5	3	-	2	25
	%	60.0	20.0	12.0	-	8.0	100.0
계	응답수	36	57	21	1	15	130
	%	27.7	43.8	16.2	0.8	11.5	100.0

5) 대금결제 및 비용정산

- 구매단가 결정 기준도 업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대형소매업체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66.7%)으로 삼고 있으나 산지와 직거래도 많기 때문에 생산자 제시가격을 기준

으로 협의하는 비율(20.%)도 높게 나타남.

- 중소소매업체는 도매시장 방문구매가 많아 대부분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의해 구매단가를 결정(82.6%)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경락가격과 전국 수급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매단가를 결정(경매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도매인은 전국적인 수집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국 수급상황을 많이 고려(60%)하고 있음.

표 4-26. 구매단가 결정 기준

업체		도매시장 경락가격	전국 수급 상황	산지 시세	생산자 제시 가격	기타	계
대형소 매	응답수	10	1	-	3	1	15
	%	66.7	6.7	-	20.0	6.7	100.0
중소소 매	응답수	19	2	-	2	-	23
	%	82.6	8.7	-	8.7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11	3	-	8	-	22
	%	50.0	13.6	-	36.4	-	100.0
중도매 인	응답수	26	15	1	3	-	45
	%	57.8	33.3	2.2	6.7	-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8	15	2	-	-	25
	%	32.0	60.0	8.0	-	-	100.0
계	응답수	74	36	3	16	1	130
	%	56.9	27.7	2.3	12.3	0.8	100.0

- 대형소매업체는 도매시장 경락가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중형소매업체는 10~20%정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음.
- 이들 업체가 도매시장에서 구매할 때는 경락가격에 중도매인의 정상이윤을 더하여 계산되고 산지와 직거래할 때는 통상적으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에서 제반수수료를 공제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 따라서 오히려 더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대부분 산지와 직거래하는

사례라고 판단됨.

- 중도매인의 경우 경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한다고 응답한 사례 (28.9%)도 산지와 직거래하는 사례라고 판단됨.
- 시장도매인은 대부분 도매시장 경락가격과 대등한 수준으로 구매 (80%)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시장내 경매시장(특히 강서시장내 도매법인)보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물량확보에 차질을 빚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산지에서 직거래로 구매하므로 도매시장 물량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이유는 없음.

표 4-27. 도매시장 경락가 대비 구매단가 수준

업태		동일	0~10% 높음	10~20% % 높음	20~30% % 높음	30% 이상 높음	오히려 낮음	계
대형 소매	응답수	1	8	4	-	-	2	15
	%	6.7	53.3	26.7	-	-	13.3	100.0
중소 소매	응답수	1	9	13	-	-	-	23
	%	4.3	39.1	56.5	-	-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2	5	15	-	-	-	22
	%	9.1	22.7	68.2	-	-	-	100.0
중도매 인	응답수	22	6	2	-	2	13	45
	%	48.9	13.3	4.4	-	4.4	28.9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20	4	1	-	-	-	25
	%	80.0	16.0	4.0	-	-	-	100.0
계	응답수	46	32	35	-	2	15	130
	%	35.4	24.6	26.9	-	1.5	11.5	100.0

- 시세변동의 반영은 서면계약 여부 및 계약항목과 관련되는 사항임.
- 시세변동시 소비지 유통업체는 대부분(86.2%)은 특별히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절차없이 시세대로 구매하고 있음.
- 서면계약율이 높은 대형소매업체와 외식/급식업체는 일정기간별로 시세를 반영(33.3%)하고 있음.
- 중형소매업체는 방문구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구매하는 방식 중

심입.

- 시장도매인은 서면계약율이 40%(표 4-5)이고 서면계약 체결시 개별 단가를 계약항목에 포함하는 비율이 100%(표 4-8)이지만 가격변동은 대부분 시세변동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4-28. 시세변동을 구매가에 반영하는 방식

업태		시세대로 구매	일정기간별 반영	일정수준을 넘을 때 반영	거의 고정가격 위주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10	5	-	-	-	15
	%	66.7	33.3	-	-	-	100.0
중소소매	응답수	21	2	-	-	-	23
	%	91.3	8.7	-	-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3	8	-	1	-	22
	%	59.1	36.4	-	4.5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43	2	-	-	-	45
	%	95.6	4.4	-	-	-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25	-	-	-	-	25
	%	100.0	-	-	-	-	100.0
계	응답수	112	17	-	1	-	130
	%	86.2	13.1	-	0.8	-	100.0

* 일정기간별 반영: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거래가격을 갱신하는 방식

- 일정기간별로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업체 중 16개업체의 경우 56.3%가 15일 간격으로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7일 간격으로 반영하는 업체는 18.8%임.
- 대형 및 중소소매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조정 기간이 짧은 편이나 그 외 업태는 가격조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임.

표 4-29. 시세변동을 기간별로 반영할 경우 반영기간

업체		3일 정도	7일 정도	15일 정도	20일 정도	30일 정도	계
대형소 매	응답수	1	2	1	-	1	5
	%	20.0	40.0	20.0	-	20.0	100.0
중소소 매	응답수	1	1	-	-	-	2
	%	50.0	50.0	-	-	-	100.0
외식/급 식	응답수	-	-	7	-	-	7
	%	-	-	100.0	-	-	100.0
중도매 인	응답수	-	-	1	1	-	2
	%	-	-	50.0	50.0	-	100.0
계	응답수	2	3	9	1	1	16
	%	12.5	18.8	56.3	6.3	6.3	100.0

* 기간별로 시세를 반영하는 17개 업체중 1개 업체는 무응답

- 시세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반영하는 경우는 응답이 없었음.
-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7일 내지 15일 내에 대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을 둘 이유는 없기 때문임.
- 다만, 롯데수퍼의 경우 일정기간별 반영을 주로 하되, 긴급한 시세변동이 있을 경우(20%) 기간에 관계없이 시세를 반영토록 하는 사례는 있음.
- 대금지급 기한은 서면계약여부 고정거래 관계형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임.
- 전체적으로 42.3%가 도착후 즉시 지급하지만 대형소매업체는 최장 20일(통상 15일 간격) 이내로 지급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산지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0일 이내에 정산(40%)한다는 응답은 도매법인과의 정산을 의미함.
- 도매법인과의 정산기한은 법인마다 다르지만 가락시장의 경우 통상 10일 내외에 입금해야하며 10일을 초과하는 미수금은 거래규모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음.

표 4-30. 구입대금 지급 기한

업체		출발전 선금	도착후 즉시	5일내	10일내	20일내	40일내	40일 이상	계
대형 소매	응답수	-	1	1	2	6	3	2	15
	%	-	6.7	6.7	13.3	40.0	20.0	13.3	100.0
중소 소매	응답수	-	19	1	2	-	1	-	23
	%	-	82.6	4.3	8.7	-	4.3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	8	1	-	9	4	-	22
	%	-	36.4	4.5	-	40.9	18.2	-	100.0
중도 매인	응답수	-	10	11	18	5	1	-	45
	%	-	22.2	24.4	40.0	11.1	2.2	-	100.0
시장 도매인	응답수	-	17	6	2	-	-	-	25
	%	-	68.0	24.0	8.0	-	-	-	100.0
계	응답수	-	55	20	24	20	9	2	130
	%	-	42.3	15.4	18.5	15.4	6.9	1.5	100.0

- 구입대금의 결제 기한 초과는 17.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중도매인은 33.3%로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대형소매업체는 자금여유가 있어 결제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고 방문구매 위주인 중소소매업체도 현장에서 즉시 결제하므
로 미수는 발생시키지 않음.
- 중도매인의 결제는 주로 도매시장법인과의 정산을 의미하며 중도매인
영업허가시 거래규모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토록 되어 있고 미수한도도
보증금과 거래규모에 비례하게 정해져 있음³⁾.

3) 도매시장의 유동자산 대비 외상미수금 비율은 전주청과, 울산중앙청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며 가락시장에서는 서울청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음. 2004년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
과 보고서, 농림부, 2006.1.

표 4-31. 대금결제기 기한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 여부

업태		매우 잦음	잦은 편임	보통	가끔 있음	거의 없음	계
대형소매	응답수	-	-	-	-	15	15
	%	-	-	-	-	100.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	1	1	21	23
	%	-	-	4.3	4.3	91.3	100.0
외식/급식	응답수	-	1	-	1	20	22
	%	-	4.5	-	4.5	90.9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	1	1	12	30	45
	%	2.2	2.2	2.2	26.7	66.7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	-	-	2	23	25
	%	-	-	-	8.0	92.0	100.0
계	응답수	1	2	2	16	109	130
	%	0.8	1.5	1.5	12.3	83.8	100.0

- 담보 또는 보증 증권은 고정거래 관계가 형성된 경우 설정됨.
-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담보 또는 보증증권을 제공하는 비율이 20~28% 수준으로 나타난 점에서 이들이 고정적 대규모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담보 및 보증증권이 생산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도매법인의 선지 급제도가 있는 법정도매시장보다 시장 외 거래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대형 및 중소소매점, 외식/급식업체들이 담보나 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산지 출하조직들이 신규거래처를 개척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하는 채권확보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금정산을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4-32. 대금지급을 위한 담보나 보증증권의 제공 여부

업태		제공	미제공	계
대형소매	응답수	-	15	15
	%	-	100.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23	23
	%	-	100.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	22	22
	%	-	100.0	100.0
중도매인	응답수	9	36	45
	%	20.0	80.0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7	18	25
	%	28.0	72.0	100.0
계	응답수	16	114	130
	%	12.3	87.7	100.0

- 대금지급 시 19.2% 업체가 일부 공제항목이 있다고 응답함.
- 상대적으로 시장도매인의 비율이 높았으며(40%) 방문구매 중심인 중소소매업체는 비율이 낮음(4.3%)

표 4-33. 대금지급시 일부 공제항목이 있는지 여부

업태		있음	없음	계
대형소매	응답수	5	10	15
	%	33.3	66.7	100.0
중소소매	응답수	1	22	23
	%	4.3	95.7	100.0
외식/급식	응답수	3	19	22
	%	13.6	86.4	100.0
중도매인	응답수	6	39	45
	%	13.3	86.7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10	15	25
	%	40.0	60.0	100.0
계	응답수	25	105	130
	%	19.2	80.8	100.0

- 대금정산시 별도 공제항목은 주로 물류비이며 대형소매업체가 가장 높은 비율(83.3%)을 나타내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구입가는 도착도 기준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하는 물류비는 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표 4-34. 비용공제 항목

업체		물류비	관측비	검품비	검사비용	판매사원임금	포장비	기타	계
대형 소매	응답수	5	1	-	-	-	-	-	6
	%	83.3	16.7	-	-	-	-	-	100.0
중소 소매	응답수	1	-	-	-	-	-	-	1
	%	100.0	-	-	-	-	-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2	-	-	-	-	1	-	3
	%	66.6	-	-	-	-	33.3	-	100.0
계	응답수	8	1	-	-	-	1	-	10
	%	80.0	10.0	-	-	-	10.0	-	100.0

* 2개 이상에 응답한 업체(3개소)는 각각의 응답을 하나로 계산함.

6) 계약위반과 대응

- 청과물 구매시 공급자의 계약위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사(94.6%)되었으나 청과물의 특성상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손실이 급속히 확대되기 때문에 일부의 계약위반이라도 무시하기는 어려움.
- 일부이기는 하나 외식/급식업체에서 매일 계약위반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위생과 관련된 품위 위반일 것으로 추정됨.
- 그 외 계약위반은 일주일~1개월에 한 번 정도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5. 청과물 구매시 거래처의 계약위반 발생 빈도

업 태		거의 매일 발생	3~4일 에 한번 발생	일주일 에 1번 발생	한달에 1번	거의 발생하 지 않음	계
대형소매	응답수	-	-	1	1	13	15
	%	-	-	6.7	6.7	86.7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	2	-	21	23
	%	-	-	8.7	-	91.3	100.0
외식/급 식	응답수	1	-	-	-	21	22
	%	4.5	-	-	-	95.5	100.0
중도매인	응답수	-	-	-	2	43	45
	%	-	-	-	4.4	95.6	100.0
시장도매 인	응답수	-	-	-	-	25	25
	%	-	-	-	-	100.0	100.0
계	응답수	1	-	3	3	123	130
	%	0.8	-	2.3	2.3	94.6	100.0

- 납품처의 계약위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 중에서도 다수가 품위위반 경험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94.1%가 품위위반을 지적한 바, 상품의 비 균질성이 청과물 거래의 가장 큰 장애인 점을 시사함.
- 계약위반 중 품위 위반이 많다는 것은 검수기준의 객관화, 검수판단 주체설정, 검수결과의 증거효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조정 기준이 수립될 필요성을 제기함.

표 4-36. 공급자의 계약위반 유형

업태		품위위반	물량 위반	장소 위반	일시 위반	계
대형소매	응답수	10	-	-	-	10
	%	100.0	-	-	-	100.0
중소소매	응답수	16	-	-	-	16
	%	100.0	-	-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6	-	1	-	17
	%	94.1	-	5.9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6	2	-	-	8

	%	75.0	25.0	-	-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	-	-	-	-
	%	-	-	-	-	-
계	응답수	48	2	1	-	51
	%	94.1	3.9	2.0	-	100.0

- 품위위반 등 계약위반에 대해 소비자 업체들은 반품(43.1%)을 통해 해결하지만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다(29.4%)는 응답의 경우 위반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됨.

표 4-37. 공급자의 계약위반시 처리 방식

업태		명확한 방법이 없음	감액 또는 손실비용 청구	반품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3	1	1	3	1	9
	%	33.3	11.1	11.1	33.3	11.1	100.0
중소소매	응답수	3	3	7	3	-	16
	%	18.8	18.8	43.8	18.8	-	100.0
외식/급식	응답수	5	-	11	-	1	17
	%	29.4	-	64.7	-	5.9	100.0
중도매인	응답수	3	2	3	-	-	8
	%	37.5	25.0	37.5	-	-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1	-	-	-	-	1
	%	100.0	-	-	-	-	100.0
계	응답수	15	6	22	6	2	51
	%	29.4	11.8	43.1	11.8	3.9	100.0

- 조사대상 업체 중 84.6%가 분쟁사항이 양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1주일에 한번 발생한다는 응답이 3.8%, 6개월에 한번 정도 발생한다는 응답이 11.5%로 조사됨.
- 특히 이 비율은 상기 표 4-35에서 공급자의 계약위반이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번 발생한다는 응답과 대등한 수치임.

표 4-38.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빈도

업체		1주일에 1번	1달에 1번	2~3달 에 1번	6달에 1번	거의 없음	계
대형소 매	응답수	1	-	-	1	13	15
	%	6.7	-	-	6.7	86.7	100.0
중소소 매	응답수	2	-	-	2	19	23
	%	8.7	-	-	8.7	82.6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	-	-	3	19	22
	%	-	-	-	13.6	86.4	100.0
중도매 인	응답수	2	-	-	8	35	45
	%	4.4	-	-	17.8	77.8	100.0
시장도 매인	응답수	-	-	-	1	24	25
	%	-	-	-	4.0	96.0	100.0
계	응답수	5	-	-	15	110	130
	%	3.8	-	-	11.5	84.6	100.0

- 양자간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험이 있는 20개 업체 중 9개업체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응답(45%)하였음.
- 중도매인은 10개업체 중 5개업체가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매법인(경매사)가 중재에 나서기 때문임.

표 4-39. 양자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처리 방법

업체		대책이 없음	손실을 안고 계약해 지	제3자의 중재	법적조 치	기타	계
대형소 매	응답수	1	-	-	1	-	2
	%	50.0	-	-	50.0	-	100.0
중형소 매	응답수	2	-	-	2	-	4
	%	50.0	-	-	50.0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	3	-	-	-	3
	%	-	100.0	-	-	-	100.0
중도매 인	응답수	5	-	5	-	-	10
	%	50.0	-	50.0	-	-	100.0

시장도 매인	응답수	1	-	-	-	-	1
	%	100.0	-	-	-	-	100.0
계	응답수	9	3	5	3	-	20
	%	45.0	15.0	25.0	15.0	-	100.0

- 거래 쌍방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은 여러 항목에 걸쳐 골고루 나타남.
- 따라서 청과물 유통의 불만사항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보다 포괄적인 유통개선 정책이 수립되어야함.

표 4-40. 양자간 협의가 안될 경우 가장 어려웠던 점

업태		시간지체에 의한 손실증가	증빙확보 곤란	중립적 제3자 부재	불명확한 거래관행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	1	1	-	13	15
	%	-	6.7	6.7	-	86.7	100.0
중형소매	응답수	3	1	-	-	19	23
	%	13.0	4.3	-	-	82.6	100.0
외식/급식	응답수	2	-	1	-	2	5
	%	40.0	-	20.0	-	40.0	100.0
중도매인	응답수	-	2	1	2	1	6
	%	-	33.3	16.7	33.3	16.7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	1	-	-	-	1
	%	-	100.0	-	-	-	100.0
계	응답수	5	5	3	2	35	50
	%	25.0	25.0	25.0	10.0	15.0	100.0

-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실제 법적 조치를 실행하려고 계획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계약을 위반한 공급자에게 법적 조치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일상적인

사항 즉, 심각한 손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시간 또는 비용문제(5.4%), 절차와 방법상의 어려움(3.1%)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의 경우 효율적인 불만해결 장치가 제공된다면 제도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4-41. 법적 조치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

		사회적 여론 때문	심각한 손해는 아니었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기타	계
대형소매	응답수	-	10	3	1	1	15
	%	-	66.7	20.0	6.7	6.7	100.0
중소소매	응답수	-	23	-	-	-	23
	%	-	100.0	-	-	-	100.0
외식/ 급식	응답수	-	22	-	-	-	22
	%	-	100.0	-	-	-	100.0
중도매인	응답수	2	37	3	3	-	45
	%	4.4	82.2	6.7	6.7	-	100.0
시장도매 인	응답수	2	22	1	-	-	25
	%	8.0	88.0	4.0	-	-	100.0
계	응답수	4	114	7	4	1	130
	%	3.1	87.7	5.4	3.1	0.8	100.0

- 청과물유통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주로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희망하여 청과물 거래 시 분쟁해결은 신속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소비자 유통업체들은 신속한 조사제도 34.6%, 신속한 분쟁해결제도 32.3%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외식/급식업체는 당일구매/당일소비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표 4-42. 청과물 거래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1순위)

업태		신속한 조사제도	계약서 작성의무 화	신속한 분쟁해결제 도	책임소재 의 명확화	계
대형소매	응답수	7	4	3	9	14
	%	30.4	17.4	13.0	39.1	100.0
중소소매	응답수	6	3	8	4	21
	%	28.6	14.3	38.1	19.0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6	2	2	1	21
	%	76.2	9.5	9.5	4.8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0	9	18	9	37
	%	21.7	19.6	39.1	19.6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6	4	11	4	25
	%	24.0	16.0	44.0	16.0	100.0
계	응답수	45	13	42	18	118
	%	33.1	16.2	30.9	19.9	100.0

- 청과물 유통의 계약이행을 위해 2순위로 요구되는 제도는 책임소재의 명확화(41.8%)인 것으로 조사됨.
- 청과물 특히 채소류는 수송과정에서도 변질되기 쉽고 구매자가 보관하는 중에도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표 4-43. 청과물 거래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2순위)

업태		신속한 조사제도	계약서 작성의무화	신속한 분쟁해결제도	책임소재 명확화	계
대형소매	응답수	1	1	6	3	11
	%	9.1	9.1	54.5	27.3	100.0
중소소매	응답수	2	2	5	7	16
	%	12.5	12.5	31.3	43.8	100.0
외식/급식	응답수	-	2	6	12	20
	%	-	10.0	30.0	60.0	100.0
중도매인	응답수	8	5	5	12	30
	%	26.7	16.7	16.7	40.0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4	5	5	7	21
	%	19.0	23.8	23.8	33.3	100.0
계	응답수	15	15	27	41	98
	%	15.3	15.3	27.6	41.8	100.0

- 상기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할 경우 소비자 유통업체들이 청과물 유통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는 신속한 분쟁해결제도, 신속한 조사제도, 책임소재의 명확화 순으로 나타남.

표 4-44. 청과물 거래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종합)

업태		신속한 조사제도	계약서 작성의무화	신속한 분쟁해결제도	책임소재 명확화	계
대형소매	응답수	8	5	9	3	25
	%	32.0	20.0	36.0	12.0	100.0
중소소매	응답수	8	5	13	11	37
	%	21.6	13.5	35.1	29.7	100.0
외식/급식	응답수	16	4	8	13	41
	%	39.0	9.8	19.5	31.7	100.0
중도매인	응답수	18	5	23	21	67
	%	26.9	7.5	34.3	31.3	100.0
시장도매인	응답수	10	9	16	11	46
	%	21.7	19.6	34.8	23.9	100.0
계	응답수	60	28	69	59	216
	%	27.8	13.0	31.9	27.3	100.0

- 기타 청과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는
 - 반품기준이 불명확하여 반품여부 및 반품 시 손실분담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수기준의 명확화를 기반으로 반품기준을 수립할 필요성 제기
 - 저온시설 부족으로 유통단계에서 신선도가 하락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책임소재 불명확
 - 농약 잔류 문제가 품위판정 기준에 없어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청과물 유통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인 속박이가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

4. 소비자 유통업체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청과물 거래시 계약위반을 경험한 소비자유통업체는 5.4%수준(표 4-35)에 불과하지만 계약위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업체들도 품위위반은 대부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94.1%, 표 4-36).
 - 이는 계약위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청과물 유통상의 가장 큰 장애인 비균질 상품 혼입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함.
 - 따라서 검수기준의 객관화, 검수주체의 자격과 권한, 검수결과의 효력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계약위반 또는 품위위반이 발생하더라도 43.1%(표 4-37)의 업체들이 명확한 처리방법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계약위반 유형별, 사안별로 주관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형평성, 적절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계약위반에 따른 양자간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45%(표 4-38)로 나타나 재 검수, 이의제기 등과 같은 처리절차 및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분쟁 발생시 거래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골고루 지적함으로써 한 가지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청과물 유통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주로 신속한 조사(38.1%, 표 4-44) 및 신속한 분쟁해결(35.6%) 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갖추어져야할 것으로 파악됨.

- 구매형태를 보면 대형소매점은 여러 구매처에 대해 분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서면계약 방식(74.6%, 표 4-5)을 선호하고 있으나 중소 소매업체는 과일 81.4%, 채소 72.7%(표 4-4)를 중도매인으로부터 방문구매하고 있음.
- 외식/급식업체도 업체의 특성상 중도매인으로부터 수시방문구매하는 방식이 71.4%(표 4-5) 수준임.
-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수집상 또는 산지 벤더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과일, 채소 각각 72.7%, 40.0% 표 4-4)이 생산자 또는 산지농협을 통한 구매비율(16.7%, 14% 표 4-4)보다 매우 높으며 구두계약 비율이 60%(표 4-5) 수준임.

- 구두계약이 선호되는 품목은 없고 단순히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표 4-7) 수준으로 나타나 의식개선 또는 서면계약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계약에 포함되는 항목은 업체별로 상이하여 대형소매업체와 시장도매인은 대부분의 항목을 포함(표 4-8)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소매업체는 기본사항만을 서면계약에 포함하고 있으며 외식/급식업체는 업체별로 기본 사항만을 포함하는 경우와 여러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남.

- 거래시 91.5%(표 4-11)의 업체가 영수증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을 엄격히 표준화함으로써 일정부분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키거나 검수의 객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운송책임은 서면계약이 많은 대형소매업체의 경우에도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표 4-12)이며 방문구매가 많은 중소소매업체, 외식/급식업체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음.
-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별포장 요구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요구비율이 46.7%(표 4-13) 수준으로서 차별화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별포장을 요구하는 비율이 타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별포장 시 해당 비용은 71.5%(표 4-14)가 구매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있어 특별포장에 따른 분쟁소지는 적을 것으로 추정됨.
- PB 역시 대형소매업체(60%, 표 4-15)만 실시하고 있는데 과일 매출 중 29.2%, 채소 매출 중 26.7%(표 4-16)가 PB를 통해 발생하지만 업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PB 상품에 적용하는 검수기준은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급화 전략으로 PB를 활용하고 있음.
- 검수는 방문구매가 많은 중소 소매업체 및 외식/급식업체는 구매시점에서 검수가 이루어지지만 대형업체는 도착시점에서 주로(73.3%, 표 4-18) 이루어짐.
 - 검수기준도 농관원 기준의 활용도는 10.8%에 불과하였고 경험에 따른 기준(35.4%)과 자체 기준(36.2%)의 활용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음(표 4-19).

- 객관적인 기준없이 구매업체 자체기준이나 경험에 의한 기준은 품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검수방법은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76.2%, 표 4-20)로서 검수결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 의견불일치는 4.6%(표 4-21) 수준으로서 업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검수결과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원인은 35.4%의 소비지 업체들이 공급자의 의식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고 수송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응답도 15.4% 수준임.
- 자신들의 검수기준에 대해서는 64.6%의 업체들이 객관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주관적이라는 업체는 5.4%에 불과함.
- 이는 출하조직들이 소비지에 출하할 때 검수기준이 까다롭고 주관적이라는 응답을 33.3%(표 3-73)과 매우 대비되는 결과로서 검수결과에 대해 분쟁발생의 소지가 높음을 시사함.
- 검수결과에 대해 공급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나(70%, 표 4-24) 중도매인의 경우는 공급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경향(17.8%)이 있는데 이는 법정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주의 항의가 있을 때 도매법인의 경매사가 중재에 나서기 때문임.
- 구매단가 결정은 대형업체는 주로 도매시장 경락가를 기준으로 협의(66.7%, 표 4-26)하지만 시장도매인은 전국 수급상황에 따라 단가를 결정(60%)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따라 단가 결정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시세변동은 방문구매 중심인 중소소매업체, 외식/급식업체와는 큰 관련이 없고 서면계약 방식이 많은 대형소매업체 및 시장도매인과 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86.2%(표 4-28)의 업체가 일정기간(주로 15일) 별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대금결제시 19.2%(표 4-33)의 업체들이 일부 공제항목이 있다고 응답하여 결제관계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공제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물류비(39.3%, 표 4-34)는 상품거래시 착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구매단가에 포함되어 정산될 것이므로 분쟁의 소지는 낮다고 판단됨.
- 반면 판매사원 인건비(12.5%)는 구매자 측이 부담해야할 부분이므로 이 비용을 공제한다는 것은 공급자 측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표 4-45 설문대상 소비자유통업체 리스트

구분	업체명(상호)
대형소매	대동유통, 롯데수퍼, 이마트, 삼성플라자, GS리테일, 한화유통, 동아백화점, CS유통, 동방마트, 태평백화점, 대구백화점, 현대백화점, 홈마트, 메가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중소형소매	D마트, 드림마트, 에스마트, 메트로마트, 대경마트, 참사랑마트, 동아마트, 장미마트, 대호마트, 한마음마트, 한양스토아, 제일 할인마트, 샘마트, 농산물 공급센터, 양지마트, 신한마트, 코코마트, 송현할인마트, 즐거운 마트, 현대마트, 부발마트, 삼덕, 코스모마트(화랑마트)
외식급식	소망푸드 시스템, 다래헌, 메이 푸드, 고궁푸드, 런치벨, 푸드머스, 원협오오상사, 명식품, 혜성푸드, 한빛 캐터링, 아트캐터링서비스, 푸드피아, 서무수건강 명가, 병천황토방순대, 티에스에프, 엄마손 푸드, J&F 상사, 하늘농가, NFC, 푸드하우스, 스택스 코리아, ACS 로얄
중도매인(가락시장)	대풍, 고덕, 충남, 경기, 변창유통, 충북, 우전, 충남청과, 곰청과, 대일, 현대, 동화, 삼정청과, 영남, 삼경, 동서청과, 은하, 배성농산, 수도청과, 영진, 용산, 우림상회, 대일상회, 삼양상회, 보령청과, 대풍농산, 계림유통, 휘미리유통, 명일농산, 낙농물산, 백운농산, 영도농산, 대경농산, 중우상회, 남강상회, 서청강원, 덕흥개발, 대풍청과, 청풍상회, 영주상회, 지구농산, 순향농산, 동광, 원강상회
시장도매인	주인농산, 영진농산, 백천청과, 공향경진청과, 서농청과, 충남농산, 서울청과, 성심유통, 광원유통, 한웅청과, 천안상사, 매산농산, 대성청과, 강서진영유통, 백과청과, 경남야채, 한마음농산, 고향청과, 김포청과, 우림웰빙청과, 태진청과, 일광유통, 두별마트, 동화상사, 민화농산, 씨앤디

제 5 장. 청과물 유통법 도입 방안

1. 현행 농안법 체계의 문제점

가. 농안법체계와 미국 PACA법 체계의 비교 검토

- 농안법의 주요 내용은 수급조절 관련 항목, 도매시장 관련 항목, 농안기금 관련 항목으로 대별됨.
- 농수산물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관련사항(법 제2장): 농업관측, 계약생산, 자조금 지원, 가격예시, 과잉생산시 생산자 보호, 유통협약 및 명령, 비축사업 등
-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법 제3장 및 법 제4장): 도매시장의 개설 및 허가, 도매시장 관리 및 관리법인 설립, 도매법인의 지정, 중도매업 허가 및 업무범위, 경매사의 임면과 업무범위,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록, 수탁판매 원칙, 경매 등 매매방법, 시장도매인 지정과 영업범위, 농수산물의 하역, 대금결제, 수수료,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포전매매의 계약 등
- 농안기금 관련(법 제5장):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 용도, 회계기관의 지정,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및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유통시설 개선, 종합유통센터 설치, 유통자회사 설치, 규격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거래질서 유지, 교육훈련 및 실태조사 등
- PACA의 주요 내용은
 - 면허 관련: 면허 취득업체의 자격, 면허의 신청과 비용, 면허의 발급,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 소지자의 의무,
 - 분쟁조정 관련: 부당행위의 정의, 분쟁의 신고 및 해결절차, 중재,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 배상명령, 면허정지 및 취소, 의견청취 및 소환,

- 심리, 항소절차, 재판관할권
 - 검수 및 조사: 검사관 고용, 상품조사, 기록조사
 - 채권확보 관련: 신탁기금의 설치, 재판관할권
 - 거래조건 및 용어의 정의
-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도매시장, 농안기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PACA는 청과물에 국한하여 유통업체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리감독기구의 운영, 분쟁조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음.
- PACA는 공정 거래조성을 위해 면허제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분쟁조정, 처벌, 채권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규정함.
 - 농안법은 다양한 부류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통업체, 제도적 관리기구, 기금의 구성과 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품목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며 분쟁조정 등 공정거래 및 유통업체의 자격에 대한 항목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표 5-1. 농안법 체계와 PACA 체계의 비교

구분	농안법 체계	PACA 체계
관할 대상	공영도매장(공판장, 민영도매시장 포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시설	2천파운드 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와 개인
대상 품목	특정 품목이 아니라 농산물 전반을 대상으로 함	청과물 및 그 가공품
주요 내용	생산 및 수급조절 관련 법정도매시장, 공판장의 관리, 거래 및 운영 방식 규제 위주 농안기금의 설치 및 관리	유통업자의 면허제 및 분쟁조정 절차 명시화로 청과물의 공정 거래 유도 신탁제도 운영으로 대금회수 안전장치 마련 검품 및 조사 관련 조항 마련

나. 현행 농안법 체계의 문제점

- 현행 농안법은 품목 중심의 유통기능을 위주로 한 법도 아니고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법의 형태도 아닌 혼합형태로 법의 포괄 범위가 너무 넓음.
- 현행 농안법은 과거 청과물유통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해온 도매시장만을 규율하고 있어 신유통의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도매시장의 설치 및 관리, 산지유통 활성화 및 생산자 지원, 불공정거래 제한 등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농안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같은 기금관련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함.
- 일본의 경우 중앙도매시장법과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이 유통관련 기본법이고 과수농업특별조치법, 채소생산출하안정법 등이 수급안정제도 관련 기본법임.
- 아울러 우리의 농안법은 품목 범위가 농수산물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부패하기 쉽고 표준화가 어려운 청과물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 미국의 경우 청과물은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축산물은 Packers & Stockyard Act, 곡물의 경우 United States Grain Standards Act에 의해 품목별 유통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매시장 외 거래에 있어서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함.
- 도매시장 거래는 경매 과정을 통해 청과물의 품질이 재평가되어 가격이 결정되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의 거래 및 그 외 상대거래는 품질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와 대금 미회수 등 위험요소가 큰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청과물은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출하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생산자 보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2. 미국 PACA 체계 도입 필요성 및 여건 검토

가. 청과물 거래 관행 및 불공정 거래 현황

1) 생산자 입장

- 생산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13.8%의 생산자가 청과물 출하시 거래 처로부터 과도한 요구 또는 계약위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조사되었음(표 3-23).
- 생산자들이 불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출하처는 일반상인 및 영농법인(61.3%)이며 제도적 관리 하에 있는 산지농협은 상대적으로 불만 수준이 낮음(9.7%)(표 3-24).
- 불공정 사례가 있을 때 29%의 생산자들이 상대방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음(표 3-27).
- 그 발생빈도도 적어도 6개월에 1번은 발생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51.6%이고 1주일에 1번은 발생하는 응답도 3.2% 존재함(표 3-25).
- 생산자들이 불만을 표시한 불공정 사례의 유형은 근거없는 대금감액, 대금지급 지연, 규격 또는 품위의 일방적 결정, 물량의 인수거부 등의 순(표 3-26)임.
- 대금감액은 주로 품위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므로 규격 또는 품위의 일방적 결정과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사안임.

- 물량의 인수거부는 과잉생산으로 유통가격 급락이 예상될 때 생산자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산지 수집상, 영농법인, 소비자 유통업체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출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송,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38.7%의 생산자들은 큰 손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싸워봐야 손해가 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2.3%, 법적 대응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12.9% 등 제도적 구제절차를 필요로 하는 생산자가 45.2%에 이룸(표 3-28).
- 또한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25.9%의 생산자들이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해봐야 손해만 날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1.1% 수준임(표 3-33).
- 그 결과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또는 다소 필요하다는 생산자가 74.2%로 매우 높게 나타남(표 3-34).
- 따라서 계약위반과 같은 심각한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함께 일상적인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산지 출하조직의 입장

- 산지 출하조직은 생산자로부터 원물을 조달하는 과정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유통업체 양측으로부터 계약위반을 경험하고 있음.
- 생산자들의 출하 계약 위반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출하조직이 22.9%로 조사되었으며, 생산자가 출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응답이 42.6%, 품위기준 위반시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응답이 49.2%임(표 3-66, 표 3-67).

- 판매시 소비자 거래처로부터 일방적인 요구나 계약위반을 경험한 사례가 25.7%(표 3-74)에 달하며 특히 산지유통인들은 소비자 거래처로부터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를 받은 빈도가 1주일에 1번은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로 매우 높게 나타남(표 3-76).
- 출하조직이 상대방의 일방적 요구로 불만사항이 발생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싸워봐야 손해만 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76.9%,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7.7% 수준임(표 3-79).
- 법적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출하조직(5개소)의 경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점을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들고 있음(표 3-85).
- 이에 따라 출하조직의 경우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를 수립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대상자 109명 중 77.1%인 94명에 달함(표 3-86).

3) 소비자 유통업체의 입장

- 한편 소비자 유통업체의 경우 청과물 구매시 5.4%의 업체가 적어도 1달에 1번은 공급처의 계약위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표 4-35).
- 계약위반 사항은 주로 품위위반(94.1%)인 것으로 나타남(표 4-36).
- 이러한 계약위반 또는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가 양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45%의 유통업체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표 4-37)되었고 법적 조치를 실행한 사례는 전무하였음.
- 거래 쌍방이 분쟁 사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편했던 사항으로 시간지체에 의한 손실증가, 증빙확보 곤란, 중립적 제3자 부재,

불명확한 거래관행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분쟁해소 과정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표 4-40).

- 아울러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로는 심각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나 시간과 비용 때문(5.4%), 사회적 여론 때문(3.1%),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3.1%) 등임(표 4-41).
- 이와 같이 소비자 유통업체들도 청과물 구매 및 유통에 있어 불명확한 거래관행, 검수기준의 미 확립 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어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또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4) 청과물 거래 관행 종합

- 우리의 청과물 거래에서는 서면 계약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구두계약, 수시거래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선호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거래처의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 발생시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기보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비공식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이러한 거래 관행과 문제 해결 방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 의한 계약 위반 혹은 과도한 요구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며 나름대로 거래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나, 분쟁발생 시 공식적 해결 절차가 미비하여 교섭력이 불리한 생산자 혹은 산지 출하조직이 소비자유통업체에 비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나. 우리의 여건

1) 유통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관리 곤란

- 우리나라 청과물 유통에 있어서는 상인들이 영세하여 미국과 같이 면허제 등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 미국의 경우 연간 23만불 이상의 청과물을 거래하는 모든 유통업체는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토록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유통업체 및 상인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면허 취득을 강제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내에 PACA 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획득이 가능해야하나 국내 청과물 유통업체들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제도적인 정보획득이 제한됨.
- 즉, 사업규모의 영세성은 해당 업체의 취급물량, 거래방식 등에 대한 정보획득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게 만듦.
- 또한 영세 업체에게 제도적 규율을 강제한다면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비용지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청과물 유통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탈법을 양산하는 역 효과도 우려됨.
- 시장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가락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별 월평균 거래금액인 150백만원/월(1,800백만원/년)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은 전체 1,039명 중 615명으로 59.2% 수준임⁴⁾.
- 즉, 전국 최대 도매시장이며 가장 규모가 큰 유통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모화된 업체는 많지 않음.
- 산지 출하조직의 경우 농협을 제외하면 영농법인의 55%, 산지유통인의 88.6%가 연간 25억원 이하의 금액을 취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표

4) 2005년 청과부류 중도매인영업현황,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006.

3-38).

- 조사대상 소비지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대형소매업체를 제외하면 중형소매업체 중 60.9%의 업체가 연간 5억원 이하의 청과물을 구매하고 있고 시장도매인도 64%가 연간 20억원 이하의 청과물 거래규모를 나타내고 있음(표 4-2).
- 우리 나라 농산물 소매업의 점포당 평균 종사인원은 1.8명에 불과하고 평균 매장면적 38.5㎡(약 12평), 평균 판매액은 9천9백만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영세함(표 5-2).

표 5-2. 음식료품 소매업의 연도별 추이

연 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인)	판매액 (십억원)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판매액 (백만원)	사업장면적 (㎡)
1997	142,343	233,627	8,607	1.6	60.4	31.0
1998	140,030	227,746	8,483	1.6	60.6	27.2
1999	141,829	241,316	9,691	1.7	68.3	26.4
2000	134,534	243,435	10,623	1.8	79.0	32.3
2002	116,653	216,873	10,618	1.9	91.0	30.2
2003	111,981	202,843	10,608	1.8	94.7	39.4
2004	108,689	194,105	10,776	1.8	99.1	38.5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합리적인 계약문화의 미 정착

- PACA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제도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청과물이 거래되어야하지만, 국내에서는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거래방식의 제도화, 표준화가 제약됨.
- 상인 또는 영농법인과 거래하는 생산자중 65.4%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표 3-11) 소비지 유통업체에 출하할 경우에도 60%의 생산자

- 들이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표 3-21)으로 조사되었음.
- 농협의 경우 100% 서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농법인은 25%가 구두계약이고 산지유통인은 32.4%가 구두계약으로 계약재배 또는 포전거래를 영위하고 있음⁵⁾.
 - 특히,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산지유통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므로 미등록 영세 산지유통인의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율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법무부의 발폐기 거래 조사의 경우 서면 계약은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 생산자와 거래시 서면계약서 작성 현황

설문조사 대상		응답수	계약서 작성율(%)	계약서 미작성율(%)	계 (%)
생산자 조사	상인, 영농법인 출하시	26	34.6	65.4	100.0
	농협 출하시	38	78.9	21.1	100.0
	소비지유통 출하시	107	20.6	79.4	100
출하조 직 조사	농협	41(23)	75.6(100.0)	24.4	100
	영농법인	12(4)	83.3(75.0)	16.7(25.0)	100.0
	산지유통인	(34)	(67.6)	(32.4)	(100.0)
소비지 업체		85	34.1	65.9	100.0

* ()는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 시 서면계약서 작성현황임.

- PACA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작성된 계약서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생산자는 물론 유통업체들조차 계약준수 의식이 부족하여 품위기준 위반과 같은 계약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표 3-23, 3-25, 3-26, 3-65 3-74).

5)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생산자도 주로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므로 서면계약율이 높게 나타남.

3) 객관적인 검품 (inspection) 제도 미 확립

- 청과물은 공산품과 달리 상품 본질적 특성상 객관적인 표준화가 곤란함.
 - 따라서 거래 쌍방이 품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검수를 수행하고 이를 첨부함으로써 분쟁발생시 증빙으로 활용케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농무부 농산물 유통국 청과물과(fruit and vegetable program)에서 청과물의 검품을 담당하고 있으며, PACA 사무국에서는 분쟁해결시 농무부의 검품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농산물의 품질 등급 및 표준 규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검품 및 검품증서의 발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
 - 수입농산물의 경우 국제공인 검역업체들이 검수 업무를 하고 있으나, 국내 청과물 유통에 대해서는 공인된 검품 기관이 부재함.
 - 단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농관원 및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항목별 PACA체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 미국 PACA 체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핵심사항인 면허제, 분쟁조정 기구, 대금회수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요건,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5-4. PACA 체계 도입 시 쟁점사항

쟁점	검토 사항
면허 및 업체 정보의 확산	· 면허제 도입여부, 적용업체 기준, 정보제공 범위
법의 관할 대상	· 도매시장내 거래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직거래, 유사도매 시장, 기타
검품 및 조사	· 검품수행 주체와 시점, 효력범위, 기록보관 및 열람
분쟁조정기구 및 조정 절차	· 조정기구의 위상, 조정결과의 법적 효력, 조사관 및 심의관의 구성, 지역적 배치, 조사의 권한
신용평가	· 대상업체 범위,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기구의 위상과 조직형태, 비용부담
기타	· 미지불 채권에 대한 대금 회수 방안

1) 면허제 도입 검토

- 미국의 경우 면허제가 PACA를 유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본 장치이지만 한국에서는 면허제 도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영세 상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 입수 자체가 곤란함.
- 소규모 영세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곤란하여 면허제의 제도 유지에 비용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법 및 계약준수 의식이 낮아 위법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음.
- 세금 관련 문제로 가급적 업체 상황을 노출하지 않으려하는 성향이 있음.
- 현실적인 측면에서 면허제 적용이 가능한 업체는 대형유통업체, 공영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대형가공업체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의 관할 범위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함.
- 이들 대형업체,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은 현재로서도 대외 공신력 또

는 제도적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면허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 농안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형유통업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반면 분쟁발생 소지가 많아 면허제 실시의 핵심 대상이 되는 유사도매시장 및 영세 상인은 면허제의 관할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임.
- 면허제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보다 완화된 형태인 청과물 유통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소비지에서 일정규모이상 청과물을 유통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체를 등록토록 하여 불공정 행위 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제라도 도입해야만 정부의 관리수단이 확보될 것임.
-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영세 상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전근대적인 거래 관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면허제 혹은 등록제로 관리하는 것은 소요되는 감독 비용 (monitoring cost)에 비해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2) 분쟁조정 기구 설립 검토

- 현 상황에서 모든 청과물 거래상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청과물 유통은 대부분 서면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한국은 상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 어려운 면이 있음.
- 한국에서 분쟁이란 통상적인 상관행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넓게 해석됨.
 - 즉, “통상적인 상관행” 또는 “과도한 요구”의 구체적인 형태가 파악되어야만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정도매시장이라는 제도권 물량 이외 유사도매시장과 같은 비제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거래관행, 분쟁의 유형, 분쟁의 빈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거래 당사자마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거래관행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할 경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대로 모든 불만사항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를 유발할 수 있음.
 - 거래관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기구가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판단기준, 실효성 보장 장치 등도 확보되지 않아 제도 이용율이 낮을 수 있음.
 - 반대로 사소한 다툼까지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경우 제도 운영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고 과도한 규제에 의해 청과물 유통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현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기존 제도권 유통물량 즉, 법정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을 해소하고, 대형유통업체, 유사도매시장과 같은 비제도권 물량은 2차적으로 등록제도가 정착되면서 분쟁조정 기구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모든 청과물 유통에 대해 분쟁조정기구가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래관행의 명확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매시장 외 물량의 규모, 유통단계, 거래방식 등 유통실태가 명확히 규

명되어야함.

- 그러나 비제도권 물량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산지 및 소비자 유통의 규모화, 상품 및 물류 표준화 등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함.

3) 청과물 검품(inspection) 기구 설립 검토

-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품(inspection) 및 조사에 의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우리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품 및 조사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 청과물의 특성상 범위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법행위의 시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한편 직권조사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및 한글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 이미 보유하고 있음.
 - 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는 상품의 품위에 대해서는 조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 현 시점에서는 PACA와 같은 검품 기능(사전적 증빙, 사후적 증거확보, 직권 수사)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도매시장 등에서의 사후적인 검품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임.
 - 국내에서 사전적 검품의 필요성은 미국처럼 장거리 수송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낮은 생산자 조직화 수준, 시설미비, 계약문화 미정착 등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검수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위반의 시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음.
- 아울러 검수기능을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방식도 현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낮으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함.

- 분쟁조정기구가 도매시장에 국한되고 검수기능도 사후적으로만 도입된다면 민간업체의 수익기반이 취약할 것이기 때문임.

4) 신용평가 기구 설립 검토

- 미국 PACA에서는 면허제를 통해 청과물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통업자 면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하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자 신용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유통업자의 신용도를 객관적인 기관이 평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하자에게 유통업자의 대금지급 능력을 판단케 하며, 그 결과 출하자의 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판로개척이 어려운 산지 출하조직들이 비교적 안전한 거래처 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산지유통과 직거래가 활성화됨.
 - 아울러 생산자 및 출하조직에 소비자유통업체 정보를 확대 공급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생산자 및 출하조직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자가 내리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정보 제공을 통해 우량한 유통업체와 불량한 업체간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제공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판단으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
- 신용도가 우수한 유통업체에게는 다수의 출하조직들이 청과물 공급을 희망할 것이며 신용정보가 없거나 불량한 업체에게는 그 반대 상황이

-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유통업체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이 청과물 유통업체의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출하자에게는 대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업자의 규모화,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도매시장 이외 거래물량에 대한 최소한의 추계가 가능해지므로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청과물 유통물량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도매시장 이외에서는 집계되지 않음.
 - 공식 통계 수준에는 미달하더라도 신용평가 과정에서 파생되는 정보를 이용해 유통경로별 물량 추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 기존 정책의 정교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산지 출하조직 인터뷰를 보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만 있다면 외상기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출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성주 벽진농협, 의성 조광농산 인터뷰 사례 참고).
 - 청과물 과잉공급 상황에서도 도매시장 이외 적극적인 출하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출하조직의 역량 부족도 있지만 영세한 유통업체가 대부분인 탓으로 미수채권 발생을 우려하기 때문임.
 - 다만, 신용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영세한 소비자 유통업체가 다수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 대상을 제한해야 할 것임.
 - 영세 소비자유통업체는 소재 파악도 어려울뿐더러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청과물 유통에 특화된 신용조사 체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법에서 정의하는 신용도 조사수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

- 청과물유통과 관련된 유통업체 신용도는 현지 조사를 통해 획득된 업체의 기본 정보와 거래처의 신용도 평가 등을 기초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4. 청과물 유통법 도입 방안

가. 청과물 유통법 도입 기본방향

- 미국 PACA 요소의 단계적 도입
 - 우리의 경우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영세 상인 위주의 유통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PACA 체계의 전면적 도입이 시기 상조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국 PACA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계적 도입방안
 - 1단계: PACA 요소 중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고 관리가 가능한 방향에서 기존 농안법을 일부 개정하여 PACA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 2단계: 기존 농안법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농산물유통법"으로 분리 입법하고 출하자 보호관련 조항을 전면적으로 도입

나. 기존 농안법의 부분 개정 방안(제1단계)

- 기존 농안법의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도매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발매기 거래 개선, 유통업자 신용평가 제도 등 출하자 보호 조항을 일부 도입

1) 도매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방안

(1) 도매시장내 거래 분쟁 현황

□ 재 문제에서 나타난 도매시장내 분쟁상황

- 개정 농안법(제78조의2)에서 도매시장내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품위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무·배추품목에서 많이 발생함.
 - 중도매인들은 산지 공급자(출하주)의 품위기준 준수의식이 미흡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표 4-22)출하주인 산지유통인들은 중도매인들이 일방적으로 품위 및 단가를 결정한다는 의견(3-77)을 나타내고 있어 서로 반대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
-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간의 분쟁은 최근에 언론에서 부각된□□재□□문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재□□란 품위판단이 곤란할 때 통상적으로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손실을 만회토록 하는 예방장치이며 매년 작황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나 2004년 3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이 10% 물량에 대해 경락가격의 70% 적용을 합의한 바 있음.
- 무·배추는 그간 5톤 화물트럭에 산물형태로 적재되어 도매시장에 반입되고 경매방식 역시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차상 경매된 결과 중도매인들로서는 적재내부 물량의 품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내부의 속박이 등은 낙찰 후 중도매인들이 소량 분산 판매하는 과정에

서 발견되므로 사후에 가격조정을 신청해야하지만 경매 시에 미리 일괄 조정함으로써 경매 후 거래 쌍방의 조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통상적으로 상장 물량의 10%(재)에 대해서는 경락가격의 70%를 적용하는 방식이 통용되었으나 가락시장 내 대아청과에서 재의 비율을 20%로 높이면서 산지유통인과의 마찰이 발생함.

□ 재의 발생원인

- 재는 해당 물량이 산물형태로 반입되어 적재표면 이외 내부는 품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배추 표면의 상처부위가 경매 후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므로 판매에 애로가 있다는 점, 적재 내부에 속박이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일반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 발생된 분쟁해결 장치임.
- 즉, 재의 발생원인은 산지 출하시 품위선별 미흡성, 도매시장 반입시 적재 내외부 품위확인의 불가능성, 출하과정의 상처발생에 따른 경매 후 빠른 부패 발생 등 세 가지로 요약됨.
- 산지 공급자의 품위준수 의식이 미흡하다는 중도매인들의 의견도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임.
- 그러나 무, 배추의 재 문제는 산지의 출하여건상 사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이들 품목은 선별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품목이어서 수확시 인부의 육안으로 상품/비상품여부만을 판단하여 적재하므로 품위별 등급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수확시간대가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육안구분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밭에서 수확 즉시 산물형태로 적재하기 때문에 품위별 분리적재도 불가

능하고 그 결과 경매 시에도 품위별 별도 경매가 이루어질 수 없음.

- 아울러 전문 선별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도시지역 일용근로자를 선별에 활용함으로써 선별의 전문성이 낮은 문제점도 있음.
- 최근의 무·배추 포장화 사업은 재 문제를 완화한 측면과 악화시킨 측면이 동시에 있음.
- 즉, 포장화 사업으로 경매 전에 해당물량의 샘플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재 내외부 품위판정은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 반면 포장작업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경우 경매시간대에는 경과 시간이 짧아 발견되지 않다가 중도매인이 진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있음.
- 도매시장법인들은 재 발생에 따른 경매 후 협의는 산지의 출하비용을 소비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재가 선별여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출하 전에 산지에서 품위별로 선별하여 출하해야지 소비지 유통업체(도매시장법인)에게 선별에 따른 비용이나 문제해결 업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임.
- 즉, 산지에서 선별하여 상장된 물량에 대해 가격을 형성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주 임무인데 재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선별업무를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에 따른 업무부담도 상당하는 주장임.

□ 현행 가락시장 내 분쟁발생시 해결 상황

- 무·배추는 포장화사업 이후 일부 품위판정이 가능해졌으나 사전적으로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 1차적으로 출하주가 경락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경매 즉시 전화 또는

- 구두로 경매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⁶⁾.
- 2차적으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도매법인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매사가 해당물량의 품위를 재 감별하여 출하주와 중도매인 간에 절충을 시도하며 대부분의 분쟁이 이 과정에서 해소됨.
 - 경매사의 중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관리자(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관할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됨.
- 그러나 1998년 신설된 가락시장내 분쟁조정위원회도 대부분의 분쟁을 도매법인에서 해결함으로써 실제 운영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존에 현장단속반을 운영하여 숙박이를 적발하고 있으나 단순한 등급 표준화검사(중량, 등급, 숙박이 판정)에 불과하여 분쟁조정의 기능은 없음.
 - 판매 및 경락가격이 표시된 판매원표도 도매법인들이 공개를 꺼려하여 시장개설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유형도 다양하여 사례별로 분류하기도 어려움.
- 현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청과물 관련 분쟁은 신속성이 보장되어야하지만 시장 관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어 신속성 보장이 어려움⁷⁾.

6) 경매취소 요구를 전화 또는 구두로 해야하는 점을 악용하여 숙박이 상품을 상장한 후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악성 출하주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계자의 견해임.

7) 채소의 경우 통상 야간에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시장 관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일이 경과하게되며 해당 경매사 또는 거래 당사자의 업무시간과도 맞지 않음.

(2) 도매시장내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방안

□ 도매시장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운영 방향

- 도매시장 내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엄정한 분쟁조정
 - 1차적으로 경매 후 가격조정과 같은 일상적인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담당
 - 도매시장법인의 통상적인 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회부
-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경매제 하의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간의 분쟁은 물론 앞으로 확대될 시장도매인제도하에서 출하자 와 시장도매인간의 분쟁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토록 하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장관리자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함.
 - 위원회는 품목 부류별로 구성하되, 해당 거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출하주 대표(산지유통인 또는 농협),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 대표, 도매시장법인 대표, 시장관리자,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장관리자는 분쟁조정신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소집, 필요한 증거 및 증언확보, 서류작성 등을 담당함.
 - 위원회는 확보된 증빙에 근거하여 다수결로 판정하고 중재안을 제공함으로써 양자간 합의를 요구함.
- 분쟁조정심리는 신속성을 위해 서면자료와 제출된 증거, 분쟁당사자 소

환을 통해 판단하되 추가적인 현장조사, 증인의 증언청취 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요구 또는 시장관리자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분쟁조정 대상

- 도매시장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거래상의 부당한 요구는 단지 가격만이 아니라 하역비 문제, 부당한 비용공제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대상으로 이들을 모두 포괄해야함.
- 출하자와 매수자(중도매인, 시장도매인)간에 가장 첨예한 문제가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사후 가격조정, 부당 감액, 법정수수료 이외의 비용공제 등 가격에 관한 분쟁이 가장 빈번한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대상이 되지 않음.
 - 거래제도나 수수료, 영업범위 등에 관련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음.
 - 아울러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 간 담합행위, 경매 부정 등은 형사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분쟁조정 업무에서 제외

□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을 원하는 매수자 및 매도자는 정해진 서면양식을 이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함.

- 분쟁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에는 거래당사자, 해당 도매시장법인, 분쟁의 발생 및 처리경과가 필수적으로 적시되어야하며 주요 증인 및 증언, 사진 또는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시장관리자와 위원회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외부에 자문, 증인 소환, 사실 확인을 실시함.
- 심리의 결과는 신청의 접수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함.

표 5-5. 도매시장내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예)

접수번호		061207-1315		년 월 일		. . .	
도매법인명		xx청과	중도매인	435번	대표자명	이영희	사업자 번호
출하주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	강원도 인제시 124번지		
품목	배추	거래금액	100만원	물량	차량 5톤		
분쟁경과 및 조치		낙찰시간: 2006년 12월 5일 03시					
		낙찰자 및 금액: xx상회가 100만원에 낙찰					
		문제발견시점: 2006년 12월 6일 12시 30분					
		이의신청 사항: 과도한 숙박이 발견					
		권고조치: 양자 대면하여 사실 확인 후 20% 가격 조정 시도					
		출하주: 본인의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					
		중도매인: 다른 출하주 물량은 낙찰받은 바 없다고 주장					
		경매사: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 불가					
증빙첨부		관련 사진 3매					
		거래원표 사본					
신청자 성명		김철수 (인)					

□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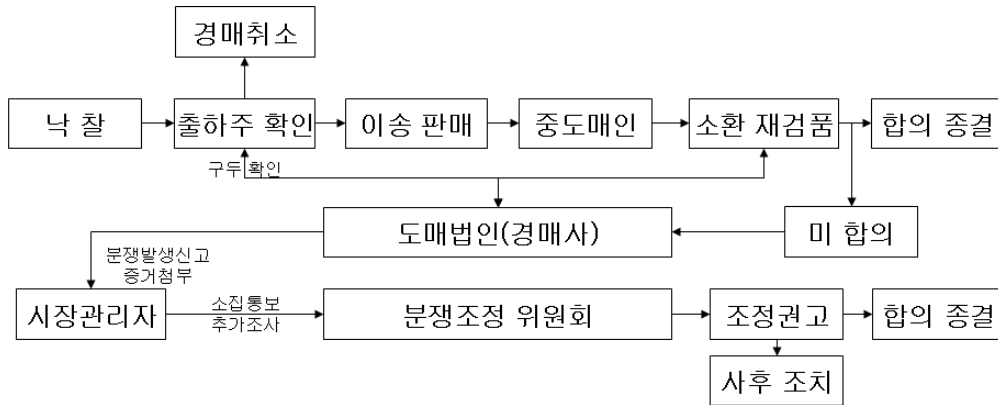
- 분쟁조정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본적으로 시장관리자가 부담하고 분쟁조정 신청자는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세한 출하주가 많은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을 포기하는 상황도 예상됨.
-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강제력 없는 조정·권고이기 때문에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부담토록 강제하기도 어려움.
- 위원회의 소집, 증거조사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관리자가 출하자가 납부하는 시장사용료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분쟁조정 신청자가 최소한의 비용(예를 들어 3만원)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방지함.

□ 사후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집행이 불가능하나 거래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거래 쌍방이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심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
 - 출하주에 대해서는 출하대금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가 종료된 이후 수령하게 하여 심리결과가 출하대금 정산에 반영토록하고 출하자 등록제를 이용해 심리결과에 수용거부가 반복될 경우 상장을 금지함.
 - 중도매인의 경우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관리자는 중도매인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임.
 - 거래 일방이 정식 소송을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야 함.
- 시장관리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시장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법인은 법인 사무실, 출하주 대기실 등에 안내 홍보판과 함께 신청 서류를 향시 비치하여야함.

그림 5-1.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절차



(3) 법 조항 개정 방안

□ 개정 농안법 조항

-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 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XX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류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과물
2. 축산물
3. 수산물

② 분쟁조정위원은 출하주 대표,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 대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직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품질관리사로 구성하여 시장관리자가 위촉하되, 중앙도매시장에 한해 도매시장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학계 또는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 중 출하주 대표는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도매시장법인대표와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 대표는 각각의 대표성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 중 시장관리자의 임직원은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을 겸임토록 한다.

⑤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학계 또는 법조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가 위촉한다.

⑥ 분쟁대상 사안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다.

제XX조(분쟁조정 신청 절차) ① 분쟁조정절차는 해당 상품의 매도자와 매수자 중 일방이 시장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조정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개시

된다.

② 조정신청서에는 매도자 및 매수자에 관한 사항, 거래 상품에 관한 사항과 분쟁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XX조(조정위원회의 심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사 및 판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구 또는 시장관리자 직권으로 현장 조사, 증거 확보, 증인 소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통상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제XX조(분쟁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관리자가 부담하되 분쟁조정 신청자는 3만원의 신청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XX조(조정위원회의 소집과 심리기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관리자는 즉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일 이내에 심리를 종료하고 권고안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XX조(필요한 증거의 수집) 시장관리자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XX조(시장관리자의 의무) 시장관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반 업무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이를 도매시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XX조(분쟁조정의 사후 조치) ①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관리자는 이들의 평가에 반영하여 허가 갱신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출하주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출하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금지기간은 시장관리자가 정한다.

2) 발매기 거래 분쟁 조정

□ 발매기 실태 및 문제점

- 발매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산지유통시설 확충, 소비지 유통개선, 정보화의 진전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의 구조적 한계인 영세성과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청과물 유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노지 채소의 경우 아직 30~70%의 물량을 산지유통인들이 포전거래로 유통시키며 그 비율은 해마다 작황에 따라 달라짐.

표 5-6. 품목별 생산량 대비 포전거래율(%)

품목	2004	2005
봄감자	45.0	36.7
봄배추	86.7	68.3
고랭지배추	25.0	69.0
수박	50.0	53.3
난지마늘	23.3	10.0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각년도.

- 일반적으로 포전거래 상인의 역할은 선도거래를 통한 향후 가격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계약금 지불로 영농자금을 조달하며 수확시 직접 인부를 조달함으로써 산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우에 따라 포전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원물 조달에 기여하게 됨.
- 생산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포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수확작업을 상인이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6%로 나타나 농촌지역 노동력 부

족이 포전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전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4%로 조사되었음(표 3-13).

□ 발매기 거래 분쟁조정의 필요성

- 발매기는 농가의 위험회피, 노동력부족 등의 이유로 형성된 산지거래의 주요 방식이나 상인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생산자들이 피해를 자주 보고 있음.
 - 일방적 계약파기는 주로 과잉 생산시 해당 물량을 매입하더라도 유통비용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생산자의 65%가 수확기 시세하락 시 인수지연 및 거부, 감액요구, 연락두절 등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16).
- 현재 농안법에 발매기 거래시 문서계약을 유도(농안법 제53조)하고 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현실적으로도 상인들이 다수의 생산자를 상대로 정식 계약을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구두로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표 3-14, 표 3-57).
- 발매기 거래 시 명확한 서면계약이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구두계약으로 거래하는 생산자의(21.1%, 표 3-14)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임.
 -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주요한 항목만 작성될 뿐 세부적인 개별단가, 규격, 품위, 검수방법,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표 3-59)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음.
- 구두계약율이 아직 높고 서면계약 중에도 항목별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한쪽(특히 상인)

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 권익 보호가 요청됨.

- 이 같은 사실은 생산자들의 13.8%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표 3-23)한 데서도 나타남.

□ 농산물 발매기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발매기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상행위를 규제한다는 단점과 함께 실질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부족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규제가 강화되면 발매기 거래가 위축되어 생산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음.
- 법무부의 개선방안은 거래총액 대비 계약금 비율을 법령에 규정하고, 대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며, 계약해제에 의한 위약금을 높여 위약을 억제하고, 서면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을 강제규정으로 둔다는 내용임⁸⁾.
- 먼저 계약금 비율을 50%로 법령에 규정하는 안은 상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계약과기에 의한 손실을 계약금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계약금 비율은 산지유통인의 자금흐름을 악화시켜 포전거래 자체를 억제시키고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계약금은 또한 위약금과 관련되는 것으로 통상 계약금 외 추가로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변상하는 관행에 의하면 생산자들이 위약을 시도할 때 부담을 주게 되어 역설적으로 생산자의 수취가격 향상 노력도 저해하게 됨.
- 근본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것은 거래 쌍방간 합의와 상관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거나 특별히 농산물에 대해서만 계

8) 법무부,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6.10.

약금 비율을 규정하는 것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⁹⁾.

-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계약금의 2배외에 시세와 계약금액의 차액도 추가로 위약금으로 지급토록 하겠다는 안은 청과물이 산지, 출하시기, 품종, 재배기술 등에 따라 금액이 매우 크게 변동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실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대금증감 청구권은 초과수익을 생산자에게 배분토록 하는 조항이지만 포전거래가 선도계약을 통한 위험분산 과정이라는 점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판단됨.
 - 즉, 산지유통인들은 수확 수개월 전에 포전계약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를 감행하며 생산자들도 위험을 회피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임.
 - 따라서 산지유통인의 수익은 위험에 대한 보수 성격이 강하며, 그것을 위계 또는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적 대가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현실에서 포전관리도 계약 후 상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인이 실질적인 생산자임에도 가격변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혜택을 농가에게 배분해야한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음.
 - 대금 증감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세기준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는 불가능할 것임¹⁰⁾.
 - 대금증감이라는 개념에는 초과수익 뿐만 아니라 초과손실도 포함되는데 역설적으로 상인이 손실을 보았을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됨(생산자가 출하물량을 위약하는 비율이 15.2%, 표 3-65).

9)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의 두가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당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통상 상관행에 의해 총 거래금액의 10%로 이루어지고 있음.

10) 이러한 사례 외에 시세산정의 곤란성은 창고 저장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인간에 거래되는 이른바 창고거래의 경우 몇단계까지의 거래단가를 시세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됨.

- 포전거래시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다른 개선안에 비해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감시비용의 문제가 남아 있음.
 - 구두계약은 오랜 관행이므로 법제화한다고해서 한순간에 바뀌기 어렵고 오히려 생산자 측에서 구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9.1%, 표 3-58)도 있음.
 - 또한 서면계약을 강제할 때 이를 감시하고 적발할 행정장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설사 서면계약이 체결된다하더라도 실제 효력은 개별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단순히 서면계약을 의무화한다고해서 거래 관행이 명확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함.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발매기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는 사후적 생산자 구제체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시스템 하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유일한 문제해결 방식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나 법적인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산지에서 발매기 관련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돕는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매기 관련 분쟁의 원인과 유형

- 발매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인측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와 생산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상인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시세 하락시 인수지연 및 거부, 연락두절 등(표 3-16)이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판매 손실 및 후속경

작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하는 2차 손실이 있음.

- 생산자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형으로는 시세급등 시 출하의무 위약, 포전관리 부실에 의한 상품성하락 등이 있음(표 3-65).
- 그 외 기후에 의한 불가피한 경작불능의 경우에는 통상 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합의되고 있음.

□ 발떼기 관련 분쟁 조정 제도 수립 방향

- 발떼기 관련 분쟁은 산지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당사자간 해결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화를 통한 협의조정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 발떼기 분쟁신고센터)가 필요함.
- 발떼기 관련 분쟁해결의 조정절차는 분쟁 발생의 신고, 신고 접수의 통지, 의견소명의 요구, 조정안의 제공 등을 포함함.
- 분쟁해결 절차는 발떼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별 해결절차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함.
- 생산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에서부터 증거조사,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조정안 제시, 필요시 소송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야함.
- 발떼기 분쟁해결 제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발떼기 거래와 청과물 유통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유해야하며 생산자의 접근이 용이한 기관이어야 함.
- 기본적인 증빙확보와 일차적인 사실판단을 위해 전문 지식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필요한 지식은 주로 품목별 유통현황에 관련된 것이나 각 품목의 재배 특성에 대한 지식도 일정부분 필요함.

□ 발매기 분쟁 신고센터 운영 주체

- 발매기 분쟁신고센터의 운영 주체로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임.
 - 농관원은 국가기구로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소환, 증거확보 등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래 양자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다만, 농관원은 생산자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 농관원이 발매기 분쟁신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관원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함.
 - 아울러 농림부에서는 해당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농관원이 타당하지만 발매기 거래에 대한 지식과 생산자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이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지농협은 청과물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접근성, 공공성, 소송(에 요구되는) 절차에 대한 지식 등 다방면에 걸쳐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음.
 - 농협중앙회는 현재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음.

- 다만,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필요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 조사의 신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또한 서비스 자체가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형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증거확보, 거래당사자 소환 등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렵고 산지농협별로 역량과 사업열의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지역적 형평성이 문제시 될 수 있음.

표 5-7. 발떼기 분쟁 신고센터 담당 기관 평가

평가 항목	농협	농관원
공평성 혹은 불편성	낮음	높음
생산자 접근성	높음	낮음
증거조사의 강제성	낮음	높음(법 개정필요)
요구사항의 이행성	낮음	높음
적용 가능성	높음	낮음
지역별 역량 편차	많음	적음
유통업체의 악용 가능성	낮음	중간

- 농관원과 농협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떼기 분쟁 조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기능이기에 때문에, 농관원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떼기 분쟁 조정의 일선 업무는 농관원이 담당하지만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기타 지원 업무는 농림부 유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떼기 분쟁 신고센터 운영 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

- 신고의 내용은 물량의 인수거부 또는 지연, 대금지급 지체, 부당한 품위 판정, 수확량에 대한 시비 등 포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중 대표

적인 사안에 한정해야함.

- 판촉행사의 지원, 포장비용의 공급자 부담, 수송조건, 수확책임 등은 관점에 따라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까지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청과물 유통을 제한하게 될 것임.
- 대형유통업체들은 생산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벤더업체를 내세워 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생산자들은 판로가 막히므로 쉽사리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직접적인 분쟁은 벤더업체와 생산자간의 다툼이므로 대형유통업체와는 관련이 없음.
- 과잉공급의 결과로 파생된 교섭력의 비대칭 및 판로문제를 분쟁해결장치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분쟁해결장치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지원서비스로 이해해야함.
- 생산자의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벤더업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거래단계를 늘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음.
- 그러나 벤더업체를 활용할 정도의 대규모 유통업체는 극소수임.
-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들은 비교적 서면계약율이 높기 때문에 발매기 분쟁 신고센터에서 다루는 인수 또는 대금 지급지연 등과 같은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음.

□ 발매기 분쟁 신고센터의 운영

- 산지의 발매기 분쟁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협의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임.
- 절차 제공 과정에서 조정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으나 이는 강제력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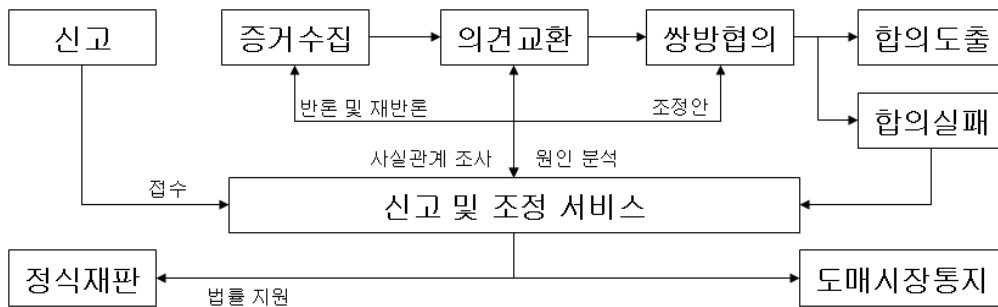
는 당사자 간 의견의 요약 및 합의점 도출 수준임.

- 분쟁발생의 신고와 반론 요청
 - 거래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발매기로 거래된 농산물이 소재한 지역의 분쟁신고센터에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됨.
 - 분쟁신고센터는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 내에 반대 자료의 제출 또는 방문 진술을 요청함.
 - 발매기 관련 분쟁은 주로 물량의 인수지연 또는 거부, 감액요구 등이므로 반대 자료 제출에 긴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가급적 짧은 기간(예: 5일)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함.
 - 반대자료 또는 진술을 신고자에게 송부 또는 소환하여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할 것인지 확인함.

- 재반론의 제기과 합의 도출
 -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재반론을 제기할 경우 이를 정리하여 반대 측에 송부하고 자료 및 의견소명을 요구함.
 - 양측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분쟁조정 서비스는 종료됨.

- 거래 당사자간 의견교환과 조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발매기 분쟁 신고센터는 지방법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알선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관련 서비스는 소송 제기에 따른 서류작성 서비스, 필요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및 품위검사, 증인의 증언 녹취, 조정과정에서 교환된 자료 및 진술의 증거자료 제공, 법률구조공단의 자문결과제출 등임.

그림 5-2. 발떼기 분쟁 신고센터의 서비스 절차



- 발떼기 신고센터는 발떼기 분쟁 조정시 발생하는 비용을 조정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 이유는 발떼기 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대부분 영세 소농이고 이 제도의 취지가 이들을 상인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임.

□ 법 조항 사항

<농안법>

제XX조(포전매매 분쟁 신고센터의 운영) 농림부 장관은 포전매매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활한 조정을 도모해야 하며,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XX조(포전매매 분쟁 신고센터의 설치) ① 법제XX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 포전매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제반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

제XX조(포전매매 분쟁 신고센터의 업무) ①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의 포전거래관련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도출에 필요한 제반 지원업무
2. 당사자간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필요한 법률 지원 업무
3. 기타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XX조(신고 대상 포전매매 분쟁 사항) 포전매매 분쟁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에 한한다.

1.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약정 물량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를 지체하는 행위
2.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약정물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지체하는 행위
3.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XX조(분쟁조정 신청) ① 신고센터의 업무는 포전거래의 당사자간 계약에 있어 일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정신청이 신고센터에 접수됨으로써 개시된다.

② 조정신청은 해당 물품이 소재한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접수되어야한다.

③ 조정신청은 포전거래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대

상 물품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내용, 관련 증거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한다.
2. 거래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은 대상 물품의 품목, 소재지, 계약금, 총약정금액, 수량 또는 면적, 계약된 품위 등 포전거래 계약시 합의된 제반 사항을 말한다.
3. 이의신청 시에는 계약위반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거 서술해야 한다.
4. 관련 증거는 계약 위반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의미한다.

제XX조(분쟁 조정 과정) ① 신고센터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사실여부, 관련자의 인적사항, 분쟁의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취합하여 거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서면 또는 출두에 의한 반론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당사자간에 제출된 증거와 반론을 취합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 즉각 통고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XX조(민사소송의 지원) 신고센터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이 민사소송을 희망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제반 법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조정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3) 청과물 유통업자 신용평가 제도 도입 검토

- 출하자의 대금회수 안전성을 높이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유통업체 및 산지 출하조직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의 제공이 필요함.

□ 소비자 유통업체 신용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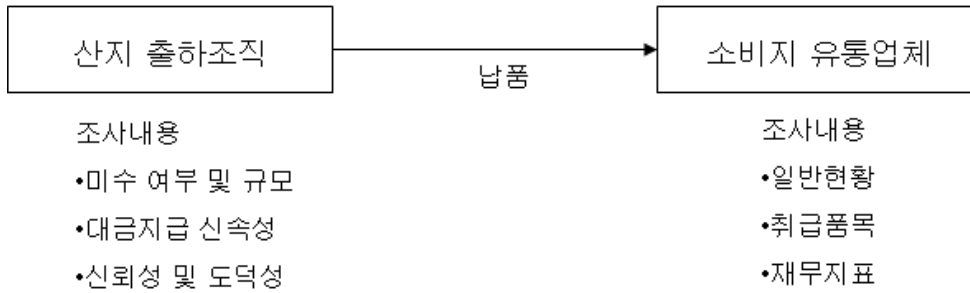
- 신용평가의 조사 대상업체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기업형태가 갖추어진 대형소매업체와 대형단체급식업체, 슈퍼마켓체인이 주 대상이 될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토록 규정된 대규모점포
 - 통계청표준산업분류 상 단체급식업체(코드번호 15496)에 해당하는 업체중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업체
 - 도매시장은 시장개설자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절차도 비교적 공정하므로 신용평가에 대한 출하자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 초기 단계에서는 신용평가는 주로 대형업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분쟁발생의 소지가 큰 유사도매시장 상인은 제외되어 있으나 청과물 유통에서 신용조사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신용평가에 앞선 기반정비 단계의 의미가 있음.
- 1단계에서 유통업자 신용평가 제도가 정착되면, 2단계에서 점차 조사대상 청과물 유통업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신용도 조사 방법

- 유통업자 신용도 평가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일반 신용평가와 달리 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대금 지불의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청과물 유통업자의 신용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에 대한 서베이와 납품업체에 대한 서베이를 병행해야함.
-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품목, 매출액 등 업체의 기본 현황 조사
- 미수 규모, 대금 지급의 신속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조사 대상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를 조사함으로써 수집해야할 것임.

그림 5-3. 청과물 유통업체 신용조사 방법



- 조사 대상 업체 서베이는 해당 업체에 대한 서면 질의방식과 일반 공시 자료 수집을 병행함.
- 업체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주기는 1년에 1회 또는 6개월에 1회만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납품업체 서베이는 산지 출하조직 중 농협, 영농법인 중 피 조사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약간 수를 조사함.
- 조사 주기는 피조사업체 서베이와 동일하게 1년 1회 혹은 2회로 함.

□ 유통업체 신용 평가 조사항목

- 미국 Blue Book에서의 업체 평가는 기본적으로 6가지 차원(6 point rating)에서 이루어짐.
- 업종(classification)
- 사업규모(volume)
- 취급상품의 종류(commodities)
- 신용한도(credit worth rating)
- 도덕적 책임감(moral responsibility)
- 대금결제기간(payment description)

- 업체의 기본 정보
 - 업체 및 대표자명, 주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주소, 업태, 업체연혁, 관계사 현황, 주주구성,
 - 취급품목

- 재무적 안정성 관련 정보
 - 자산: 자산총액, 자기자본 규모
 - 영업상황: 매출액, 매입액, 종사자수, 손익

- 대금결제 관련 정보
 - 대금결제의 신뢰도 및 안정성 평가 결과(A, B, C, D, F 등급)
 - 대금결제의 신속성 평가 결과(A, B, C, D, F 등급)

□ 종합평가 지표

- 상기 조사 사항을 종합한 등급 정보가 제공되어야함.
 - 등급에는 미수발생 건수, 대금지급 기간 등이 표시되어야함.

- 예시
 - 대금지급의 신뢰도 및 안전성(가중치 70): 서베이 대상 납품업체 중 조사주기 내에 결제기일을 3일 이상 초과한 경험이 있는 출하조직의 비율을 20% 구간별로 등급화
 - 대금지급의 신속성(가중치 30): 상품 인도 후 10일간격으로 5등급화
 - 종합 평점: A, B, C, D, F
 - 상기 등급정보는 조사에 따라 세분될 수 있음.

□ 신용평가 담당 기관

- 미국에서는 민간정보기업이 유통업자의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문 업체의 성장 여건이 미흡하므로 당분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같은 공기관이 담당하고, 점차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민간업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용 부담

- 미국 Blue book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 순수 회비납부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Blue book 작성업체인 Produce Reporter CO.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는 회원의 분쟁발생시 조정 서비스, 미수채권 수금(채권추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Blue book도 회원의 등급에 따라 회비와 서비스를 차등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 책자의 우송주기 또는 신용정보의 업데이트 주기, 정보 전달의 편리성 등에 따라 비용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청과물의 판매 및 구매업체는 Blue Book에 등재하는 것이 무료지만 운송업체, 박스생산업체, 테일 생산업체 등은 책자에 등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함.
- 한국의 경우 아직 정보서비스업의 사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 정보서비스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정부가 일정 부분 신용평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출하조직 조사

- 소비지 유통업체에게도 산지 출하조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지 개발에 따른 조사 업무를 경감시키고 소비지유통업체와 산지출하조직 간의 거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은 소비지 유통업체가 산지개발에 필요한 항목들, 즉 산지출하조직의 공급 품목, 공급의 신뢰성, 품질 수준 등일 것임.
 - 산지출하조직명, 소재지, 연락처, 취급 품목 및 품종, 품목별 취급량 및 매출액
 - 기타 중요사항: 산지유통 전문조직 여부, APC 및 저온저장 시설 보유 여부, 운영주체의 유형(농협, 연합사업, 영농법인 등), GAP 적용여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등
 - 공급의 신뢰성: 약속된 물량 공급의 신뢰성, 등급 및 규격의 신뢰성, 품질관리의 신뢰성 등
- 조사대상 출하조직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을 주로 하고, 그 외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조직도 포함함.
 - 조사의 효과 및 반응에 따라 점차 조사 대상을 일반조직으로까지 확대함.
- 산지출하조직의 신용도 조사 방법은 소비지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베이 방식으로 수행하되, 공급의 신뢰성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산지유통조직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지출하조직의 공급 신뢰성 등은 소비지유통업체가 평가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나 조사 업무가 방대하고 소비지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기관에서 산지출하조직의 공급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임.

□ 법 조항 개정 사항

<농안법>

제XX조(신용조사의 실시) ①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소비자 유통업체와 산지 출하조직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신용조사와 관련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기관의 지정 및 업무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XX조(조사기관의 지정) 농산물유통업체 신용조사 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자격을 갖춘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XX조(신용조사기관의 업무) ① 신용조사기관은 소비자유통업체 및 관련 개인에 대해 다음 각호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 및 개인의 식별정보: 업체명, 연혁,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명, 자본규모 및 주주구성, 사업자등록번호 등
2. 해당 업체의 영업정보: 총매출액, 농산물 품목별 매출액 및 규모, 종사자수, 손익 등

② 신용조사기관은 산지 출하조직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1. ①항 소비자유통업체의 신용정보: 대금지급의 신뢰성 및 안정성, 대금지급의 신속성

2. 해당 출하조직의 취급품목, 품종,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 공급안정성 정보

③ 신용조사 기관은 농산물유통업체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기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XX조(정보이용의 제한) 신용조사를 통해 수집·가공된 정보는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업체 또는 조직에 한해 제공한다.

나. 기존 농안법의 전면 개정 방안(제2단계)

1) 기본 방향

- 기존 농안법을 (가칭) “농산물 유통법” 과 (가칭)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여 입법함.
-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은 기존 농안법중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부분에 추가적인 조항을 더해 입법.
-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청과물 유통법은 기존 도매시장 관련 조항 및 청과물유통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제정해야 하나 현재 도매시장 관련 조항은 청과물 뿐 아니라 양곡, 축산, 수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명칭을 “청과물유통법” 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농산물유통법” 으로 하여, 기존 도매시장 관련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매시장 이외 유통경로를 법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함.
- 농산물유통법은 청과물, 곡물, 축산물 유통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수산물은 별도 유통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과물, 축산물, 곡물 등이 각각 상품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통과정도 상이하지만 농산물 유통법은 이러한 차이점을 포괄하는 유통

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고, 축산물, 곡물의 품목 특정적 사항은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양곡관리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관할 부처가 다른 수산물의 경우에는 별도 입법이 필요함.
- “농산물유통법”은 도매시장이라는 속지주의적 규율이 아니라 장소에 불문하고 청과물 유통에 참여하는 업자 모두를 관리하는 방향에서 입법되어야 함.
- “농산물유통법”은 기존 도매시장관련 조항(제3장), 농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산물도매시장(제4장), 농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제6장)을 유지하고 신규 조항을 부가해야 함.
- 농산물 유통법에서는 기존 조항이외에 1단계에서 검토한 조항(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발매기 신고센터, 유통업체 신용평가제도)은 물론 유통업자 등록제, 분쟁해결절차, 검품시스템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양곡관리법 등은 관할 범위가 다르므로 상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이고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임.

2) 농산물 유통법의 관리 대상

- 농산물 유통법은 기본적으로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공판장만을 관리하는 기존 체계에서 발전하여 현재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비 제도권의 유통경로를 포함함.
-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항 삽입

- 그러나 우리의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유통 상인과 업체를 면허제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 면허제는 영세상인 구조 하에서 관리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도입 곤란
- 따라서 상인들의 관리제도는 등록제를 근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제1단계: 현재 사실상의 면허제로 관리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은 현행 제도로 유지하고,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산지유통인 등록제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소비지유통업체 중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 및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을 등록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제3단계: 장기적으로 여건이 호전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유형의 농산물 거래업자의 등록 유도

3) 분야별 검토 의견 및 법 조항

(1) 농산물 유통업 등록제 도입

-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 관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통보함으로써 즉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신고제, 신고 후 추가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면 허가제로 분류됨.
 - 한편 등록은 신고 또는 허가시 행정관청의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함.
- 신고제는 단순히 국가기관에 형식을 갖추어 통보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고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종을 자

- 유업종이라고함.
- 신고제로 운영되는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통신판매업, 무역대리업 등이 있음.
 - 신고제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특별한 관리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없음.
- 한편 등록제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을 소관 기관의 장부에 등재·기록하는 행위로서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등재의 분야에 따라 영업허가의 요건(예: 건설업 등록)에 불과할 수도 있고 권리취득 및 상실에 대한 대항요건(예: 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소유명의 등록)일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등재 자체가 허가(예: 의장등록)일 수도 있음.
- 행정관청은 등록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사실확인 후 행정관청의 장부에 기록(등록)하며 업종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의 경우 등록자가 화재예방 교육 및 자격증, 필요시설의 구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장을 실사(사실확인)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후 비로소 장부에 기록(등록)하고 영업을 허가하게 됨.
 - 국내법에서 영업에 관하여 등록제로 운영되는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외국간행물 수입업, 담배도매업, 석유제품 판매업 등이 있음.
-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허가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생성시키는 것임.
- 채굴권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관청의 허가로서 특정인에게 새로이 권리가 생성됨.
 - 다만, 허가의 종류 중 음식숙박업 허가와 같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내주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효력은 사실상 신고제와 동일하다고 할 것임.
 -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은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의약품 도매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임.

- 청과물 유통업은 법정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중도매인 자격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영업을 제재할 방법은 부재함.
- 또한 유통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부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허가제로 할 수도 없음.
- 관리 또는 규제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신고제로는 행정관청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허가제로는 일반인의 영업금지라는 비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양 제도를 절충한 등록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유통업 등록제 도입 방안

-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 및 유사도매시장 상인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함.
- 중소 소매업체 및 중소 급식업체 등은 산지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도매시장 상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법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직거래가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및 유사도매시장 상인은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관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의 내용은 점포의 소재지, 운영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시설 내역(매장면적, 시설, 장비 현황), 거래 품목, 종업원 현황 등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임.

- 등록제는 허가제와 같은 수준의 강제성을 가질 수 없지만 등록된 업체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농안기금 지원 등 유인책을 주어 등록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실제 농림부에서도 2002년도 농안기금을 투입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한 선례가 있음.

□ 법 조항

제XX조(농산물 판매업자의 등록) 농산물을 판매하는 다음의 상인들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①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운영업자
- ②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업체
- ③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산물 판매업자

제XX조(등록업체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유통개선 및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된 농산물 판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XX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XX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판매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⑦ 청과물 거래상에서 위법행위의 적발 또는 재판상 신고 등을 받은 후 1년 이내인 자

제XX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XX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판매업자 등록을 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농산물판매업자 등록을 한 자가 제XX조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2. 농산물판매업자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시행규칙

제XX조(등록사항) 법 제XX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한다.

- ①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단, 법인일 경우 상임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영업장의 소재지, 업종 및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 거래품목, 회사형태, 시설내역(매장면적, 시설, 장비 현황), 종업원 현황 등. 단, 영업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한다.
- ③ 신고 시에는 상기 1.과 2.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이 첨부되어야한다.

제XX조(등록대상 농산물 판매업자) 법XX조에 명시된 등록대상 농산물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단체급식공급업 및 급식제공업 중 연 매출이 50억원 이상되는 업자
2.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되는 농산물 판매업자
3. 기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산물 판매업자

(2) 불공정 행위 및 배상책임

□ 법에 반영할 불공정 행위 유형

- PACA에서 규정된 불공정 행위를 “농산물유통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보호함.
- 우리 나라의 경우 법에서 관리해야 할 불공정 행위는
 -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된 물량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없이 판매대금을 감액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없이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등급, 품질, 수량, 무게, 원산지의 오기
 - 위탁된 물량을 이유없이 처분, 덤핑판매, 폐기하는 행위

□ 법 조항

제XX조(불공정행위)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농산물 판매인이나 중개인(도매시장내 허가상인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법XX조에 의거 등록된 농산물 판매업자를 포함한다.)이 무게, 품

질, 수량, 원산지, 규격, 포장, 라벨, 속도, 상태 등을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2. 농산물 판매인이나 중개인이 구매 및 위탁 계약시 계약조건에 반해 합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거부하거나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3. 농산물 판매인이나 중개인이 수령한 농산물을 합당한 이유없이 폐기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4. 농산물 판매인이나 중개인이 수령한 농산물에 대해 합당한 이유없이 즉각적인 계산과 대금지급을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XX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법제XX조에서 정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농림부 장관은 이를 조사하여 피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제XX조(피해배상) 농산물 판매인이나 중개인은 법XX조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라 피해를 본 자에게 해당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한다.

(3) 농산물 검품제도

- 농산물 판매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검품(inspection)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검품제도 운영 방안

- 농산물 검품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검품제도를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제2장 검품 부분 참조).
- 검품은 모든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출하

조직이나 소비자유통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하며, 검품시 일정의 실비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한 표준출하규격 및 등급에 의거해 수행하고, 농관원에 의해 검품된 농산물은 검품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외부 포장박스에 표시토록 함.
 - 예를 들어 검품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외부 포장박스에 등급과 규격 표시란에 “국가 인증 품질등급 특, 크기 규격 **** ”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검품된 농산물임을 나타냄.
- 검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출하자들이 임의로 표시하고 있는 등급표시제를 개정하여 국가 공인 규격과 등급은 검품된 농산물 이외에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민간이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자체의 등급과 규격을 표시할 수는 있음.
 - 예를 들어 농협, 대형유통업체나 지자체가 자체의 규격을 개발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공인규격과는 구별 표시되어야 함.
- 검품은 산지 검품과 소비자 검품으로 나누고 산지 검품은 출하 시점에 소비자 검품은 도착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지 검품에서 특정 등급의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선적까지 출하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 검품 결과와 대조하여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을 것임.
- 검품제도가 정착될 경우 사전에 산지 농관원에 품위검사 및 등급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사후 증빙으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거래 후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도 증거확보차원에서 수행될 수도 있음.

□ 검품기관

- 검품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임하더라도 초기에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에 위임할 경우에는 자격증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자격업체의 선정 및 감시·감독, 지리적·기능적 배치 등을 고려해야함.
- 검수 및 검품은 분쟁과 관련되어 재판상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담당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함.
- 따라서 현행 품질관리사 자격증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엄격함이 요구됨.

- 검품기관은 규격 및 등급을 제정 공표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농관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비교적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한 거래 쌍방의 수용도 측면에서도 유리함.

□ 법 조항

제XX조(조사 및 검사 전문 기관의 지정)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의 품위, 포장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기관의 지정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XX조(조사 및 검사 위탁 기관의 지정) 법제XX조에 의한 농산물 조사 및 검사 위탁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며,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 조사 및 검사 업무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분쟁해결절차

- 상기에서 언급된 유통업체 등록제, 검사제도 등 농산물유통법의 주요 항목들이 도입됨으로써 분쟁조정기구 설립의 조건이 형성됨.
- 현행 농안법 하에서는 명확한 검수기준, 불법행위의 정의, 분쟁조정 담당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발매기분쟁 조정센터 등 사후적인 방식의 문제해결이 불가피하였고 그 해결방식도 직접 해결이 아닌 양자간 합의도출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에 그쳤음.
- 농산물유통법 하에서는 모든 농산물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 해결해야함.

- 농산물유통법 하에서 분쟁조정 수단은 PACA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체 등록제의 활용임.
- 분쟁조정 명령이나 배상 명령에 불응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음.
- 단계적으로 등록 예외가 인정된 소규모 업체도 점차 등록제에 편입되도록 하여 모든 농산물이 제도권 내에서 유통되도록 유인해야할 것임.

- 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경우도 농무부 유통국내 PACA administration이 분쟁 조정관련 업무를 담당함.
- 국가기구에 의한 분쟁조정은 분쟁조정기구가 직접 등록취소, 시정조치의 명령을 내리므로 분쟁해결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 나라도 농림부 유통국이 부서를 신설하여 농산물 거래분쟁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것이 필요함.

□ 법조문

제XX조(피해배상청구) ① 농산물 판매인 및 중개인이 법XX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배상 청구를 농림부 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② 피해배상 청구를 한 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법XX조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이며, 그로부터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제XX조 (피해배상 조정) ①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농림부 장관은 우선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실패하면 농림부장관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제XX조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농림부에 의한 피해배상 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그 중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림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분쟁을 재심리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XX조(분쟁조정 실시) ① 농산물 거래 피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농림부 장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

② 농림부 장관은 분쟁조정을 위해 양 당사자로부터 증거제출을 요구하거나 소환 및 증언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필요시 별도의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부 장관은 당사자의 의견청취와 사실관계의 확인 후 책임있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제XX조(분쟁조정 재고) ① 분쟁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기 조정안과 관련 증거 및 증언을 재검토해야한다.

② 분쟁조정 재고를 위해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동환,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안법 개정방향-미국 PACA법체계의 적용을 중심으로-”, 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 발표자료, 2005.
- 김동환 외, 「유통경로 다원화추세하의 도매시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매시장법인협회 용역보고서,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2.
- 김용택, “농식품 도매유통 개선전략 및 농안법 개정방향,” 「2005 신유통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5.
- 법무부, “농산물 발매기거래 개선방안”,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6.
- 농림부, 「2004년도 도매시장 평가 결과 보고서」, 2006.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2006.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사팀,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출하조직의 농산물거래실태 조사분석」, 2002.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국의 청과물유통과 도매시장제도-미국·영국·독일·네델란드·프랑스·일본·중국-」, 1998.
- 농협조사연구소, 「미국의 청과시장 동향」, 2004.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005년 청과부류 중도매인 영업현황」, 2006.
-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연합단체 일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자료집」, 2006.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Produce Reporter Co., 「The Blue Book, April 1998」, 1997.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acf.co.kr)
- Produce Reporter Co.홈페이지(www.bluebookprco.com)

부 록

1. PACA 번역 전문
2. PACA 원문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 유통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조항
5. 식품위생법 허가, 신고 관련 조항
6. 산지 출하조직 인터뷰 결과
7. 생산자 설문조사표
8. 산지 출하조직 설문조사표
9. 소비지 유통업체 설문조사표

(여백)

부 록 1. PACA 번역 전문

1930년 부패성농산물법
(7 U.S.C. 499a-499t)

조항

1. 정의

2. 불공정 행위

2.1. 특정지역의 농산물

3. 면허

- (a) 면허취득; 위반 벌칙
- (b) 면허신청과 수수료
- (c) 상호사용

4. 면허발급

- (a) 사업권; 종료; 갱신
- (b) 면허발급 거부; 이유
- (c) 채권구입 시 면허발급; 채권구입 없이 삼년 후 발급; 채권종료의 효과; 금액의 증감; 증가액 납입
- (d) 조사계류 중 면허보류
- (e) 면허발급 거부

5. 피해자에 대한 책임

- (a) 피해금액
- (b) 배상
- (c)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공급자, 판매인 및 대리인을 위한 농산물대금과 판매대금에 대한 신탁; 신탁의 유지; 재판관할권

6. 청구, 서면통지 및 조사

- (a) 배상청구
- (b) 규칙위반
- (c) 청구와 통지에 대한 조사
- (d) 청구에 관한 결정
- (e) 특정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채권

7. 배상명령

- (a) 피해액에 대한 농무성장관의 결정; 지급명령
- (b) 장관의 명령에 대한 불응; 손해배상 청구소송; 명령의 증거효력; 비용과 수수료
- (c)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

(d) 항소판결 배상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8.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근거

- (a) 장관의 권한
- (b) 특정인의 불법적 고용; 제한사항; 채권보증의무; 무채권 고용승인; 채권액 변경; 증가액 납입; 벌칙
- (c) 면허사기
- (d) 이행명령
- (e) 대체 민사벌칙금

9. 회계, 기록 및 정관; 면허유지의무; 내용; 의무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10. 명령; 효력일; 효력계속; 수정과 무효; 벌칙

11. 이행명령; 주간통상위원회의 명령을 다루는 이행명령법의 적용

12. 위반; 법무성장관에 보고; 절차; 비용

13. 청구; 절차; 벌칙 등

- (a) 농무성장관의 조사; 회계, 기록 및 정관에 대한 검사; 검사거부에 대한 벌칙
- (b) 기록검사; 보증채권; 면허정지
- (c) 심리기회; 소환; 선서; 증인; 증거
- (d) 소환불응; 배상; 모독죄
- (e) 처리; 회계, 기록 및 정관의 제출
- (f) 증인의 경비와 여비

14. 부패성 농산물에 대한 검사

- (a) 검사관의 고용; 수수료와 비용; 검사증명서의 증거효력
- (b) 증명서의 부정발급; 벌칙

15. 규칙, 규정 및 명령; 임원과 피고용인에 대한 임명, 해임 및 보상; 지출; 지출위임; 상반되는 법령의 폐기

16. 대리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면허소유자의 책임

17. 분리성

18. 약칭

19. 지출의 기금예치

20. 자문위원회

주간 또는 외국과의 통상 시에 부패성 농산물의 유통에 관해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관행을 막기 위한 법률.

미합중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의해 합동으로 제정된다. 미합중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의해 합동으로 제정된다. 본 법률에 대하여 다음이 적용.

1항.² 약칭과 정의

- (a) 약칭. 본 법률을 “1930년 부패성농산물법” 이라고 한다.

(b) 정의.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1) "사람"이라는 용어에는 개인, 조합원, 기업 및 조합이 포함된다.

(2) "장관"이라는 용어는 농무부장관을 의미한다.

(3)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이라는 용어는 모든 주, 보호령, 콜롬비아지구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장소 사이의 통상을 의미한다; 또는 동일한 주나 보호령 또는 콜롬비아지구 내의 두 지점간에 이루어지지만 제 3의 장소를 경유하는 통상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콜롬비아지구 내의 통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4) "부패성 농산물"이라는 용어에 다음의 사항들이 적용된다.

(A) 냉동 농산물과 얼음포장 농산물 모두를 의미한다; 모든 종류와 특성의 신선 과일과 채소를 의미한다

(B) 통상사용에 입각해서 장관이 정의한 절인 버찌를 포함한다.

(5) "위탁상인"이라는 용어는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는 대신해서 부패성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6) "판매인"이라는 용어는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부패성 농산물을 장관이 정의한 도매나 임시수량 단위로 사고 파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단, (A)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를 "판매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B) 부패성 농산물의 구매에 대한 송장가격이 역년 기준으로 23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소매를 목적으로 이러한 농산물을 사는 사람을 "판매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C) 감자 이외에 다른 농산물을 재배된 주 내에서 통조림처리 또는 가공처리를 위해 사는 사람의 경우 통조림 제품이나 가공처리제품이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을 위해 선적되더라도 그러한 제품이 냉동 또는 얼음포장이 되지 않는 한 또는 본 조항의 제 4절의 의미로 정의되는 절인 버찌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을 "판매인"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A), (B) 및 (C)절에 의거 "판매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본 법률 제 3조의 조항들에 의거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가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사람을 "판매인"으로 간주한다.

(7) "중개인"이라는 용어는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매주 또는 구매인을 위해서 또는 대신해서 부패성 농산물의 판매와 구매의 교섭을 대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단, 이러한 사람이 매주를 위해서 또는 대신해서 판매교섭을 하는 독립 대리인이고 이러한 사람이 교섭한 농산물의 유일한 판매가 역년 송장가격 기준으로 23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냉동 과일과 채소의 판매일 때 "중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 모든 부패성 농산물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만약 이러한 농산물 또는 이의 제품의 구매 후 운송이 다른 주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 주에서 보내지는 무역통상의 일반적인 부분일 때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기술에 포함되는 경우들과 함께 다른 주에 선적할 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동일한 주 내에서 가공처리가 되지만 가공처리의 결과로 나오는 제품을 다른 주로 선적할 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모두

포함해서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으로 간주한다.

(9) "책임으로 연결된"이라는 용어는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 (A) 조합원으로서나 (B) 기업이나 조합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기업이나 조합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자로서 소속되거나 연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단, 본 법률의 위반으로 이어지는 행위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경우와 위반한 면허소유자나 면허에 종속된 실체에 대해서 명목상 조합원이나 임원이나 이사 또는 지분소유자였거나 또는 위반한 면허소유자나 소유자들의 분신인 면허에 종속된 실체의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0) "고용하다"와 "고용"이라는 용어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소유나 자기고용을 포함해서 보상에 상관없이 면허소유자의 사업행위에 갖는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11) "소매인"이라는 용어는 부패성 농산물을 소매로 파는 판매인을 의미한다.

(12) "식료품 도매인"이라는 용어는 식료품과 관련 잡화(부패성 농산물, 건식료품, 일반상품, 육류, 가금류, 어류, 건강식품, 미용제품 등)에 대한 전품목 도매유통과 재판매 행위를 주로 하는 판매인을 의미한다. 단, 앞 문장에 기술된 사람이라도 만약 다른 식료품이나 관련 비식료품이 아닌 부패성 농산물만의 도매유통과 재판매 행위를 주로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간접 수수료와 비용"이라는 용어는 부패성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모든 판매촉진 비용과 할인 그리고 재화나 재료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한다.(7 U.S.C. 499a)

불공정 행위

2.³항 다음 행위들은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거래에 있어서 또는 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된다.

(1)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수령, 구매, 판매, 선적 및 처리되는 부패성 농산물의 무게측정이나 계수 및 기타 수량결정과 관련해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또는 속이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2) 판매인이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구매되거나 판매되는 부패성 농산물이나 구매되거나 판매되거나 또는 위탁될 것으로 계약된 부패성 농산물에 대해 계약조건에 반해 합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거나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3) 위탁상인이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수령한 부패성 농산물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파괴하는 경우

(4)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위탁상인이 수령한 부패성 농산물이나 판매인이 구매 및 판매하는 부패성 농산물 또는 구매나 판매 또는 위탁될 것으로 계약한 부패성 농산물 또는 중개인이 구매와 판매를 교섭한 부패성 농산

물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사기를 목적으로 거짓성명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농산물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즉각적인 계산과 대금지급을 진정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5(c)항에 의거해서 요구되는 신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단, 이 절은 간접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신의적 제공이나 간청이나 지급 또는 수령을 본 법률에 의거 자체적으로나 자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5)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주간통상 및 외국통상 시에 수령, 선적, 판매 및 판매제공된 부패성 농산물에 대해 특성, 종류, 등급, 품질, 수량, 규격, 포장, 무게, 상태, 성숙도, 원산지, 원산국가, 원산지 등에 관하여 말, 행위, 표시, 스티커, 라벨, 성명 및 행동 등으로 속이는 경우. 단,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은 다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

(A) 본 절에 속하는 모든 조항의 위반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B) 또는 표시나 스티커 또는 라벨과 관련한 본 절의 모든 조항에 대한 위반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장관의 허가 하에 그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절의 (A)와 (B)항에 의거한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위한 공식 소송을 대신해서 2천2백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이때 수령된 범칙금은 미국 재무성에 접수입으로 예치된다. 부패성 농산물과 관련하여 속인 제 1일 면허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해당 위반을 막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본 절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의무가 없다.

(6)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부패성 농산물이 실린 컨테이너나 철도차량에 부착된 카드, 스티커, 검인, 물표 및 기타 정보가 해당 컨테이너나 철도차량에 실린 농산물의 등급이나 품질에 관하여 농산물이 생산된 주나 국가에 관한 연방 또는 주 검사관의 증명서나 문서를 포함하거나 또는 연방 또는 주의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 증명서나 문서를 포함할 때 사기를 목적으로 제거, 변조 또는 위조하는 경우

(7)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검사관의 동의 없이 등급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공식검사 후에 부패성 농산물의 내용물에 대해서 대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체를 직접 하거나 원인을 제공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 단 이것이 품질이 떨어지는 산물에 대한 재분류와 포기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2-1항. (a) 일반사항. 부패성농산물법에 의거해서 정의된 부패성 농산물에 해당(7 U.S.C. 499a(4))

(1) 1937년 농산물유통협정법에 의거한 연방유통명령을 따라야 한다.

- (2) 전통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주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 (3) 이렇게 특정지역에 기반해서 고유성이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 해당 유통명령에 따라 생산자의 기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통해 판매촉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지역이나 주 또는 지방 외에서 생산된 유사한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농산물의 고유이름이나 지역적 명칭을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b) 벌칙. 본 조항의 위반은 부패성농산물법의 제 2조 (4)절과 (5)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7 U.S.C. 499 b(4)와 (5))
- (c) 상환. 본 조항에 의거해서 청구를 제기하는 사람은 본 조항의 집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농무성장관에게 상환을 해야 한다.
- (d) 금지. 농무성장관은 부패성농산물법(7 U.S.C. 499 이하참조)에 의거해 부과된 수수료를 본 조항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려서는 안 된다.
- (e) 규정. 장관은 본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면허

3.4항 면허

(a) 요구면허; 위반에 대한 벌칙. 본 법률이 승인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누구도 당시에 효력이 있고 유효한 면허를 갖지 아니하고는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행위를 어느 때라도 해서는 안 된다. 본 속항의 일부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서 1천2백달러 이하의 벌칙금과 계속 시 하루 당 3백5십달러 이하의 범칙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벌칙금은 미합중국에 귀속되고 미합중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벌칙금을 회복할 수 있다. 본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농무성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해당 위반이 의도적이 아니었고 실수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위반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 발생한 수수료와 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한 3백5십 달러 이하를 추가로 납입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정상적 면허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미합중국의 재무성에 예치되어야 한다.

(b) 면허의 신청과 수수료

(1) 면허신청. 면허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장관은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 면허수수료. (1)절에 의거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본 법률과 농산물 파괴와 폐기처분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3일에 승인된 법률(7 U.S.C. 491-497)을 이행하기 위해 합당하게 예상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하다고 장관이 결정한 개별 면허 수수료와 합산 면허 수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 이후 면허소유자는 연별 또는 장관이 정하는 일년 이상의 기간마다 면허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장관은 적절한 면허갱신 기

간을 결정할 때 수입금을 고려해야 한다. 장관은 면허 수수료의 결정과 변경을 미합중국 법규 5조 553항에 의거한 법률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단, 장관은 (3)절과 (4)절에 의거해서는 판매인들인 소매인과 식료품 도매인에 대해서 요구되는 수수료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1995년 11월 15일까지 장관이 규칙에 의해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는 면허소유자당 연간 4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이 결정한 대로 개별 면허수수료는 연 5백5십 달러로 하고 신청자가 아홉 군데를 운영하는 사업시설이 있는 경우 초과 지점이나 시설 당 2백 달러를 추가시킨다. 본 절에 의거해서 장관이 정한 면허 수수료의 증액은 장관이 이러한 증액이 없이는 해당 증액이 효력을 발생하는 회계 연도의 말에 남을 기금이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해 예상되는 예산의 25퍼센트보다 적을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1995년 11월 15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어떠한 면허 수수료 증액도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3) 판매인인 소매인과 식료품 도매인에 대한 1회 수수료. 1995년 11월 15일부터 3년 동안 본 조항에 의거해서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소매인이나 식료품 도매인은 첫 신청을 한 해에 면허갱신을 위해 (4)절의 (A)와 (B) 그리고 (C) 속절들에 의거해서 요구되는 면허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 본 조항에 의거해서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소매인이나 식료품 도매인은 1백 달러에 달하는 운영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양 경우에서 본 절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납입하는 소매인이나 식료품 도매인에 대해서 다음 해부터는 면허갱신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판매인인 소매인과 식료품 도매인에 대한 연간 수수료의 점차적 감소. 1995년 11월 15자로 본 조항에 의거해서 면허를 소유한 소매인이나 식료품 도매인의 면허갱신을 위한 납입은 다음 일정에 따른다.

(A) 1995년 11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갱신일이 오는 면허소유자는 1995년 11월 15일 이전에 본 속항에 의거해서 효력을 갖는 갱신수수료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갱신수수료(합산 납입한도 4천 달러의 조건으로)로 납입해야 한다.

(B) (A) 속항의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일이 오는 면허소유자는 (A) 속항에 의거해서 면허소유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수수료로 납입해야 한다.

(C) (B) 속항의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일이 오는 면허소유자는 (A) 속항에 의거해서 면허소유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수수료로 납입해야 한다.

(D) 1995년 11월 15일부터 3년이 지나서 면허소유자가 면허 갱신을 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내지 아니 한다.

(5) 부패성농산물법 기금. 모아진 수수료는 “부패성농산물법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회계 연도의 제한 없이 미합중국 재무성에 특별기금으로 예치되고 이 예치금은 본 법률과

위에서 참조된 1927년 3월 3일 승인 법률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장관은 부패성농산물법 기금의 적립금을 보험에 들어 있거나 또는 지급보증이 완전한 이자지급 예금에 투자하거나 또는 자신의 따라 재무성장관을 통해서 정부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을 통해 획득한 이자는 부패성농산물법 기금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 기금에 예치되는 수수료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산관리청 청장이 이전 회계 연도를 위해 기술하고 현재 회계 연도와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해서 추정된 재무제표를 의회에 제출하는 연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c) 상호의 사용. 면허소유자는 추가면허나 새로운 면허 없이 하나 이상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장관은 면허소유자에 의한 해당 상호의 사용이 상행위에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상호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해당 면허소유자가 장관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장관은 이의 통지와 심리기회를 제공한 이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상호가 사용될 경우 상행위에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되면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면허발급

4.5항

(a) 사업권; 종료; 갱신. 신청자가 정해진 수수료를 장관에게 납입하면 본 법률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본 법률의 조항들에 따라 장관이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않는 한 또는 본 법률의 7(d)항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 한 면허소지자가 위탁상인 및/또는 판매인 및/또는 중개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면허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면허는 면허소유자가 요구되는 갱신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갱신신청 수수료(이러한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면허 수수료를 통해 보장되는 1년 이상 기간의 만료 후 갱신기일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단, 면허갱신 신청과 갱신수수료(요구되는 경우)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는 통지문을 적어도 갱신기일 30일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갱신기일까지 갱신수수료(요구되면)를 납입하지 않은 면허소유자는 부패성농산물법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서 3(b)항에서 정한 수수료에 5십달러를 추가로 납입하면 30일 이내에 어느 때라도 면허갱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소유자나 또는 면허소유자가 조합인 경우 어느 한 조합원이 파산자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면허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파산의 정황을 검토해서 이러한 정황이 면허종료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면허소유자의 면허가 종료된다.

(b) 면허발급 거부; 근거. 장관은 면허신청자나 또는 면허신청자와 책임으로 연결된 사람이 8(b)항에 의거해서 면허소지자와의 고용이 금지된 경우 또는 다음 속항에 정의되

는 사람과 과거 또는 현재에 책임으로 연결된 경우라고 판단되면 면허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 (A) 신청일전 2년 이내에 본 법률의 8항의 규정들에 의거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현재 면허가 정지된 사람
- (B) 신청일전 2년 이내에 통지와 심리기회를 받고도 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해서 위반한 사람. 단, 이러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의 면허가 정지된 후에 그 정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C) 신청일전 2년 이내에 농산물 파괴와 폐기처분 방지와 관련하여 1927년 3월 3일 법률(7 U.S.C. 491-497)의 조항들을 위반해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D) 파산의 경우와 7(c)항에 의거한 항소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전 2년 이내에 발급된 배상명령에 대한 납입을 하지 못한 사람

(c) 채권제공 시 면허발급; 채권 없이 3년 후 면허발급; 채권종료의 효과; 금액의 증감; 증가액 납입. 본 속항에 속한 조건들에 의해 면허발급의 자격을 상실한 신청자라도 적용되는 2년 기간이 만료되고 신청인의 사업이 본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는 것과 본 법률의 7(c)항에 의거한 항소권의 적용을 받으면서 면허발급 후 4년 내에 발생하는 거래들에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배상명령에 대해 납입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장관에게 적절한 형식과 금액의 보증채권을 제공하면 장관으로부터 면허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청자가 장관에게 해당 보증채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관의 명령이나 또는 항소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장관은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렇게 제공된 보증채권이 장관의 승인 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종료되면 이러한 종료일로부터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해당 신청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증채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년 동안 새로운 면허의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장관은 채권을 제공한 면허소유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변하면 채권금액의 증가를 요구하거나 감소를 승인할 수 있다. 장관에 의해서 증가된 금액의 채권을 제공하도록 통지를 받은 채권 제공 면허소유자는 장관이 명시한 합당한 시간 내에 채권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면허소유자가 이러한 채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제공될 때까지 면허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장관은 신청자나 또는 신청자와 책임으로 연결된 사람이 8(b)항에 의거해서 면허소지자와의 고용이 금지된 경우 본 속항하의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d) 조사계류 중 면허발급 보류. 장관은 (a) 신청자가 또는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 이의 일반 조합원이 또는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 임원 또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가 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된 성격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신청자가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가와 (b) 또는 신청서에 거짓진술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진술을 담았거나 신청자의 임원이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본 법률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해서 허위나 은폐 또는 누락이 있는 가를 판단할 목적으로 조사서류 중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대한 면허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만약 조사 후에 신청자에게 면허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장관이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면허발급 거부의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리를 열어야 한다. 신청자의 심리 후에도 신청자가 또는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 이의 일반 조합원이 또는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 임원 또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가 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된 성격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신청자나 대리인이 신청서에 거짓진술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진술을 담았거나, 또는 임원이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본 법률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해서 허위나 은폐 또는 누락이 있어 신청자가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관은 해당 신청자에게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e) 면허발급 거부. 장관은 신청자가 또는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 어떠한 일반 조합원이 또는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 임원이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가 신청일전 3년 이내에 파산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을 상실했거나 또는 파산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조합의 일반 조합원이었거나 기업의 임원이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였다는 것과 그러한 파산의 정황이 면허발급 거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자가 장관이 결정한 성질과 금액의 채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자의 사업이 본 법률(7 U.S.C. 499d)에 따라 수행된다는 것을 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신청자에게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

5.6항

(a) 피해액.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해당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액(6(a)(2)항에 의거해 피해를 본 사람이 지출한 처리 수수료 포함)을 완전히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진다.

(b) 배상. 이러한 책임에 대한 조치는 (1) 다음에 명시된 대로 장관에게 청구를 하거나 또는 (2) 합당한 사법권을 갖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존재하는 관습법이나 제정법에 의한 배상을 축소시키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그리고 본 법률의 조항들은 그러한 배상에 추가된다.

(c)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공급자, 판매인 또는 대리인의 편익을 위한 농산물대금과 판매대금에 대한 신탁; 신탁의 보존; 재판관할권

(1) 구매한 부패성 농산물이나 구매 계약된 부패성 농산물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부패성 농산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탁상인

이나 판매인이나 또는 중개인이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담보권 또는 식품이나 기타 제품들의 재고에 관해서 그러한 농산물로부터 파생되는 담보권 또는 그러한 농산물이나 제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나 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임차인에게 지우거나 제공하는 금융거래협정에 의해 부패성 농산물에 관한 거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러한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찾아진다. 본 속항은 부패성 농산물 거래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없애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2)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은 모든 거래에서 수령한 부패성 농산물과 부패성 농산물에서 파생된 모든 식품 재고나 기타 제품 그리고 그러한 농산물이나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이나 판매대금에 대해서 거래에 관여해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자나 판매인 또는 대리인의 편익을 위해서 해당 거래로 발생하는 대금총액을 해당 공급자나 판매인 또는 대리인이 완전한 지급을 받을 때까지 신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공급자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부도처리된 지급채권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업유통법(12 U.S.C. 1141j(a))의 15(a)항에 정의된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 속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공급자나 판매인 또는 대리인은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게 신탁의 혜택을 보존할 것이라는 의향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신탁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서면통지는 다음의 각 조건들에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i) 장관이 공포한 규정에 입각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로 정해진 대금지급 만료일 후 (ii) 거래의 양 당사자가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명백히 동의해서 정한 대금지급 만료일 후 (iii) 공급자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대금지급을 위해 즉시로 제공된 지급채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위탁상인이나 중개인 또는 중개인에게 보내는 서면통지문에는 해당 신탁에 종속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장관이 수립한 대금지급 기간을 따르는 경우와 다른 대금지급 기간을 양 당사자가 명백하게 동의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그러한 동의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하고 지급조건을 송장과 회계장부 그리고 기타 해당 거래 관련 문서들에서 밝혀야 한다.

(4) (3)절에 명시된 신탁의 혜택 보존 방법 이외에 면허소유자는 신탁유지의 의향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금청구서나 송장을 사용할 수 있다. 대금청구서나 송장에는 (3)절의 마지막 문장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다음 문구를 문서의 앞면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송장에 열거된 부패성 농산물은 1930년 부패성농산물법(7 U.S.C. 499e(c))의 5(c)항에 의해 승인된 법적 신탁에 따라 판매된다. 본 농산물의 판매자는 대금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본 농산물이나 본 농산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식품 재고나 기타 제품 그리고 본 농산물이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이나 판매대금에 대한 신탁청구권을 유지한다.”

- (5) 미합중국의 몇몇 지방법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별히 심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i) 신탁수혜자가 신탁으로부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ii) 장관이 신탁의 소실을 방지하고 제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7 U.S.C. 499e)

6.7항

청구와 서면통지 그리고 조사.

(a) 배상청구.

(1) 청원; 과정.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 의한 2항의 규정위반에 대해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어느 때라도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한 청원서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청원서에 진술된 사실들이 그러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장관이 판단하면 장관은 청구서의 사본을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게 발송해야 하고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은 장관이 정한 합당한 시간 내에 청구에 배상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2) 신청수수료와 처리수수료. (1)절에 의거해서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각 청원 건수 당 6십 달러의 신청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장관이 (1)절에 의거해서 청원서에 진술된 사실이 추가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장관에게 3백 달러의 처리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장관은 요구되는 처리수수료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게 청구서의 사본을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장관은 본 절에 의거해서 납입된 수수료를 3(b)항에 의해 규정된 부패성농산물법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장관은 미합중국법규 제 5조 5543항에 의거한 규칙제정을 통해 본 절에서 명시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b) 처벌대상이 되는 위반. 해당 주에서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 대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주나 보호령의 공무원 또는 기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본 법률의 이행을 관장하는 농업성에 속한 기관의 피고용인이 아닌)들은 장관이 정한 규칙들에 따라 본 법률에 대한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미합중국 연방이나 주 또는 보호령의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증명서와 5항에 따라 제출된 신탁통지서는 (c)속항에 의거한 조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통지를 성립시킨다. 본 속항에 의거해서 서면통지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은 비밀정보로 간주된다. 그러한 사람의 신분과 통지서에서 그러한 사람의 신분을 가리킬 만한 내용은 제 5조 552항(통상적으로 정보공개법으로 알려짐)에 의거한 공개로부터 해당 항의 (b) (3) 속항에 규정된 대로 특별히 면제를 받는다.

(c) 청구와 통지에 대한 조사

(1) 조사의 개시나 확대. 장관은 (a)속항에 의거한 청구나 (b)속항에 의거한 서면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구나 통지를 조사해야 한

다. 장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의 근거가 된 청구나 통지에 명시된 위반사항 이외에 본 법률의 위반사항이 더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추가 위반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조사를 확대시킬 수 있다.

(2) 장관에 의한 청구서의 발행; 과정. 장관은 본 속항에 의거한 조사를 통해 본 법률의 위반사항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면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장관은 등기우편이나 배달 증명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청구서를 관련된 사람에게 발송하고 청구대상자가 사업을 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심문관 앞에서 심리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청구 피해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를 열지 않아도 되고 청구를 입증하는 증거나 피청구인의 답변을 입증하는 증거는 선서증언이나 공증 사실진술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3) 특정조사에 대한 특별통지 시의 요구사항. 장관이 (b)속항에 의거한 서면통지를 근거해서 조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조사를 확대하는 경우 조사의 존재사실과 조사될 본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성격을 조사대상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장관은 초기 통지를 발송한 후 180일 이내에 (2)절에 의거해서 청구서를 발행할 의도나 조사를 종료할 의도 또는 조사를 계속하거나 확대할 의도를 포함한 조사현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장관은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가 현황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장관이 조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즉각 통지해야 한다.

(d) 청구에 관한 결정. 청구 피해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해서 심리가 열리거나 포기된 후와 청구 피해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 심리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청구에 대해 장관은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2항의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e) 특정청구에 대해서 요구되는 채권.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청구를 한 경우나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위탁받아 미국 내의 거주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청구에 대한 공식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피청구인에게 배상할 변호사 비용과 피청구인의 맞청구에 따라 농무성장관이 청구인에 반해서 나올 수 있는 배상판결액 등을 포함하는 비용지급의 조건에 맞춰 청구금액의 두 배를 채권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장관은 청구인이 채권의 제공 없이 미합중국의 거주자에 의한 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청구인의 채권 제공 의무를 적용시키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7 U.S.C. 499f.)

배상명령

7.8항

(a) 피해액에 대한 농무성장관의 결정. 6항의 (c)절과 (d)절의 규정에 의해서 제기된 청구에 대한 심리 후에 또는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청구에 대한 답

변을 피청구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통지를 정당하게 받은 후에 심리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장관이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본 법률 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배상을 하지 못했으면 이이가 있는 금액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은 다음 결정으로 남겨두고 이이가 없는 금액을 명령서에 정한 날까지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이가 있는 금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이가 없는 금액에 대해서 장관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장관의 명령에 불응;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 명령의 증거효력; 비용과 수수료.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장관의 명령서에 명시된 날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나 기타 이러한 명령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사람은 누구나 명령서 발급 후 3년 이내에 청구 피해액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진술하고 장관의 명령서를 근거로 첨부한 청원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장하는 미합중국 지방법원이나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주 사업 본거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또는 양 당사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법권을 갖는 모든 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들 지방법원의 명령서와 공문서 그리고 절차문서는 미합중국의 어느 곳에서도 진행, 송달 및 회부가 가능하다. 지방법원에서의 이러한 소송은 모든 면에서 여타 피해보상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 장관의 조사결과와 명령은 진술된 사실에 대해 소명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원인은 지방법원에서 드는 비용과 부차적인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자신의 항소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 한 지급할 책임이 없다. 청원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c)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 장관의 배상명령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양 당사자는 명령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전술한 심리가 열린 지역의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단, 6항의 (c)와 (d)절들에 따라 심리가 열리지 않았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심리가 포기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치한 지역의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항소는 항소통지서와 함께 장관이 주관한 이전 절차의 내용과 청원인이 청구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상대방에 대한 증거와 함께 진술한 정부 두통의 청원서를 전술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러한 항소는 배상명령 결정 후 30일 이내에 피항소인이 승소할 경우 피항소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이권 및 비용과 함께 법원의 판결지급액의 조건 하에서 항소인이 자신에 반해서 재정된 배상액의 두 배를 채권으로 서기에게 제출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채권은 현금 또는 적어도 정해진 채권금액에 상당한 시장가치를 갖는 양도성 증권 또는 미합중국 재무성에서 승인한 보증회사 목록에 포함된 보증회사의 보증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법원의 서기는 청원 사본을 농무성장관에게 즉시 전송해야 하고 농무성장관은 전술한 사건의 결정문, 사실인정문, 결론문 및 명령

서의 진본과 함께 본 사건의 심리에서 자신에게 제출된 변론서의 사본을 즉각 준비해서 인증한 다음 전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러한 소송은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여타 피해보상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 사실인정문이나 장관의 명령서는 진술된 사실에 대해 소명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항소인은 전술한 법원에서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고 만약 피항소인이 승소하면 해당 소송의 일부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장관의 결정에 근거가 되고 장관이 보증하는 이러한 청원서와 변론서가 지방법원에 제출되는 즉시로 전술한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 본 법원에서 허용되는 수정사항에 종속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성립시킨다.

(d) 배상명령이나 항소판결의 불응으로 인한 면허정지. 배상명령을 받은 면허소유자가 명령이행을 위해 허용된 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에 여기서 허용된 대로 항소를 했다거나 또는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요구된 대로 완전히 지급했다는 것을 장관에게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후에 명령에 의해 명시된 금액과 함께 지급일 기준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을 장관에게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5일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피항소인이 항소에서 승소하거나 항소가 기각되면 면허의 자동정지가 항소판결일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이 계류중이면 이러한 계류 만료 이전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시킨다.(7 U.S.C. 499g.)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8.9항

(a) 장관의 권한. (1) 장관이 6항에 규정에 따라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거나 (2)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연방법원에서 본 법률의 14(b)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장관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공개하거나 및/또는 명령을 통해서 9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만약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장관은 명령을 통해서 위반자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b) 특정인에 대한 불법적 고용; 채권보증 순응; 무채권 고용승인; 증가액의 납입; 벌칙.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면허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나 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과 책임으로 연결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현재 정지되어 있는 사람
- (2) 심리기회를 제공받고 나서도 2항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한 사람. 단, 이 규정은 이러한 위반을 한 사람의 면허가 이미 정지되어서 그 정지기간이 만료한 경우나 면허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7(c)항에 의거한 항소권에 종속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미지급 배상명령을 받은 사람

장관은 배상액의 미지급 후 어느 때라도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2항의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을 찾아낸 후 1년이 지나면 이러한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단, 면허소유자는 자신의 사업이 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승인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거래들과 관련해서 7(c)항의 항소권에 종속되면서 자신에게 내려 질 수 있는 배상명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장관에게 충분한 형태와 금액을 보증채권으로 제공해서 유지시켜야 한다. 장관은 적용된 처벌명령의 효력일 후 2년이 지나면 보증채권 없이도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장관은 면허소유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변하면 채권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에 의해서 증가된 금액의 채권을 제공하도록 통지를 받은 면허소유자는 장관이 명시한 합당한 시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면허소유자가 이를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고용승인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장관은 30일 내 통지와 심리기회 제공 후에 해당 통지서에 정해진 날 이후에도 면허소유자가 본 조항에 위배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장관은 책임으로 연결된 사람이 본 속항에 규정된 대로 불법적으로 고용된 것이 결정되면 추가로 1년 기간동안 책임으로 연결된 사람에게 고용금지 처분을 연장할 수 있다.

(c) 면허사기. 신청자에게 면허가 발급되고 나서 장관이 이러한 면허취득이 신청서에 거짓 진술이나 오해를 일으킬 진술을 해서 이루어졌거나 신청자의 임원이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에 의한 본 법률의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허위나 은폐 또는 누락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통지와 심리기회 제공 후 전술한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후 전술한 신청자 또는 거짓 진술이나 오해를 일으키는 진술 또는 사실의 허위진술이나 은폐 또는 누락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자에게 면허발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4항의 (b)절에서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된다.

(d) 이행명령. 장관으로부터 발급을 받은 효력이 있고 유효한 면허 없이 해당 사업에 관련하거나 운영하는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은 본 법률의 3(a)항에 규정된 벌칙에 저촉을 받는 이외에도 미합중국은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받아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피고인이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면허 없이 그러한 사업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판결하면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해당 면허 없이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e) 대체 민사벌칙금. 장관이 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2항을 위반했거나 본 조항의 (b)속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장관은 본 조항에 의거해서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대신에 각 위반 거래에 대해서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날 수마다 2천 달러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속항에 의거

한 벌칙금의 부과 시에 장관은 사업의 규모와 피고용인의 수 그리고 위반의 경중과 성격 및 금액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 속항에 의거해서 거두어들인 벌칙금은 미합중국 재무성에 접수입으로 예치되어야 한다.(7 U.S.C. 499h)

회계, 기록

9항. 회계, 기록 및 정관; 면허소유자의 의무; 내용; 의무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모든 위탁상인과 판매인 그리고 중개인은 주식 및 기타 형태를 통한 사업의 실제 소유권을 포함해서 자신의 사업에 관계하는 모든 거래내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장관은 그러한 사실과 정황을 공개할 수 있거나 및/또는 명령을 통해서 9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7 U.S.C. 499i)

명령의 효력일과 확정

10항. 명령; 효력일; 효력계속; 정지, 수정 및 보류; 벌칙. 돈의 지급명령을 제외하고 본 법률에 의거해서 장관이 내린 명령은 명령서에 정해진 대로 10일 넘지 않는 합당한 시간 내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러한 명령이 장관에 의해서 정지되거나 수정되거나 또는 보류되거나 혹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정지되거나 수정되거나 또는 보류되지 않는 한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명령서에서 정해진 경우 특정 기간 동안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정상적으로 내려진 이러한 장관의 명령은 효력적용을 위해 정해진 날 전에 명령을 받은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해당 명령을 보류하거나 또는 명령의 집행이나 시행 또는 이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한 확정성을 갖는다.

이행명령

11항. 이행명령; 주간통상위원회의 명령을 관장하는 이행명령법의 적용.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서 주간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이나 시행이나 이행이나 보류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는데 관련하는 모든 법률들의 규정들은 본 법률에 의거한 장관의 명령과 본 법률의 규정에 종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7 U.S.C. 499k)

일반규정

12항. 규정; 법무성장관에 보고; 절차; 비용. 장관은 민사벌칙금이 부과되는 본 법률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미합중국 법무성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법무성장관은 지체 없이 미합중국의 관할 법원에서 적절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비용과 경비는 미합중국 법원의 경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지급되어

야 한다.(7 U.S.C. 499I.)

청구, 절차, 벌칙

13.10(a)항. 농무성장관의 조사; 회계, 기록 및 정관에 대한 검사; 검사의 결과로 나오는 벌칙. 장관이나 합당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1)본 법률의 의거한 청구의 조사를 위해서 또는 (2) 농산물 검사와 관련해서 소유권, 관리권, 포장자(도매업자), 원산주, 원산국가 및 원산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3) 본 법률의 9항이 지켜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을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이러한 검사의 허가를 거부하면 장관은 그 사실과 정황을 공개하거나 및/또는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검사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장관이나 합당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 법률이 관장하는 모든 부패성 농산물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만약 해당 농산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갖는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이러한 검사의 허가나 허용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장관은 30일 내 통지와 심리기회 제공 후 그 사실과 정황을 공개할 수 있거나 및/또는 9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b) 기록검사; 보증채권; 면허정지. 장관이나 장관으로부터 합당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 법률의 2(4)항의 지급규정의 이행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법률의 6(b)항에 의거한 공식적 처벌절차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모든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을 불시에 검사해야 한다. 또한 장관은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자신의 사업이 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본 법률의 7(c)항에 의거한 항소권에 종속되면서 모든 배상명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장관에게 충분한 형태와 금액의 보증채권을 제공하고 유지하며 때때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만약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채권이 제공되고 유지되며 조정되는 경우 장관은 본 속항에 의거한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회계장부, 기록문서 및 정관의 검사를 1년에 한 번을 넘게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이 해당 검사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해당 보증채권의 제공이나 유지 또는 조정을 거부하면 장관은 그 사실과 정황을 공개하고 명령을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허가가 있을 때까지 또는 해당 보증채권의 제공이나 유지 또는 조정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c) 심리; 소환; 선서; 증인; 증거. 장관이나 또는 장관으로부터 해당 목적을 위해서 지명된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심리개최, 소환장의 서명과 발행, 선서실시, 증인심문, 증거수령 및 소환장을 통한 증인의 참석과 증언의 요구와 본 법률에 의거한 청구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에 대한 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d) 소환불응; 대응; 모독.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장관이나 또는 장관이 임명한 심리관은 증인의 참석과 증언의 요구와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의 제출의 요구를 위해서 미합중국의 모든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심리가 열리고 있는 곳의 재판관할권을 갖는 미합중국의 모든 법원은 소환을 받은 사람이 소환을 무시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해당인이 장관이나 또는 장관을 대리하는 심리관 앞에 출두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회계장부와 기록문서 및 정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구에 관련이 있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면 모독죄로 법원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e) 증언; 회계장부, 기록문서 및 정관의 제출. 장관은 본 법률에 의거해서 계류 중인 모든 청구에 관련한 소송절차나 조사 또는 사건에서 어느 때라도 법적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증언은 장관이 지명해서 선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증언은 증언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지시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인이 장관이나 또는 장관을 대리하는 심리관 앞에 출두해서 증언을 하고 필요한 회계장부, 기록문서 및 정관이 제출의 명령을 요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누구라도 출두해서 선서증언을 하고 회계장부, 기록문서 및 정관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f) 증인의 경비와 여비. 장관이나 또는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나 피고용인 앞에 소환된 증인에게는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증인에게 제공하는 경비와 여비를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선서증언을 하는 증인과 선서증언을 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제공되는 경비를 똑같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7 U.S.C. 499m.)

부패성 농산물의 검사

14.11(a)항. 검사관의 고용; 수수료와 경비; 검사증명서의 증거효력. 장관은 단독으로 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거나 및/또는 한 곳 이상의 재판관할권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고용된 자와 협력하거나 및/또는 검사와 승인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검사관과 협력을 해서 본 법률에 의거한 청구제기에 상관없이 부패성 농산물이 주간이나 외국으로의 선적을 위해서 제공되거나 또는 해당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수령이 되었을 때 장관이 제공되는 검사서비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수료와 경비의 지급을 포함해서 명시한 규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해당 부패성 농산물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급, 품질 및/또는 상태의 검사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면허소지 검사관의 검사 수수료 중에서 검사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에 관해 장관과의 고용계약 조건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합중국 재무성에 접수입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다른 사람과의 협정에 의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의 검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해당 협정의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검

사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행경비와 생활경비를 미합중국 농업성에 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거두어 본 법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에 충당시켜야 한다. 또한, 신선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농무성장관이 발행한 공식 검사증명서의 내용은 미합중국의 모든 공무원과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본 법률에 의거한 모든 소송절차에서 또한 농산물유통법(7 U.S.C. 1 이하참조)에 의거해 계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서 소명된 증거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b) 사기증명서의 발행; 벌칙. 본 법률이나 1927년 3월 3일 증명서발행기관법(7 U.S.C., 491-497항) 또는 농업성의 예산에 기여를 하는 모든 법에 의거해서 발행된 검사증명서에 대해서 거짓으로 제작, 발행, 변조, 모조 및 위조를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제작, 발행, 변조, 모조 및 위조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제작, 발행, 변조, 모조 및 위조의 행위를 자진해서 원조, 원인제공, 알선 및 조력을 하거나 일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사기를 목적으로 가짜, 변조, 변경 및 모조의 증명서를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출판하거나 또는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출판하는 행위에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유죄확정 시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5백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7 U.S.C. 499n.)

규칙과 규정 그리고 명령

15.12항

규칙과 규정 그리고 명령; 공무원과 피고용인의 임명과 해임 그리고 보상; 비용; 지출승인; 상반되는 법령의 폐기. 장관은 본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 그리고 명령을 만들 수 있고, 연방정부, 주정부, 보호령정부, 지구정부 및 기타 영토의 모든 성이나 기관 또는 이러한 성이나 기관 또는 정치단체의 부서 또는 모든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기존의 법과 이해갈등이 없는 공무원과 피고용인에 대한 임명과 해임 그리고 보상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본 법률을 콜럼비아지구나 기타의 지역에서 이행하는데 필요한 콜럼비아지구 밖의 임대, 인쇄, 제본, 전보, 전화, 법률서, 참고 서적, 출판, 가구, 문방구, 사무장비 및 여행에 관련한 모든 비용과 보고서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공급비와 경비를 위해 본 법률의 3(b)항에 의거한 부패성농산물법 기금과 이러한 기금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의회가 책정하는 기금을 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무성이 소유한 자금으로부터 충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본 법률은 본 법률과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연방 또는 주의 다른 법령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무효로 만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들 법령들이 본 법률과 불일치하거나 본 법률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 법령들의 효력과 효과를 유지시키는데 그 의도가 있다.

책임

16항. 대리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면허소유자의 책임. 본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특정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을 위해서 일하거나 고용이 된 모든 대리인이나 임원 또는 기타 사람이 자신의 고용이나 지위의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나 태만 또는 불이행은 모든 경우에서 해당 위탁상인이나 판매인 또는 중개인의 행위나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간주된다.(7 U.S.C. 499p.)

분리성

17항. 규정의 분리성. 본 법률의 특정 규정이나 또는 특정 사람이나 정황에 대한 적용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본 법률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과 다른 사람과 정황에 대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유효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7 U.S.C. 499c.)

18항. 약칭

(P.L. 102-237에 의해 폐지)

예산의 기금예치

19.13항.

당해 연도의 예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수지 불균형이나 본 법률의 3(b)항에서 참조된 법률들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책정된 예산은 부패성농산물법 기금에 예치될 수 있다.(7 U.S.C. 499s.)

자문위원회

20.14항

(a) 농무성장관은 다음 목적들을 위해 부패성농산물법 산업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 (1) 부패성농산물법 프로그램의 효율 증대와 과일채소산업의 다양한 부문간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검토
- (2) 과일채소산업의 각 부문간 상호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
- (3) 부패성농산물법에 관해 장관을 보좌
- (4) (f) 속항에 규정된 대로 하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농업영양입업위원회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

(b) 본 위원회는 재배인, 선적인, 중개인, 수령인, 도매인, 소매인 및 가공처리인 등을 포함해서 과일채소산업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대표하도록 장관이 임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과 10명의 교체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은 본 조항의 제정일 후 180일 이내에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c) 본 자문위원회는 연방자문위원회법(5 U.S.C. App.)을 따라야 한다.

- (d) 장관은 자문위원회에 서기 등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 (e)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미합중국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으로 겸직을 하지 않는 한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본 법률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고향이나 사업 본거지에 떨어져 있으면 미국법령 제5조 5703항에 의거해서 규정된 대로 생활비 명목의 일당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제공받는다.
- (f) (1) 자문위원회는 부패성농산물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 및 기금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 (2) 자문위원회는 검토를 기초로 해서 부패성농산물법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와 농무성장관이 고려할 수 있는 결과를 작성하고 권고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 (3) 자문위원회는 하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그리고 농무성장관에게 검토결과와 이에 기초한 권장사항을 포함하는 임시보고서를 1989년 9월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1990년 5월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g) 자문위원회는 하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그리고 농무성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해산되어야 한다.(7 U.S.C. 499t.)

부 록 2. PACA 원문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7 U.S.C. 499a-499t)

Sec.

[1. Definitions.](#)

[2. Unfair conduct.](#)

[2.1 Products produced in distinct geographic areas.](#)

[3. Licenses.](#)

- (a) License required; penalties for violations.
- (b) Application and fees for licenses.
- (c) Use of trade names.

[4. Issuance of license.](#)

- (a) Authority to do business; termination; renewal.
- (b) Refusal of license; grounds.
- (c) Issuance of license upon furnishing bond; issuance after three years without bond; effect of termination of bond; increase or decrease in amount; payment of increase.
- (d) Withholding license pending investigation.
- (e) Refusal of license.

[5. Liability to persons injured.](#)

- (a) Amount of damages.
- (b) Remedies.
- (c) Trust on commodities and sales proceeds for benefit of unpaid suppliers, sellers, or agents; preservation of trust; jurisdiction of courts.

[6. Complaints, written notifications, and investigations.](#)

- (a) Reparation complaints.
- (b) Disciplinary violations.
- (c) Investigations of complaints and notifications.
- (d) Decisions on complaints.
- (e) Bond required for certain complaints.

[7. Reparation order.](#)

- (a) Determination by Secretary of Agriculture of amount of damages; order for payment.

(b) Failure to comply with order of Secretary; suit to enforce liability; order as evidence; costs and fees.

(c) Appeal from reparation order; proceedings.

(d) Suspension of license for failure to obey reparation order of appeal.

8. Grounds for suspension or revocation of license.

(a) Authority of Secretary.

(b) Unlawful employment of certain persons; restrictions; bond assuring compliance; approval of employment without bond; change in amount of bond; payment of increased amount; penalties.

(c) Fraud in procurement.

(d) Injunction.

(e) Alternative civil penalties.

9.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duty of licensees to keep; contents; suspension of license for violation of duty.

10. Orders; effective date; continuance in force; suspension, modification and setting aside; penalty.

11. Injunctions; application of injunction laws governing orders of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12. Violations; report to Attorney General; proceedings; costs.

13. Complaints; procedure, penalties, etc.

(a) Investigation by Secretary of Agriculture; inspection of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penalty for refusing inspection.

(b) Inspection of records; surety bond; suspension of license.

(c) Hearing; subpoenas; oaths; witnesses; evidence.

(d) Disobedience to subpoenas; remedies; contempt.

(e) Dispositions; production of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f) Fees and mileage of witnesses.

14. Inspection of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 Employment of inspectors; fees and expenses; inspection certificate as evidence.

(b) Issuance of fraudulent certificates; penalties.

15.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appointment, removal and compens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expenditures;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brogation of inconsistent statutes.

16. Liability of licensees for acts and omissions of agents.

[17. Separability of provisions.](#)

[18. Short title.](#)

[19. Depositing appropriations in fund.](#)

[20. Advisory Committee](#)

AN ACT To suppress unfair and fraudulent practices in the marketing of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i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when used in this Act—

[SEC. 1.](#)²

SHORT TITLE AND DEFINITIONS.

(a)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b)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Act:

(1) The term "person" includes individuals, partnerships, corporations, and associations.

(2) The term "Secretary" mean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3) The term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means commerce between any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ny place outside thereof; or between points within the same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but through any place outside thereof; or within the District of Columbia.

(4) The term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ether or not frozen or packed in ice: Fresh fruits and fresh vegetables of every kind and character; and

(B) Includes cherries in brine as defined by th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trade usages.

(5) The term "commission merchant" means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receiving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for sale, on commission, or for or on behalf of

another.

(6) The term "dealer" means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buying or selling in wholesale or jobbing quantities, as defined by the Secretary,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except that (A) no producer shall be considered as a "dealer" in respect to sales of any such commodity of his own raising; (B) no person buying any such commodity solely for sale at retail shall be considered as a "dealer" until the invoice cost of his purchases of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in any calendar year are in excess of \$230,000; and (C) no person buying any commodity other than potatoes for canning and/or processing within the State where grown shall be considered a "dealer" whether or not the canned or processed product is to be shipp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unless such product is frozen or packed in ice, or consists of cherries in brine,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4) of this section. Any person not considered as a "dealer" under clauses (A), (B), and (C) may elect to secure a license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 of this Act, and in such case and while the license is in effect such person shall be considered as a "dealer."

(7) The term "broker" means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negotiating sales and purchases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for or on behalf of the vendor or the purchaser, respectively, except that no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broker" if such person is an independent agent negotiating sales for and on behalf of the vendor and if the only sales of such commodities negotiated by such person are sales of frozen fruits and vegetables having an invoice value not in excess of \$230,000 in any calendar year.

(8) A transaction in respect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shall be consider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if such commodity is part of that current of commerce usual in the trade in that commodity whereby such commodity and/or the products of such commodity are sent from one Stat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y will end their transit, after purchase, in another, including, in addition to cases within the above general description, all cases where sale is either for shipment to another State, or for processing within the State and the shipment outside the State of the products resulting from such processing. Commodities normally in such

current of commerce shall not be considered out of such commerce through resort being had to any means or device intended to remove transactions in respect thereto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ct.

(9) The term "responsibly connected" means affiliated or connected with a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as (A) partner in a partnership, or (B) officer, director, or holder of more than 10 per centum of the outstanding stock of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A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responsibly connected if the person demonstrate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was not actively involved in the activities resulting in a violation of this Act and that the person either was only nominally a partner, officer, director, or shareholder of a violating licensee or entity subject to license or was not an owner of a violating licensee or entity subject to license which was the alter ego of its owners.

(10) The terms "employ" and "employment" mean any affiliation of any person with the business operations of a licensee, with or without compensation, including ownership or self-employment.

(11) The term "retailer" means a person that is a dealer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t retail.

(12) The term "grocery wholesaler" means a person that is a dealer primarily engaged in the full-line wholesale distribution and resale of grocery and related nonfood items (such as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dry groceries, general merchandise, meat, poultry, and seafood, and health and beauty care items) to retailers. However, such term does not include a person describ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f the person is primarily engaged in the wholesale distribution and resale of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rather than other grocery and related nonfood items.

(13) The term "collateral fees and expenses" means any promotional allowances, rebates, service or materials fees paid or provided,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distribution or marketing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7 U.S.C. 499a.)

UNFAIR CONDUCT

[SEC. 2.3](#) It shall be unlawful in or in connection with any transaction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1) Fo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to engage in or use any unfair, unreasonable, discriminatory, or deceptive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weighing, counting, or in any way determining the quantity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received, bought, sold, shipped, or handl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2) For any dealer to reject or fail to deliv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without reasonable cause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bought or sold or contracted to be bought, sold, or consign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such dealer.

(3) For any commission merchant to discard, dump, or destroy without reasonable cause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received by such commission merchant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4) Fo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to make, for a fraudulent purpose,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any transaction involving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which is receiv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such commission merchant, or bought or sold, or contracted to be bought, sold, or consigned, in such commerce by such dealer, or the purchase or sale of which in such commerce is negotiated by such broker; or to fail or refuse truly and correctly to account and make full payment promptly in respect of any transaction in any such commodity to the person with whom such transaction is had; or to fail, without reasonable cause, to perform any specification or duty, express or implied, arising out of any undertaking in connection with any such transaction; or to fail to maintain the trust as required under section 5(c). However, this paragraph shall not be considered to make the good faith offer, solicitation, payment, or receipt of collateral fees and expenses, in and of itself, unlawful under this Act.

(5) Fo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to misrepresent by word, act, mark, stencil, label, statement, or deed, the character, kind, grade, quality, quantity, size, pack, weight, condition, degree of maturity, or State, country, or region of origin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received, shipped, sold, or offered to be sol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Howeve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ho has

violated

(A) any provision of this paragraph may, with the consent of the Secretary, admit the violation or violations; or

(B) any provision of this paragraph relating to a misrepresentation by mark, stencil, or label shall be permitted by the Secretary to admit the violation or violations if such violation or violations are not repeated or flagrant; and pay, in the case of a violation under either clause (A) or (B) of this paragraph, a monetary penalty not to exceed \$2,200 in lieu of a formal proceeding for the suspension or revocation of license, any payment so made to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s miscellaneous receipts. A person other than the first licensee handling misbranded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 violation of this paragraph by reason of the conduct of another if the person did not have knowledge of the violation or lacked the ability to correct the violation.

(6) Fo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for a fraudulent purpose, to remove, alter, or tamper with any card, stencil, stamp, tag, or other notice placed upon any container or railroad car containing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if such card, stencil, stamp, tag, or other notice contains a certificate or statement under authority of any Federal or State inspector or in compliance with any Federal or State law or regulation as to the grade or quality of the commodity contained in such container or railroad car or the State or country in which such commodity was produced.

(7) Fo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ithout the consent of an inspector, to make, cause, or permit to be made any change by way of substitution or otherwise in the contents of a load or lot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fter it has been officially inspected for grading and certification, but this shall not prohibit re-sorting and discarding inferior produce. (7 U.S.C. 499b)

PRODUCTS PRODUCED IN DISTINCT GEOGRAPHIC AREAS

SEC. 2-1. (a) IN GENERAL. In the case of a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s defined under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7 U.S.C. 499a(4))

(1) Subject to a Federal marketing order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or 1937 (7 U.S.C. 601 et seq.):

(2) traditionally identified as being produced in a distinct geographic area, State, or region: and

(3) the unique identity, based on such distinct geographic area, of which has been promoted with funds collected through producer contributions pursuant to such a marketing order, no person may use the unique name or geographical designation of such commodity to promote the sale of a similar commodity produced outside such area, State, or region.

(b) PENALTIES.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paragraphs (4) and (5) of section 2 of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7 U.S.C. 499 b(4) and (5)).

(c) REIMBURSEMENT. A person bringing a complaint under this section shall reimburse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for any and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section.

(d) PROHIBITION.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not increase any fees charged under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7 U.S.C.499 et seq.) to offset cos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is section.

(e) REGULATIONS. The Secretary shall promulgate regulation to carry out this section.

LICENSES

[SEC. 3.4](#)

LICENSES.

(a) LICENSE REQUIRED; PENALTIES FOR VIOLATIONS. After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approval of this Act, no person shall at any time carry on the business of a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ithout a license valid and effective at such time. Any person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subsection shall be liable to a penalty of not more than \$1,200 for each such offense and not more than \$350 for each day it continues, which shall accrue to the United States and may be recovered in a civil suit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Any person violating this provision may, upon a showing satisfactory to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that such violation was not willful but was due to inadvertence, be permitted by the Secretary, or such representative, to settle his liability in the matter by the payment of the fees due for the period covered by such violation and an additional sum, not in excess of \$350, to be fixed by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Such payment shall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ame manner as regular license fees.

(b) APPLICATION AND FEES FOR LICENSES.

(1) APPLICATION FOR LICENSE. Any person desiring any such license shall make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The Secretary may by regulation prescribe the information to be contained in such application and to be furnished thereafter.

(2) LICENSE FEES. Upon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applicant shall pay such license fees, both individually and in the aggregate, as the Secretary determines necessary to meet the reasonably anticipated expenses for administering this Act and the Act to prevent the destruction or dumping of farm produce, approved March 3, 1927 (7 U.S.C. 491-497). Thereafter, the licensee shall pay such license fees annually or at such longer interval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The Secretary shall take due account of savings to the program when determining an appropriate interval for renewal of licenses.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nd alter license fees only by rulemaking under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except that the Secretary may not alter the fees required under paragraph (3) or (4) for retailers and grocery wholesalers that are dealers. Effective on November 15, 1995, and until such time as the Secretary alters such fees by rule, an individual license fee shall equal \$550 per year, plus \$200 for each branch or additional business facility operated by the applicant in excess of nine such facilities,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subject to an annual aggregate limit of \$4,000 per licensee. Any increase in license fe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take effect unless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without such increase, the funds on hand as of the end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increase takes effect will be less than 25 percent of the projected budget to administer such Acts for the next fiscal year. In no case may a license fee increase by the Secretary take effect before the end

of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on November 15, 1995.

(3) ONE-TIME FEE FOR RETAILERS AND GROCERY WHOLESALERS THAT ARE DEALERS. During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on November 15, 1995, a retailer or grocery wholesaler making an initial application for a license under this section shall pay the license fee required under subparagraph (A), (B), or (C) of paragraph (4) for license renewals in the year in which the initial application is made. After the end of such period, a retailer or grocery wholesaler making an initial application for a license under this section shall pay an administrative fee equal to \$100. In either case, a retailer or grocery wholesaler paying a fee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fee for renewal of the license for subsequent years.

(4) GRADUAL ELIMINATION OF ANNUAL FEES FOR RETAILERS AND GROCERY WHOLESALERS THAT ARE DEALERS. In the case of a retailer or grocery wholesaler that holds a license under this section as of November 15, 1995, payments for the renewal of the license shall be made pursuant to the following schedule:

(A) For anniversary dates occurring during the one-year period beginning on November 15, 1995, the licensee shall pay a renewal fee in an amount equal to 100 percent of the applicable renewal fee (subject to the \$4,000 aggregate limit on such payments) in effect under this subsection on the day before November 15, 1995.

(B) For anniversary dates occurring during the one-year period beginning at the end of the period in subparagraph (A), the licensee shall pay a renewal fee in an amount equal to 75 percent of the amount paid by the licensee under subparagraph (A).

(C) For anniversary dates occurring during the one-year period beginning at the end of the period in subparagraph (B), the licensee shall pay a renewal fee in an amount equal to 50 percent of the amount paid by the licensee under subparagraph (A).

(D) After the end of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on November 15, 1995, the licensee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fee if the licensee seeks renewal of the license.

(5)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Such fee, when collected, shall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s a special fund, without fiscal year limitation, to be designated as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which shall be available for all expenses necessary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and the Act approved March 3, 1927, referred to above. Any reserve funds in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may be invested by the Secretary in insured or fully-collateralized interest-bearing accounts or,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United States Government debt instruments. Any interest earned on such reserve funds shall be credited to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and shall be available for the same purposes as the fees deposited in such fund. Financial statements prescribed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or the last completed fiscal year, and as estimated for the current and ensuing fiscal years, shall be included in the budget as submitted to the Congress annually.

(c) USE OF TRADE NAMES. A licensee may conduct business in more than one trade name or change the name under which business is conducted without requiring an additional or new license. The Secretary may disapprove the use of a trade name if, in his opinion, the use of the trade name by the licensee would be deceptive, misleading, or confusing to the trade, and the Secretary may,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a hearing, suspend for a period not to exceed ninety days the license of any licensee who continues to use a trade name which the Secretary has disapproved for use by such licensee. The Secretary may refuse to issue a license to an applicant if he finds that the trade name in which the applicant proposes to do business would be deceptive, misleading, or confusing to the trade if used by such applicant. (7 U.S.C. 499c.)

ISSUANCE OF LICENSES

SEC. 4.5

(a) AUTHORITY TO DO BUSINESS; TERMINATION; RENEWAL. Whenever an applicant has paid the prescribed fee the Secretary, except as provided elsewhere in this Act, shall issue to such applicant a license, which shall entitle

the licensee to do business as a commission merchant and/or dealer and/or broker unless and until it is suspended or revoked by th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is automatically suspended under section 7(d) of this Act, but said license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on the anniversary date of the license at the end of the annual or multiyear period covered by the license fee unless the licensee submits the required renewal application and pays the applicable renewal fee (if such fee is required): *Provided*, That notice of the necessity of renewing the license and of paying the renewal fee (if such fee is required) shall be mailed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iversary date: *Provided further*, That if the renewal fee (if required) is not paid by the anniversary date the licensee may obtain a renewal of that license at any time within thirty days by paying the fee provided in section 3(b) plus \$50,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provided for by section 3(b): *And provided further*, That the license of any licensee shall terminate upon said licensee, or in case the licensee is a partnership, any partner, being discharged as a bankrupt, unless the Secretary finds upon exa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such bankruptcy, which he shall examine if requested to do so by said licensee, that such circumstances do not warrant such termination.

(b) REFUSAL OF LICENSE; GROUNDS. The Secretary shall refuse to issue a license to an applicant if he finds that the applicant, or any person responsibly connected with the applicant, is prohibited from employment with a licensee under section 8(b) or is a person who, or is or was responsibly connected with a person who

(A) has had his license revok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8 of this Act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or whose license is currently under suspension;

(B)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date of application has been found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to have committed any flagrant or repeated violation of section 2, but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any case in which the license of the person found to have committed such violation was suspended and the suspension period has expired or is not in effect;

(C)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has been found

guilty in a Federal court of having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e Act of March 3, 1927 (7 U.S.C. 491-497),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destruction and dumping of farm produce; or

(D) has failed, except in the case of bankruptcy and subject to his right of appeal under section 7(c), to pay any reparation order issued against him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day of the application.

(c) ISSUANCE OF LICENSE UPON FURNISHING BOND; ISSUANCE AFTER THREE YEARS WITHOUT BOND; EFFECT OF TERMINATION OF BOND; INCREASE OR DECREASE IN AMOUNT; PAYMENT OF INCREASE. Any applicant ineligible for a licens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may, upon the expiration of the two-year period applicable to him, be issued a license by the Secretary if such applicant furnishes a surety bond in the form and amount satisfactory to the Secretary as assurance that his business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that he will pay all reparation orders which may be issued against him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s occurring within four years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license, subject to his right of appeal under section 7(c) of this Act. In the event such applicant does not furnish such a surety bond, the Secretary shall not issue a license to him until three years have elapsed after the date of the applicable order of the Secretary or decision of the court on appeal. If the surety bond so furnished is terminated for any reas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the license shall be automatically canceled as of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and no new license shall be issued to such person during the four-year period without a new surety bond covering the remainder of such period. The Secretary, based on changes in the nature and volume of business conducted by a bonded licensee, may require an increase or authorize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the bond. A bonded licensee who is notified by the Secretary to provide a bond in an increased amount shall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to be specified by the Secretary, and upon failure of the licensee to provide such bond his license shall be automatically suspended until such bond is provided. The Secretary may not issue a license to an applicant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applicant or any person responsibly connected with the applicant is prohibited from employment with a licensee under section 8(b).

(d) WITHHOLDING LICENSE PENDING INVESTIGATION. The Secretary may

withhold the issuance of a license to an applicant, for a period not to exceed thirty days pending an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 whether the applicant is unfit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a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because the applicant, or in case the applicant is a partnership, any general partner, or in case the applicant is a corporation, any officer or holder of more than 10 per centum of the stock, prior to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engaged in any practice of the character prohibited by this Act or was convicted of a felony in any State or Federal court, or (b) whether the application contains any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or involves any misrepresentation, concealment, or withholding of facts respecting any violation of the Act by any officer, agent, or employee of the applicant. If after investigation the Secretary believes that the applicant should be refused a license, the applicant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for hearing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to show cause why the license should not be refused. If after the hearing the Secretary finds that the applicant is unfit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a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because the applicant, or in case the applicant is a partnership, any general partner, or in case the applicant is a corporation, any officer or holder of more than 10 per centum of the stock, prior to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engaged in any practice of the character prohibited by this Act or was convicted of a felony in any State or Federal court, or because the application contains a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made by the applicant or by its representative on its behalf, or involves a misrepresentation, concealment, or withholding of facts respecting any violation of the Act by any officer, agent, or employee, the Secretary may refuse to issue a license to the applicant.

(e) REFUSAL OF LICENSE. The Secretary may refuse to issue a license to an applicant if he finds that the applicant, or in case the applicant is a partnership, any general partner, or in case the applicant is a corporation, any officer or holder of more than 10 per centum of stock, has,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been adjudicated or discharged as a bankrupt, or was a general partner of a partnership or officer or holder of more than 10 per centum of the stock of a corporation adjudicated or discharged as a bankrupt, and if he finds that the circumstances of such bankruptcy warrant such a refusal, unless the applicant furnishes a bond of such nature and amount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r other assurance satisfactory to the Secretary that the

business of the applicant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7 U.S.C. 499d.)

LIABILITY TO PERSONS INJURED

SEC. 5.6

(a) AMOUNT OF DAMAGES. If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violates any provision of section 2 he shall be liable to the person or persons injured thereby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including any handling fee paid by the injured person or persons under section 6(a)(2)) sustained in consequence of such violation.

(b) REMEDIES. Such liability may be enforced either (1) by complaint to the Secretary as hereinafter provided, or (2) by suit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ut this section shall not in any way abridge or alter the remedies now existing at common law or by statute, and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e in addition to such remedies.

(c) TRUST ON COMMODITIES AND SALES PROCEEDS FOR BENEFIT OF UNPAID SUPPLIERS, SELLERS, OR AGENTS; PRESERVATION OF TRUST; JURISDICTION OF COURTS.

(1) It is hereby found that a burden on commerce in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is caused by financing arrangements under which commission merchants, dealers, or brokers, who have not made payment for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purchased, contracted to be purchased, or otherwise handled by them on behalf of another person, encumber or give lenders a security interest in such commodities, or on inventories of food or other products derived from such commodities, and any receivables or proceeds from the sale of such commodities or products, and that such arrangements ar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This subsection is intended to remedy such burden on commerce in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2)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received by a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in all transactions, and all inventories of food or other products derived from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any receivables or proceeds from the sale of such commodities or products, shall be held by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in trust for the benefit of all

unpaid suppliers or sellers of such commodities or agent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until full payment of the sums owing in connection with such transactions has been received by such unpaid suppliers, sellers, or agents. Payment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if the supplier, seller, or agent receives a payment instrument which is dishonored.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transactions between a cooperative association as defined in section 15(a) of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12 U.S.C. 1141j(a)), and its members.

(3) The unpaid supplier, seller, or agent shall lose the benefits of such trust unless such person has given written notice of intent to preserve the benefits of the trust to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ithin thirty calendar days (i) after expiration of the time prescribed by which payment must be made, as set forth in regulations issued by the Secretary, (ii) after expiration of such other time by which payment must be made, as the parties have expressly agreed to in writing before entering into the transaction, or (iii) after the time the supplier, seller, or agent has received notice that the payment instrument promptly presented for payment has been dishonored. The written notice to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shall set forth information in sufficient detail to identify the transaction subject to the trust. When the parties expressly agree to a payment time period different from that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a copy of any such agreement shall be filed in the records of each party to the transaction and the terms of payment shall be disclosed on invoices, accountings,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the transaction.

(4) In addition to the method of preserving the benefits of the trust specified in paragraph (3), a licensee may use ordinary and usual billing or invoice statements to provide notice of the licensee's intent to preserve the trust. The bill or invoice statement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3) and contain on the face of the statement the following: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listed on this invoice are sold subject to the statutory trust authorized by section 5(c) of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7 U.S.C. 499e(c)). The seller of these commodities retains a trust claim over these commodities, all inventories of food or other products derived from these commodities, and any receivables or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se commodities until full

payment is received."

(5) The several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re vested with jurisdiction specifically to entertain (i) actions by trust beneficiaries to enforce payment from the trust, and (ii) actions by the Secretary to prevent and restrain dissipation of the trust. (7 U.S.C. 499e)

SEC. 6.7

COMPLAINTS, WRITTEN NOTIFICATIONS, AND INVESTIGATIONS.

(a) REPARATION COMPLAINTS.

(1) PETITION; PROCESS. Any person complaining of any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section 2 by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may, at any time within nine months after the cause of action accrues, apply to the Secretary by petition, which shall briefly state the facts, where upon, if,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the facts therein contained warrant such action, a copy of the complaint thus made shall be forwarded by the Secretary to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ho shall be called upon to satisfy the complaint, or to answer it in writing, within a reasonable time to be prescribed by the Secretary.

(2) FILING AND HANDLING FEES. A person submitting a petition to the Secretary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a filing fee of \$60 per petition. If the Secretary determines under paragraph (1) that the facts contained in the petition warrant further action, the person or persons submitting the petition shall submit to the Secretary a handling fee of \$300. The Secretary may not forward a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involved until after the Secretary receives the required handling fee. The Secretary shall deposit fees submitted under this paragraph into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provided for by section 3(b). The Secretary may alter the fee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by rulemaking under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b) DISCIPLINARY VIOLATIONS. Any officer or agency of any State or Territory having jurisdiction over commission merchants, dealers, or brokers in such State or Territory and any other interested person (other than an

employee of an agency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dministering this Act) may file, in accordance with rul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a written notification of any alleged violation of this Act by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In addition, any official certificat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States or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rust notices filed pursuant to section 5 shall constitute written no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subsection (c). The identity of any person filing a written notification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identity of such person, and any portion of the notification to the extent that it would indicate the identity of such person, are specifically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section 552 of title 5, (commonly known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s provided in subsection (b)(3) of such section.

(c)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ND NOTIFICATIONS.

(1) COMMENCING OR EXPANDING AN INVESTIGATION. If there appears to be,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reasonable grounds for investigating a complaint made under subsection (a) or a written notification made under subsection (b), the Secretary shall investigate such complaint or notification.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violations of this Act are indicated other than the alleged violations specified in the complaint or notification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the investigation, the Secretary may expand the investigation to include such additional violations.

(2) ISSUANCE OF COMPLAINT BY SECRETARY; PROCESS.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if an investigation under this subsection substantiates the existence of violations of this Act, the Secretary may cause a complaint to be issued. The Secretary shall have the complaint served by registered mail or certified mail or otherwise on the person concerned and afford such person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thereon before a duly authorized examiner of the Secretary in any place in which the subject of the complaint is engaged in business. However, in complaints wherein the amount claimed as damages does not exceed \$30,000, a hearing need not be held and proof in support of the complaint and in support of respondent's answer may be supplied in the form of depositions or verified statements of fact.

(3) SPECIAL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CERTAIN

INVESTIGATIONS. Whenever the Secretary initiates an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a written notification made under subsection (b), or expands such an investigation, the Secretary shall promptly notify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nature of the alleged violations of this Act to be investigated.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providing the initial notification, the Secretary shall provid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with notice of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whether the Secretary intends to issue a complaint under paragraph (2), terminate the investigation, or continue or expand the investigation. The Secretary shall provide additional status reports at the request of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shall promptly notify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whenever the Secretary terminates the investigation.

(d) DECISIONS ON COMPLAINTS. After opportunity for hearing on complaints where the damages claimed exceed the sum of \$30,000 has been provided or waived and on complaints where damages claimed do not exceed the sum of \$30,000 not requiring hearing as provided herein, the Secretary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has violated any provision of section 2.

(e) BOND REQUIRED FOR CERTAIN COMPLAINTS. In case a complaint is made by a non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by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whom the claim of a non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assigned, the complainant shall be required, before any formal action is taken on his complaint, to furnish a bond in double the amount of the claim conditioned upon the payment of costs,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for the respondent if the respondent shall prevail, and any reparation award that may be issued by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against the complainant on any counter claim by respondent: *Provided*, That the Secretary shall have authority to waive the furnishing of a bond by a complainant who is a resident of a country which permits the filing of a complaint by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furnishing of a bond. (7 U.S.C. 499f.)

REPARATION ORDER

[SEC. 7.8](#)

(a) DETERMINATION BY SECRETARY OF AGRICULTURE OF AN AMOUNT OF

DAMAGES; ORDER FOR PAYMENT. If after a hearing on a complaint made by any person under section 6, or without hearing as provided in section 6, of paragraphs (c) and (d), or upon failure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o answer a complaint duly served within the time prescribed, or to appear at a hearing after being duly notified,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has violated any provision of section 2 of this Act, he shall, unless the offender has already made reparation to the person complaining,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 if any, to which such person is entitled as a result of such violation and shall make an order directing the offender to pay to such person complaining such amount on or before the date fixed in the order. The Secretary shall order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ho is the losing party to pay the prevailing party, as reparation or additional reparation,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y such hearing. If, after the respondent has filed his answer to the complaint, it appears therein that the respondent has admitted liability for a portion of the amount claimed in the complaint as damages, the Secretary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he shall prescribe, unless the respondent has already made reparation to the person complaining, may issue an order directing the respondent to pay to the complainant the undisputed amount on or before the date fixed in the order, leaving the respondent's liability for the disputed amount for subsequent determination. The remaining disputed amount shall b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procedure as it would have been determined if no order had been issued by the Secretary with respect to the undisputed sum.

(b) FAILURE TO COMPLY WITH ORDER OF SECRETARY; SUIT TO ENFORCE LIABILITY; ORDER AS EVIDENCE; COSTS AND FEES. If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does not pay the reparation award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the Secretary's order, the complainant, or any person for whose benefit such order was made, may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the order file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strict in which he resides or in which is located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or in any State court having general jurisdiction of the parties, a petition setting forth briefly the causes for which he claims damages and the order of the Secretary in the premises. The orders, writs, and processes of the district courts may in these cases run, be served, and be

returnable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Such suit in the district court shall proceed in all respects like other civil suits for damages, except that the findings and orders of the Secretary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facts therein stated, and the petitioner shall not be liable for costs in the district court, nor for costs at any subsequent state of the proceedings, unless they accrue upon his appeal. If the petitioner finally prevails, he shall be allowed a reasonable attorney's fee, to be taxed and collected as a part of the costs of the suit.

(c) APPEAL FROM REPARATION ORDER; PROCEEDINGS. Either party adversely affected by the entry of a reparation order by the Secretary may, within 30 days from and after the date of such order, appeal therefrom to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strict in which said hearing was held: *Provided*, That in cases handled without a hear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c) and (d) of section 6, or in which a hearing has been waiv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ppeal shall be to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is located. Such appeal shall be perfected by the filing with the clerk of said court a notice of appeal, together with a petition in duplicate which shall recite prior proceedings before the Secretary and shall state the grounds upon which petitioner relies to defeat the right of the adverse party to recover the damages claimed, with proof of service thereof upon the adverse party. Such appeal shall not be effective unless within thirty days from and after the date of the reparation order the appellant also files with the clerk a bond in double the amount of the reparation awarded against the appellant conditioned upon the payment of the judgment entered by the court, plus interest and costs,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for the appellee, if the appellee shall prevail. Such bond shall be in the form of cash, negotiable securities having a market value at leas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bond prescribed, or the undertaking of a surety company on the approved list of sureties issued by the Treasury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clerk of court shall immediately forward a copy thereof to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who shall forthwith, prepare, certify, and file in said court a true copy of the Secretary's decision,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and order in said case, together with copies of the pleadings upon which the case was heard and submitted to the Secretary. Such suit in the district court shall be a trial de novo and shall proceed in all respects like other civil suits for

damages, except that the findings of fact and order or orders of the Secretary shall be prima-facie evidence of the facts therein stated. Appellee shall not be liable for costs in said court and if appellee prevails he shall be allowed a reasonable attorney's fee to be taxed and collected as part of his costs. Such petition and pleadings certified by the Secretary upon which decision was made by him shall upon filing in the district court constitute the pleadings upon which said trial de novo shall proceed subject to any amendment allowed in that court.

(d) SUSPENSION OF LICENSE FOR FAILURE TO OBEY REPARATION ORDER OR APPEAL. Unless the licensee against whom a reparation order has been issued show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within 5 day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allowed for compliance with such order that he has either taken an appeal as herein authorized or has made payment in full as required by such order his license shall be suspended automatically at the expiration of such five-day period until he show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that he has paid the amount therein specified with interest thereon to date of payment: *Provided*, That if on the appeal the appellee prevails or if the appeal is dismissed the automatic suspension of license shall become effective at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judgment on the appeal, but if the judgment is stay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suspension shall become effective ten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such stay, unless prior thereto the judgment of the court has been satisfied. (7 U.S.C. 499g.)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LICENSE

SEC. 8.9

(a) AUTHORITY OF SECRETARY. Whenever (1) the Secretary determines, as provided in section 6, that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has violated any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2, or (2)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has been found guilty in a Federal court of having violated section 14(b) of this Act,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such violation and/or, by order, suspend the license of such offender for a period not to exceed ninety days, except that, if the violation is flagrant or repeated, the Secretary may, by order, revoke the license of the offender.

(b) UNLAWFUL EMPLOYMENT OF CERTAIN PERSONS; BOND ASSURING COMPLIANCE; APPROVAL OF EMPLOYMENT WITHOUT BOND; CHANGE IN AMOUNT OF BOND; PAYMENT OF INCREASED AMOUNT; PENALTIES. Except

with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no licensee shall employ any person, or any person who is or has been responsibly connected with any person

- (1) whose license has been revoked or is currently suspended by order of the Secretary;
- (2) who has been found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to have committed any flagrant or repeated violation of section 2, but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any case in which the license of the person found to have committed such violation was suspended and the suspension period has expired or is not in effect; or
- (3) against whom there is an unpaid reparation award issued within two years, subject to his right of appeal under section 7(c).

The Secretary may approve such employment at any time following nonpayment of a reparation award, or after one year following the revocation or finding of flagrant or repeated violation of section 2, if the licensee furnishes and maintains a surety bond in form and amount satisfactory to the Secretary as assurance that such licensee's business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that the licensee will pay all reparation awards, subject to its right of appeal under section 7(c), which may be issued against it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s occurring within four years following the approval. The Secretary may approve employment without a surety bond after the expiration of two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applicable disciplinary order. The Secretary, based on changes in the nature and volume of business conducted by the licensee, may require an increase or authorize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the bond. A licensee who is notified by the Secretary to provide a bond in an increased amount shall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to be specified by the Secretary, and if the licensee fails to do so the approval of employment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The Secretary may, after thirty days' 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suspend or revoke the license of any licensee who, after the date given in such notice, continues to employ any person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may extend the period of employment sanction as to a responsibly connected person for an additional one-year period upon the 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has been unlawfully employed as provided in this subsection.

(c) FRAUD IN PROCUREMENT. If, after a license shall have been issued to an

applicant, the Secretary believes that the license was obtained through a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in the application therefor or through a misrepresentation, concealment, or withholding of facts respecting any violation of the Act by any officer, agent, or employee, he may, after thirty days' 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revoke said license, whereupon no license shall be issued to said applicant or any applicant in which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ch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or misrepresentation, concealment, or withholding of facts is financially interested, except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b) of section 4.

(d) INJUNCTION. In addition to being subject to the penalties provided by section 3(a) of this Act,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ho engages in or operates such business without a valid and effective license from the Secretary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a suit by the United States for an injunction to restrain such defendant from further continuing so to engage in or operate such business, and, if the court shall find that the defendant is continuing to engage in such business without a valid and effective license, the court shall issue an injunction to restrain such defendant from continuing to engage in or to operate such business without such license.

(e) ALTERNATIVE CIVIL PENALTIES. In lieu of suspending or revoking a license under this section when the Secretary determines, as provided by section 6, that a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has violated section 2 o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may assess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2,000 for each violative transaction or each day the violation continues. In assessing the amount of a penalty under this subsection, the Secretar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size of the business,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seriousness, nature, and amount of the violation. Amounts collect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s miscellaneous receipts. (7 U.S.C. 499h.)

ACCOUNTS, RECORDS

SEC. 9.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DUTY OF LICENSEES TO KEEP; CONTENTS; SUSPENSION OF LICENSE FOR VIOLATION OF DUTY. Every commission merchant, dealer, and broker shall keep such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as fully and correctly disclose all transactions involved

in his business, including the true ownership of such business by stockholding or otherwise. If such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are not so kept,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facts and circumstances and/or, by order, suspend the license of the offender for a period not to exceed ninety days. (7 U.S.C. 499i.)

EFFECTIVE DATE AND FINALITY OF ORDER

[SEC. 10.](#) ORDERS; EFFECTIVE DATE; CONTINUANCE IN FORCE; SUSPENSION, MODIFICATION AND SETTING ASIDE; PENALTY. Any order of the Secretary under this Act other than an order for the payment of money shall take effect within such reasonable time, not less than ten days, as is prescribed in the order, and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his further order, or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accordingly as it is prescribed in the order, unless such order is suspended, modified, or set aside by the Secretary or is suspended, modified, or set asid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y such order of the Secretary, if regularly made, shall be final, unless before the date prescribed for its taking effect application is made to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y the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against whom such order is directed to have such order set aside or its enforcement, operation, or execution suspended or restrained. (7 U.S.C. 499j.)

INJUNCTIONS

[SEC. 11.](#) INJUNCTIONS; APPLICATION OF INJUNCTION LAWS GOVERNING ORDERS OF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provisions of all laws relating to the suspending or restraining of the enforcement, operation, or execution, or the setting aside, in whole or in part, of the orders of the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are made applicable to orders of the Secretary under this Act and to any pers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7 U.S.C. 499k.)

GENERAL PROVISIONS

[SEC. 12.](#) VIOLATIONS; REPORT TO ATTORNEY GENERAL; PROCEEDINGS; COSTS. The Secretary may report any violation of this Act for which a civil penalty is provided to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who shall cause appropriate proceedings to be commenced and prosecuted in the proper courts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delay. The costs and expenses of such

proceedings shall be paid out of the appropriation for the expenses of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7 U.S.C. 499l.)

COMPLAINTS, PROCEDURES, PENALTIES

[SEC. 13.10](#) (a) INVESTIGATION BY SECRETARY OF AGRICULTURE; INSPECTION OF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PENALTY FOR REFUSING INSPECTION. The Secretary or his duly authorized agents shall have the right to inspect such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of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as may be material (1) in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under this Act, or (2) to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control, packer, or State, country, or region of origin in connection with commodity inspections, or (3) to ascertain whether section 9 of this Act is being complied with, and if any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refuses to permit such inspection,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facts and circumstances and/or, by order, suspend the license of the offender until permission to make such inspection is given. The Secretary or his duly authorized agents shall have the right to inspect any lot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is Act, and if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having ownership of or control over such lot fails or refuses to authorize or allow such inspection, the Secretary may after thirty days= 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publish the facts and circumstances and/or, by order, suspend the license of the offender for a period not to exceed ninety days.

(b) INSPECTION OF RECORDS; SURETY BOND; SUSPENSION OF LICENSE. The Secretary or the Secretary's duly authorized agents, in order to insure that the prompt payment provision of section 2(4) of this Act is being complied with, shall from time to time inspect the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of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determined in a formal disciplinary proceeding under section 6(b) of this Act to have violated such provision. The Secretary may also require that any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furnish, maintain, and from time to time adjust a surety bond in form and amount satisfactory to the Secretary as assurance that such commission merchant's, dealer's, or broker's business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that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ill pay all reparation awards, subject to its right of appeal under section 7(c) of this Act:

Provided, That if such surety bond is furnished, maintained, and adjusted as required by the Secretary, the Secretary shall not thereafter inspect the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of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under this subsection more than once a year. If any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refuses to permit such inspection or fails or refuses to furnish, maintain, or adjust such surety bond,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facts and circumstances and, by order, suspend the license of the offender until permission to make such inspection is given or such surety bond is furnished, maintained, or adjusted.

(c) HEARINGS; SUBPOENAS; OATHS; WITNESSES; EVIDENCE. The Secretary, or any officer or employee designated by him for such purpose, may hold hearings, sign and issue subpoenas, administer oaths, examine witnesses, receive evidence, and require by subpoena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witnesses and the production of such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as may be material for the determination of any complaint under this Act.

(d) DISOBEDIENCE TO SUBPOENAS; REMEDIES; CONTEMPT. In case of disobedience to a subpoena, the Secretary or any of his examiners may invoke the aid of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requiring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witnesses and the production of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which any hearing is carried on may, in case of contumacy or refusal to obey a subpoena issued to any person, issue an order requiring the person to appear before the Secretary or his examiner or to produce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if so ordered, or to give evidence touching any matter pertinent to any complaint; and any failure to obey such order of the court shall be punished by the court as contempt thereof.

(e) DEPOSITIONS; PRODUCTION OF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The Secretary may order testimony to be taken by deposition in any proceeding or investigation or incident to any complaint pending under this Act at any stage thereof. Such depositions may be taken before any person designated by the Secretary and having power to administer oaths. Such testimony shall be reduced to writing by the person taking the deposition or under his direction and shall then be subscribed by the deponent. Any person may be compelled to appear and depose and to produce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in the same manner as witnesses may be compelled to appear and

testify and produce accounts, records, and memoranda before the Secretary or any of his examiners.

(f) FEES AND MILEAGE OF WITNESSES. Witnesses summoned before the Secretary or any officer or employee designated by him shall be paid the same fees and mileage that are paid witnesses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nesses whose depositions are taken and the persons taking the same shall severally be entitled to the same fees as are paid for like service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7 U.S.C. 499m.)

INSPECTION OF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SEC. 14.11](#) (a) EMPLOYMENT OF INSPECTORS; FEES AND EXPENSES; INSPECTION CERTIFICATE AS EVIDENCE. The Secretary is authorized, independently and in cooperation with other branches of the Government, State, or municipal agencies and/or any person, whether operating in one or more jurisdictions, to employ and/or license inspectors to inspect and certify, without regard to the filing of a complaint under this Act, to any interested person the class, quality, and/or condition of any lot of any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when offered for interstate or foreign shipment or when received at places where the Secretary shall find it practicable to provide such service,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including the payment of such fees and expenses as will be reasonable and as nearly as may be to cover the cost for the service rendered: *Provided*

, That fees for inspections made by a licensed inspector, less the percentage thereof which he is allowed by the term of his contract of employment with the Secretary as compensation for his services, shall be deposited in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s miscellaneous receipts; and fees for inspections made by an inspector acting under a cooperative agreement with a State, municipality, or other person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uch agreement: *Provided further*, That expenses for travel and subsistence incurred by inspectors shall be paid by the applicant for inspection t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be credited to the appropriation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provided further*, That official inspection certificate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issued by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pursuant to any law shall be received by all officers and al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n all proceedings under this Act, and in all transactions

upon contract markets under Commodities Exchange Act (7 U.S.C. 1 et seq.), as prima-faci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 statements therein contained;

(b) ISSUANCE OF FRAUDULENT CERTIFICATES; PENALTIES. Whoever shall falsely make, issue, alter, forge, or counterfeit, or cause or procure to be falsely made, issued, altered, forged, or counterfeited, or willingly aid, cause, procure or assist in, or be a party to the false making, issuing, altering, forging, or counterfeiting of any certificate of inspection issued under authority of this Act, the Produce Agency Act of March 3, 1927 (7 U.S.C., sec. 491-497), or any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or shall utter or publish as true or cause to be uttered or published as true any such false, forged, altered, or counterfeited certificate, for a fraudulent purpose,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upon convic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500 or by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7 U.S.C. 499n.)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SEC. 15.12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APPOINTMENT, REMOVAL, AND COMPENS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EXPENDITURES;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BROGATION OF INCONSISTENT STATUTES. The Secretary may make such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may cooperate with any department or agency of the Government,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or department, agenc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any person; and shall have the power to appoint, remove, and fix the compensation of such officers and employees not in conflict with existing law, and make such expenditures for rent outside the District of Columbia, printing, binding, telegrams, telephones, lawbooks, books of reference, publications, furniture, stationery, office equipment, travel, and other supplies and expenses, including reporting services, as shall be necessary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in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elsewhere, from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provided for by section 3(b) of this Act, and any supplements to such fund, and as may be appropriated for by Congress; and there is hereby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out of any money in the Treasury not otherwise appropriated, such sums as may be necessary for such purposes. This Act shall not abrogate nor nullify any other statute, whether State or Federal, dealing with

the same subjects of this Act; but it is intended that all such statutes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except insofar only as they are inconsistent herewith or repugnant hereto. (7 U.S.C. 499o.)

LIABILITY

[SEC. 16.](#) LIABILITY OF LICENSEES FOR ACTS AND OMISSIONS OF AGENTS. In construing and enforc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act, omission, or failure of any agent, officer, or other person acting for or employed by any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within the scope of his employment or office, shall in every case be deemed the act, omission, or failure of such commission merchant, dealer, or broker as that of such agent, officer, or other person. (7 U.S.C. 499p.)

SEPARABILITY

[SEC. 17.](#) SEPARABILITY OF PROVISIONS. If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the application thereof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is held invalid, the validity of the remainder of the Act and of the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 to other persons and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7 U.S.C. 499q.)

[SEC. 18](#) SHORT TITLE

(Repealed by P.L. 102-237)

DEPOSITING APPROPRIATIONS IN FUND

[SEC. 19.](#)13

Any unexpended balances of appropriations for the current fiscal year, and any subsequent appropriations, made to carry out the Acts referred to in section 3(b) of this Act, may be products deposited in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Fund. (7 U.S.C. 499s.)

13 13 June 10, 1930. c. 436, ' 19, as added June 15, 1950, c. 254 ' Stat 218.

ADVISORY COMMITTEE

[SEC. 20.](#)14

(a)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establish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 (1) review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rogram to ensure increased program efficiency and equitable treatment among the various segments of the fruit and vegetable industry;
- (2) enhanc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all segments of the fruit and vegetable industry;
- (3) advise the Secretary on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rogram; and
- (4) submit a report to the House Committee on Agriculture, the 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and the Secretary, as provided in subsection (f).

(b)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more than twenty members, and ten alternates, appointed by the Secretary, representing the balanced interests of the fruit and vegetable indust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rowers, shippers, brokers, receivers, wholesalers, retailers, and processors. The Secretary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ection.

(c)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5 U.S.C. App.)

(d) The Secretary shall provide the advisory committee with necessary clerical assistance and personnel.

(e)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if not otherwis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i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under this Act,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as authorized under section 5703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f) (1)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review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dministration, operations, and funding of such program.

(2) On the basis of its review,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make findings and develop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by Congress and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with respect to the future operations of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rogram.

(3)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House Committee on Agriculture, the 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and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an interim report not later than September 30, 1989, and a final report no later than May 1, 1990, containing the results of its review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such results.

(g)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cease to exist on the date of its report to the House Committee on Agriculture, the 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and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7 U.S.C. 499t.)

부 록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¹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농안법은 개정 6개월 후 즉, 2007년 6월부터 발효되나 조항에 따라 2009년에 발효되는 사항도 있음(부칙 참조)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라 함은 제 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주산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개정 2004.12.31>)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계약생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7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가격예시)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종묘입식)시기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9조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한 농수산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지역의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③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당해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

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당해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비축사업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 가격하락, 판매·수출·기증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손실 및 수송·포장·방제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4.12.31>

제15조 (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농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개설구역)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허가기준) ①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갖추어 줄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이

사무소(이하 "관이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이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당해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안의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④도매시장법인이 지정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⑤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업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공출자법인)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2(경매사 자격시험) ①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①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출하자 신고) ①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①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공개경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

운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다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할 수 있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③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의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

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40조 (하역업무)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계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계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불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 32조 단서에 따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①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공판장의 거래관계자) ①공판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

조, 제38조·제39조·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 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민간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7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명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 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圃田)경매 또는 선상(船上)경매 등을 할 수 있다.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수협중앙회나 공익법인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

는 시설이용·면적배정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①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예정일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예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 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04.12.31>

제54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31>

제55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용자 특별회계·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삭제 <2004.12.31>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4.12.31>

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31>

④기금을 용자 또는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채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채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

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삭제 <2002.12.30>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용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용자기간은 1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용자등 자금의 사용목적상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제61조 (결산보고) 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62조 (정비기본방침 등)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4조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①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5조 (시장의 개설·정비명령)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시설의 개선·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①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③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2조 (유통정보화의 촉진)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 (재정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①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 (교육훈련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중도매인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 (실태조사 등)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평가의 실시) 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심의회 등의 설치) ①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종사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 (보고)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기장사항,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검사)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7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명령)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기금에서 용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82조 (허가취소 등)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2. 「축산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정한 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7.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

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③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 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과징금)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4조 (청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제8장 벌칙

제86조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3.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제87조 (벌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4항(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명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8조제5항·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내지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0조 (과태료)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4.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공관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223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터"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법) <제6699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채권)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810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록 4. 유통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조항

제2조 (정의)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상일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2]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에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시행규칙>

제5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삭제 <2006.6.30>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법 제8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임대

③법 제8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

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부 록 5. 식품위생법 허가, 신고 관련 조항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5.7.27>

제9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2. 제7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3.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3.4.22, 2005.7.27>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다만, 동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5. 제7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6.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4.22, 2003.12.18, 2005.7.27>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

업을 하는 경우

4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부 록 6. 산지 출하조직 인터뷰 결과

1. 경북 성주 벽진농협

- 기본사항
 - 취급품목: 참외
 - 조직형태: 산지 단위농협

- 자체 설정한 검수기준으로 농가에서 매입할 때 담당자가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록 육안검사라 하더라도 비교적 농관원 기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토록 하고 있음.

- 공동계산시 개별 생산자와 계약하기 보다는 작목반과 생산협약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는데 위약사항 발생시 조합은 관여하지 않고 내부규약에 따라 작목반 내부적으로 처리함.
 - 내부규약에는 개별 생산자가 날인토록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명, 출하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함.
 - 조합과 작목반 간 생산협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협약임.

- 매취가격은 사전에 기준 품위에 대해 예시가격을 공표하고 시세가 변동할 때마다 예시가격도 변경하고 있음.

- 도매시장/공판장의 출하가 더 용이하다는 것은 물량제한이 없고 품위제한도 적기 때문임.

- 일방적 요구의 사례는 하품/비규격은 인수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음.
 - 물량이 모자랄 때는 맞춰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물량이 넘칠 때는 책임을 져주지 않으므로 형평성이 없음.
 - 물량규모도 크지 않아 관내 생산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음.

- 소비자 유통업체 중 일반 업체보다 농협물류 센터에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일반 업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예: 당도 14 brix)하는데 반해 농협물류는 규격만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품질차등에 따른 우대를 받지 못함.
 - 하품은 인수하지 않고 특품은 우대하지 않으므로 출하에 따른 이득이 없음.
 - 출하조직의 입장에서는 품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나 당도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강한 주장을 하지 못함.
 - 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하게 당도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품질에 따른 분쟁이 생길 소지가 적고 차별화에 따른 우대가 가능함.

- 도매시장은 대부분 수의거래(기록상장)형태로 출하하고 있으므로 품위에 대한 관정도 서로 신뢰를 통해 인정받고 있음.

- 미수발생은 일반상인이나 지역 군소 마트들의 경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나 벽진농협은 우수 거래처에만 출하하기 때문에 미수문제는 크지 않음.
 - 심지어 E마트 전속 벤더에게도 공급하지 않는데 E마트는 적기에 결제할지라도 벤더업체의 자금사정이나 결제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업무상 신용거래가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담당자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추진하게되며 관련 내부규정은 명확히 수립된 것이 없음.
 - 그러한 권한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하나 일부 조합은 책임소재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꺼리는 것이 사실임.

- 신용정보만 제공된다면 결제조건이 40일 이상, 가령 80일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얼마든지 거래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신용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우수(대형)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 너무 소형이기 때문에 물류효율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음.

- 필요한 제도는 분쟁해결 장치, 신용정보제공임.
 - 우수 업체와만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은 비교적 적음.
 - 급발주의 경우 예시가격에 따라 매입하지만 정작 납품후 품위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액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음.

2. 경북 의성 조광농산

- 기본사항
 - 취급품목: 사과
 - 조직형태: 영농법인

- 검수는 밭에서 이루어짐.
 - 창고 또는 매입시 검수는 샘플링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차의 가능성이 큼.
 - 밭 검수는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함.
 - 검수자 모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농관원 기준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견해를 보임.

- 검품결과에 대해 농가가 반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자신의 품위를 알고 있음.
 - 농가가 품위관정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하지 않음.
 - 물량 매입은 농가 보유물량 전체를 다 인수하며 일부만 인수하는 형태는 없음.

- 원물확보 방법이 100% 단순매취형태라면 상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저장성 품목은 매취할 수 밖에 없음.
 - 채소류는 단기간에 출하/판매되기 때문에 초출하/만기출하간에 시세차가 크지 않으나 과일 등 저장성 품목은 시세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시세매입/시세판매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음.
 - 공동계산을 택할 경우 엄밀하게 기간별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임.

- 검수시 농관원 기준에 준하여 판정한다면 사전에 가격이 공표될 수도 있으나 품위에 따라 매입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준가격 공표는 큰 의미가 없음.

- 상식적으로 도매시장 공관장은 경매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경매과정에서 특정 상품의 가격을 더 높이려는 행동이 매우 많음.
 - 경매사가 발을 구르거나 손으로 올리라는 시늉을 하는 등 중도매인들에게 여러 신호를 보냄.
 - 중도매인들은 경매사와 공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매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신호를 주지 않는 상품은 중도매인들도 그다지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셈이 됨.
- 도매시장의 경매는 대부분 기록상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산지입장에서는 수의거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 도매법인도 단가가 높을 수록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는데다 사전 협의로 물량을 적절히 분산하지 않을 경우 법인마다 가격이 폭등/폭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함.
- 유통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끊었기 때문에 할인행사는 하고있지 않으나 할인행사 후 행사비용만큼 차후에 만회시켜 준다는 일부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임.
- 수익을 만회시켜 준다는 것은 소비자 가격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득이 되는 것은 없음.
- 유통업체가 자신들의 수익을 손해보면서 행사비용을 만회시켜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임.
-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단절한 이유는 물류효율이 나지 않았기 때문임.
- 물류센터가 있는 업체라도 5톤, 10톤씩 저장해 둘 수 없고 한화, 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들도 매일 납품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음.
- 검수기준도 출하조직의 기준과 거래처의 기준이 상이하여 수시로 의견충돌이 있었음.
- 유통업체의 기준 가격이 가락시장 낙찰가격인데 전국에서 물량이 몰리다보니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유통업체의 매입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빚었음.
- 유통업체의 성향, 신용도 정보가 있다면 특히 지방 마트와 거래시 판단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지방 마트는 부도, 미수채권이 매우 많으며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래개시가 매우 어려움.
- 분쟁발생시 법적 처리가 어려운 것도 그러한 위험한 거래처와는 아예 거래자체를 안하기 때문임.
- 아울러 품목별로 사과/양파는 단가만 조금 낮추면 물량에 관계없이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음.
- 발매기의 경우 대부분 오랜 관계에 따른 구두계약이 많으나 영농법인들은 반드시 서면

- 계약을 통해 매입하고 있음.
- 다만 5천평이상 대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서면계약을 택하고 있음.
 - 인수거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양자가 오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위약은 거의 없고 대금증감 청구도 거의 없음.
 - 법무부에서 대금증감 청구권을 농가에게 인정하겠다는 안에 대해 창고보관상태에서 구두상으로만 심지어 8번까지 판매하는 경우(창고떼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격차를 어느시점에서 결정할 것인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견해임.
-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앞다투어 산지유통 시설을 짓고 있으나 산지 시설은 규모화/집중화해야 교섭력이 생긴다는 주장임.
- 소규모 시설 남발을 방지해야함.

부 록 7. 생산자 설문조사표

청과물유통법 도입을 위한 청과물 유통 실태조사표 (생산자용)

이 설문조사는 부패하기 쉬운 청과물의 유통과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분명한 거래관행을 명확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과물 유통과정상의 거래관행은 대부분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알려져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구매 또는 생산자와 산지수집상의 거래 등 산지유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불명확한 청과물유통의 선진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의 의견이나 신상정보는 오직 연구에만 활용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립니다.

담당자 채성훈 (☎) 02-2077-2816

팩 스 02-2077-2818

메 일 :

2006년 9월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조사대상자

성 명:

주 소 지: 도 군(시)

전화번호:

연 령:

I. 설문조사에 앞서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I-1. 쌀을 제외하고 재배하시는 과일, 채소 품목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품목	작형	경작면적(평)	연간 출하 금액 (천만원)	하우스 여부

주: 작형은 봄배추, 겨울배추 등 품목의 재배시기를 말합니다.

주: 경작면적은 임차 농지 포함 실제 경작면적을 의미합니다.

I-2. 귀 농가의 청과물(과일+채소) 총 출하금액을 100 이라고 할 때 출하처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하처 유형	산지 농협	수집상인·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공판장	소비자 유통업체	기타 ()	계
출하 비율	%	%	%	%	%	100

* 산지 농협은 산지 APC, 산지공판장, 가공공장 등에 직접 출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매 시장 출하를 위해 단순수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집상인에는 영농조합법인 포함됩니다.

* 도매시장에는 소비자공판장, 도시지역 위탁상 및 경매절차가 없는 유사도매시장도 포함됩니다.

* 소비자유통업체란 E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농협유통센터, 외식업체를 포함합니다.

* 기타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 유의사항: 다음의 II에서~V까지 문항은 I-2 문항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하십시오

II. 산지 농협 출하시 문제점

(농협 APC, 산지공판장, 가공공장 등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대도시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 대한 단순 계통출하는 제외함.)

II-1. 산지 농협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품처리가 쉬워서
- ② 다른 판로가 없어서
- ③ 시세를 더 받을 수 있어서
- ④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 ⑤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서
- ⑥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2. 산지 농협에 청과물을 공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II-3. 산지 농협에 출하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혹은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함.
- ②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
- ③ 위탁판매시 최종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음.
- ④ 미수금 발생시 회수 방법이 어려움.
- ⑤ 약속한 물량을 제 때에 인수하지 않음.
- ⑥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⑦ 시세(가격)가 다른 출하처에 비해 떨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큼.
- ⑧ 일정 품위만 요구하여 하품처리가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I. 수집상인, 영농법인에 출하시 문제점

III-1. 수집상인이나 영농법인과 거래시 거래방법별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포전거래 (밭떼기)	계약재배	위탁판매	수확후에 문전판매	기타	계
%	%	%	%	%	100%

III-2. 상인 혹은 영농법인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품처리가 쉬워서
- ② 다른 판로가 없어서
- ③ 시세를 더 받을 수 있어서
- ④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 ⑤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서

- ⑥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Ⅲ-3. 상인이나 영농법인에 청과물을 공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Ⅲ-4. 상인이나 영농법인에 출하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혹은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함.
- ②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
- ③ 위탁판매시 최종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음.
- ④ 미수금 발생시 회수 방법이 어려움.
- ⑤ 약속한 물량을 제 때에 인수하지 않음.
- ⑥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⑦ 시세(가격)가 다른 출하처에 비해 떨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큼.
- ⑧ 일정 품위만 요구하여 하품처리가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 상인과의 포전거래(일명 받떼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Ⅲ-5. 받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전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
- ②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③ 수확작업을 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 ④ 하품처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
- ⑤ 기타(구체적으로:)

Ⅲ-6. 포전거래 시 상대방과 정식 서류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Ⅲ-7. 포전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계약금이 너무 적음
- ② 구두계약에 따른 사후 증빙 곤란
- ③ 포전상인의 신용도 파악 곤란
- ④ 계약내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함.
- ⑤ 계약시기가 너무 늦음 ⑥ 기타

Ⅲ-8. 포전거래로 청과물을 판매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물량 인수 후 대금지급 지연
- ②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이 전액 상인에게 귀속
- ③ 시세하락 시 인수지연, 인수거부, 감액요구, 연락두절
- ④ 근거없는 수확량 시비, 관리부실, 면적부족 문제 제기
- ⑤ 기타

IV. 도시지역 도매시장, 공판장, 위탁상 출하시 문제점

IV-1.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품처리가 쉬워서
- ② 다른 판로가 없어서
- ③ 시세를 더 받을 수 있어서
- ④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 ⑤ 대금을 매일 염려가 없어서
- ⑥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V-2. 도매시장, 공판장에 청과물을 출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IV-3.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혹은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함.
- ②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
- ③ 위탁판매시 최종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음.
- ④ 미수금 발생시 회수 방법이 어려움.
- ⑤ 약속한 물량을 제 때에 인수하지 않음.
- ⑥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⑦ 시세(가격)가 다른 출하처에 비해 떨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큼.
- ⑧ 일정 품위만 요구하여 하품처리가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 소비자 유통업체 출하시 문제점

(소비자 유통업체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슈퍼마켓, 급식업체, 농협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함.)

V-1. 소비자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품처리가 쉬워서
- ② 다른 판로가 없어서
- ③ 시세를 더 받을 수 있어서
- ④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 ⑤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서
- ⑥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2. 소비자 유통업체에 청과물을 공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V-3. 소비자 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혹은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함.
- ②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
- ③ 위탁판매시 최종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음.
- ④ 미수금 발생시 회수 방법이 어려움.
- ⑤ 약속한 물량을 제 때에 인수하지 않음.
- ⑥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⑦ 시세(가격)가 다른 출하처에 비해 떨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큼.
- ⑧ 일정 품위만 요구하여 하품처리가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

VI-1. 귀하가 청과물을 출하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이면서 과도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문 VI-7.로 이동하십시오).

VI-2. 아래 출하처 중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농협 ② 상인·영농법인 ③ 도매시장·공판장
- ④ 소비자유통업체 ⑤ 기타

VI-3. 거래처가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문제들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② 한달에 1번 ③ 두달에 1번
- ④ 6개월에 1번 ⑤ 거의 발생하지 않음

VI-4. 거래처의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의 유형은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 ① 계약된 물량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지 않음
- ② 규격이나 품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함.
- ③ 대금지급 지연
- ④ 약속한 기일 내에 물량을 인수하지 않고 지체
- ⑤ 정당한 근거없이 납품대금을 깎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5. (거래처의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런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양쪽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 ②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
- ③ 제3자의 중재에 따름
- ④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따름
- ⑤ 기타

VI-6. 거래처의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법적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워서
- ② 다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서
- ③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아서
- ④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 ⑤ 기타

VI-7.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 있음 ② 자주 있음 ③ 가끔 있는 편임
- ④ 거의 없음 ⑤ 전혀 없음(문 VI-13으로 이동하십시오.)

VI-8. 가장 자주 발생하는 대금지급 지연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계약 후 시세하락에 따른 인수거부 혹은 감액 요구

- ② 물량 수령 후 대금 지급 지연
- ③ 수량이나 품질을 핑계로 대금 감액 요구
- ④ 판매부진을 이유로 대금지급 지연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9. 대금지급이 지체될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① 전화나 구두로 독촉 ②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발송
- ③ 법률상담을 받음 ④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함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10. 상대방의 계약과기나 계약위반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거나 고소·고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VI-11.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갖추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함
- ② 비용이 많이 듦
- ③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④ 후속 작물을 심을 수 없음
- ⑤ 일손을 뺏김
- ⑥ 기타

VI-12.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출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 ②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 ③ 방법을 잘 몰라서
- ④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⑤ 해 봐야 손해만 날 것 같아서
- ⑥ 기타

VI-13. 청과물의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만들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다소 필요 ③ 보통
- ④ 별로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부 록 8. 산지 출하조직 설문조사표

청과물유통법 도입을 위한 청과물 유통 실태조사표 (출하조직용)

이 설문조사는 부패하기 쉬운 청과물의 유통과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분명한 거래관행을 명확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과물 유통과정상의 거래관행은 대부분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알려져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구매 또는 생산자와 산지수집상의 거래 등 산지유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불명확한 청과물유통의 선진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의 의견이나 신상정보는 오직 연구에만 활용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립니다.

(☎)담당자 채 성 훈 02-2077-2816
팩 스 02-2077-2818
메 일 :

2006년 9월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설문대상자

조합(업체)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I. 설문조사에 앞서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I-1. 귀 업체/조합의 유형은?

- ① 농협
- ②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 ③ 산지유통인/위탁상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2. 귀 업체/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과일, 채소의 주 품목은 무엇입니까?

(_____ , _____ , _____ , _____)

I-3. 곡류 및 축산물을 제외한 과일과 채소류의 연간 총 판매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일류: (_____) 억원, 채소류: (_____) 억원

II. 원물 조달시 검품 실태

II-1. 원물 조달시 검품은 언제 실시합니까?

- ① 수확기에 포전(밭)을 방문하여 검수
- ② 농가 보관 시 방문하여 검수
- ③ 선별장 또는 창고 도착시 검수
- ④ 창고 입고 후 선별할 때마다 수시 검수
- ⑤ 기타

II-2. 검품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경험에 따른 육안검수 ② 농관원 표준규격과 등급 적용
- ③ 자체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 적용
- ④ 품질 등급은 적용하지 않고 수량만 적용 ⑤ 기타

II-3. 검품담당 직원이 공인 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II-4. 검품결과에 대해 농가(공급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심각한 이의제기는 없다
- ② 농가(공급자)와 협의하여 단가 등을 조정한다

- ③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검사한다
- ④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한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5. 금액으로 볼 때 과일과 채소의 원물조달 방법별 비중은 어떻습니까?

매 취			수탁/위탁		계
단순매취 (IV)	서면 계약재배(V)	밭때기/ 포전매매(V)	단순수탁 /위탁(III-1.)	공동계산 (III-7.)	
%	%	%	%	%	100%

* 단순수탁은 조합에 기표는 하지만 개인명의로 출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계산은 조합 명의로 출하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을 의미.

III. 수탁이나 위탁 사업 실태

단순 수탁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III-1. 수탁/위탁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직접 농가에 다니며 출하유도
- ② 농가들이 집하장, 선별장, APC까지 가져오는 물량 중심
- ③ 둘 다 활용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I-2. 단순 수탁/위탁 시에도 농가와 서면으로 출하계약 혹은 출하약정을 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III-3. 농가에게 판매가격, 운송비, 포장비 등 정산 근거를 제공하십니까?

- ① 매번 제공 ② 제공 안함 ③ 요구할 때만 제공 ④ 기타

III-4. 수탁 또는 위탁물량의 대금은 판매 완료 후 얼마 만에 지급하십니까?

- ① 판매 즉시(1일 이내) ② 판매 후 5일 이내
- ③ 판매 후 10일 이내 ④ 판매 후 20일 이내
- ⑤ 판매 후 40일 이내 ⑥ 판매 후 40일 이상

III-5. 수탁 또는 위탁물량의 판매시 미수금이 발생할 때 농가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농가에게 선 지급한다.
- ② 대금 지급을 연기하지만 정산기한을 초과한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한다
- ③ 농가에 대한 대금 지급도 연기하며, 기간 초과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Ⅲ-6. 미수금 발생에 대비해 농가에게 담보나 보증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수탁 사업 중 공동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문항 IV로 이동하십시오).

Ⅲ-7. 공동계산의 물량확보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개인별 구두계약
- ② 개인별 서면계약
- ③ 작목반과의 생산 협약(계약)
- ④ 개인별 계약과 작목반과의 생산협약을 병행
- ⑤ 생산자 자발적 출하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Ⅲ-8. 서면계약 또는 생산협약 시 사전에 합의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총 면적	총 물량	총 금액	개별 단가	수수료	규격 품위	검수 방법	운송 책임	수확 책임	정산 주기	농가별 물량 배분	위약시 처벌

Ⅲ-9. 출하 약정(계약)에 의한 공동계산시 선도금을 지원하십니까?

- ① 지원 ② 지원하지 않음 ③ 부대비용 지원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Ⅲ-10. 생산자의 밭 또는 창고에서 선별장까지 운송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① 개별 생산자 ② 작목반 ③ 농협 ④ 모두 활용 ⑤ 기타

Ⅲ-11. 생산자가 출하의무나 출하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특별한 위약처분이 없음
- ② 위약처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음
- ③ 경고 또는 벌금 부과
- ④ 공동계산 작목반에서 축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V. 사전계약 없는 시가 매취의 경우 사업방식

<주의사항>
 시가로 매취하더라도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는 계약재배에 해당하니 V-1.번부터 응답해 주세요

IV-1. 어떤 경우에 시가매취를 합니까?

- ① 일상적인 판매사업 중 하나로 운영
- ② 고정거래처에 납품할 물량이 모자랄 때
- ③ 시세 폭락으로 산지폐기가 필요할 때
- ④ 시세상승이 예상될 때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V-2. 매취 가격은 어느 시점에 결정하십니까?

- ① 농가의 창고 또는 밭에서 ② 작업장 입고, 품질 검수 후
- ③ 선별라인 통과 후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V-3. 시가 매취 시 매입단가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① 품질과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통보
- ② 품질과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농가와 협의
- ③ 품질과 농가의 제시가격을 참고하여 통보
- ④ 품질과 농가의 제시가격을 참고하여 협의 ⑤ 기타

IV-4. 물량 인수 후 대금은 며칠 만에 지급하십니까?

- ① 즉시 ② 5일 이내 ③ 10일 이내
- ④ 20일 이내 ⑤ 40일 이내 ⑥ 40일 이상

V. 계약재배(밭떼기 포함) 실태

V-1. 계약재배 혹은 밭떼기 시 계약 방식은?

- ① 구두 계약
- ② 서면 계약(V-3.로 이동하세요)

V-2.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면계약이 번거로워서
- ② 구두계약이 관행이라서
- ③ 상대방이 서면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 ④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3. 서면계약시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총 면적	총 물량	총 금액	개별단 가	수수료	규격 및 크기	등급과 품위	검수방법	운송책임	수확책임	정산주기	위약시 처벌

V-4. 계약금은 총 금액의 몇 %를 주십니까?

- ① 주지 않음 ② 10% 미만 ③ 10~20%
- ④ 20~50% ⑤ 50%이상

V-5.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결정 방식은?

- ① 사전 고정가격 방식(V-7.로 이동하세요)
- ② 가격은 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경
- ③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6. (고정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 ① 품질과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농협(영농법인)이나 상인이 결정
- ② 품질과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③ 품질과 농가의 제시가격을 참고하여 협(영농법인)이나 상인이 결정
- ④ 품질과 농가의 제시가격을 참고하여 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7. (고정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시세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 ① 작기별로 가격이 사전에 고정되어 변경 없음
- ② 일정기간별로 시세반영
- ③ 시세가 일정수준을 벗어날 경우 반영
- ④ 수시로 시세 반영
- ⑤ 기타

V-8. 물량 인수 후 대금은 며칠 만에 지급합니까?

- ① 즉시 ② 5일 이내 ③ 10일 이내
- ④ 20일 이내 ⑤ 40일 이내 ⑥ 40일 이상

V-9. 생산자(농민)가 계약서에 명시된 물량, 품위 등 출하의무를 위반하는 빈도는?

- ① 100% 농가가 위반한다 ② 80% - 100% 농가가 위반
- ③ 60% - 80% 농가가 위반 ④ 40% - 60% 농가가 위반
- ⑤ 20% - 40% 농가가 위반 ⑥ 20% 미만의 농가가 위반

V-10. 생산자(농민)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하 물량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 십니까?

- 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 감
- ② 계약금 반환을 요구
- ③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요구
- ④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함
- ⑤ 기타

V-11. 생산자(농민)가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 감
- ② 일단 수취 후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③ 납품 물량의 수취를 거부하고 다시 납품을 받음.
- ④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금 지불을 보류함.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12. 생산자(농민)의 물량 및 품위에 대한 계약위반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십니 까?

- 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 감

- ② 경고는 하지만 다음 계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③ 계약 위반 농가와는 추후에 계약하지 않음.
- ④ 기타(구체적으로:)

VI. 판매시 불안사항

VI-1. 금액기준으로 볼 때 판매처별 매출비중은 어떻습니까?

소비지 도매시장· 공판장	소비지일반 유통업체	농협 소비자유통	가공/급식/외 식업체	소비지 직관	산지공판 및 상인판매	계
%	%	%	%	%	%	100%

- * 도매시장, 공판장은 소비지 도매시장, 공판장, 위탁상에 판매하는 경우
- * 소비지 일반유통업체는 할인점,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 * 농협소비지 유통은 종합유통센터,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에 출하하는 경우
- * 소비지 직관은 직관장 등을 통해 직관하는 경우
- * 산지공판 및 상인판매는 산지에서 공판하거나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경우

VI-2.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품처리가 쉬워서 ② 다른 판로가 없어서
- ③ 시세를 더 받아서 ④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 ⑤ 대금을 매일 염려가 없어서
- ⑥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VI-3. 도매시장, 공판장에 청과물을 출하할 때에도 상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VI-4.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혹은 불안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함.
- ②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
- ③ 위탁판매시 최종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음.
- ④ 미수금 발생시 회수가 어려움.
- ⑤ 약속한 물량을 제 때에 인수하지 않음.
- ⑥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⑦ 시세(가격)가 다른 출하처에 비해 떨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큼.
- ⑧ 일정 품위만 요구하여 하품처리가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5. 귀 업체/조합이 농협 유통센터를 포함해 소비자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비자 유통업체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수퍼마켓, 급식 및 외식업체, 농협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함.)

- ① 하품처리가 쉬워서
- ② 다른 판로가 없어서
- ③ 시세를 더 받을 수 있어서
- ④ 선별이나 출하방법이 편해서
- ⑤ 대금을 매일 염려가 없어서
- ⑥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6. 소비자 유통업체에 청과물을 공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VI-7. 소비자 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가장 큰 문제점 혹은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검수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함.
- ②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
- ③ 위탁판매시 최종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음.
- ④ 미수금 발생시 회수 방법이 어려움.
- ⑤ 약속한 물량을 제 때에 인수하지 않음.
- ⑥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금액을 감액함.
- ⑦ 시세(가격)가 다른 출하처에 비해 떨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큼.
- ⑧ 일정 품위만 요구하여 하품처리가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Ⅶ.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

VII-1. 귀 업체/조합이 청과물을 출하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이면서 과도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Ⅶ-7.로 이동하세요).

Ⅶ-2. 아래 출하처 중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도매시장, 공판장 ② 소비자 일반유통업체
 ③ 소비자 농협판매점 ④ 가공/급식/외식업체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Ⅶ-3. 거래처가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문제들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② 한달에 1번 ③ 두달에 1번
 ④ 6개월에 1번 ⑤ 거의 발생하지 않음

Ⅶ-4. 거래처의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의 유형은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 ① 계약된 물량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지 않음
 ② 규격이나 품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함.
 ③ 대금지급 지연
 ④ 약속한 기일 내에 물량을 인수하지 않고 지체
 ⑤ 정당한 근거없이 납품대금을 깎음.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Ⅶ-5. 그런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양쪽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②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
 ③ 제3자의 중재에 따름
 ④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따름
 ⑤ 기타

Ⅶ-6. 거래처의 계약위반이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법적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워서
 ② 다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서
 ③ 싸워봐야 손해날 것 같아서
 ④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⑤ 기타

VII-7.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 있음 ② 자주 있음 ③ 가끔 있는 편임
- ④ 거의 없음 ⑤ 전혀 없음 (VII-13.으로 이동하세요)

VII-8. 가장 자주 발생하는 대금지급 지연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계약 후 시세하락에 따른 인수거부 혹은 감액 요구
- ② 물량 수령 후 대금 지급 지연
- ③ 수량이나 품질을 핑계로 대금 감액 요구
- ④ 판매부진을 이유로 대금지급 지연
- ⑤ 기타(구체적으로:)

VII-9. 대금지급이 지체될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① 전화나 구두로 독촉
- ②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발송
- ③ 법률상담을 받음
- ④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함
- ⑤ 기타(구체적으로:)

VII-10. 상대방의 계약과기나 계약위반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거나 고소·고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VII-12.로 가세요)

VII-11.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갖추어야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함
- ② 비용이 많이 듦
- ③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④ 후속 작물을 심을 수 없음
- ⑤ 일손을 뺏김
- ⑥ 기타

VII-12.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출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 ②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부 록 9. 소비지 유통업체 설문조사표

청과물유통법 도입을 위한 청과물 유통 실태조사 (소비지용)

이 설문조사는 부패하기 쉬운 청과물의 유통과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분명한 거래관행을 명확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과물 유통과정상의 거래관행은 대부분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알려져 있으며 산지직구매 또는 생산자와 산지수집상의 거래 등 산지유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불명확한 청과물유통의 선진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의 의견이나 신상정보는 오직 연구에만 활용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립니다.

(☎)담당자 채성훈 02-2077-2816
팩스 02-2077-2818

2006년 10월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응답자

업 체 명:
주 소:
담 당 자:
전화번호:

1. 설문조사에 앞서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1-1. 자신의 주된 업태를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 ① 소매업체 ② 가공/외식/급식업체
③ 중도매인 ④ 시장도매인 ⑤ 기타

1-2. 상기 사업장 외에 추가적인 영농법인(농업법인), 중도매인 허가, 시장도매인 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 업체의 총매출액 및 품목별 매출 비율은?

(급식업체는 매입액 기준으로 표기해 주세요.)

	총매출(매입)	농산물	과일	채소
금액(억원)				
%	100%			

* 농산물은 곡류, 축산물, 청과물 모두 포함.

1-4. 매입처별 거래 금액 비율과 거래형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1) 과일류의 경우

항목	농가/작목반	산지농협/연합사업단	영농법인	산지수집상/벤더	중도매인(경매)	도매상/시장도매인	농협종합유통센터	소비지중간상/벤더	계
금액	%	%	%	%	%	%	%		100
형태									
보기	① 구두계약 ② 서면계약 ③ 1회성 수시 매입 ④ 기타								

* 중도매인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상품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도매상을 의미함.

* 도매상 및 시장도매인이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산지에서 조달하여 판매하는 도매상을 의미함.

* 농협종합유통센터는 농협이 운영하는 도소매 복합 유통시설 의미(양재, 창동, 수원, 군위, 대전 등)

2) 채소류의 경우

항목	농가/ 작목반	산지농협/ 연합사 업단	영농인	산지 수집상/ 벤더	중도매 인(경매)	도매상/ 시장 도매인	농협중 합유통 센터	소비자 중간상/ 벤더	계
금액	%	%	%	%	%	%	%		100
형태									
보기	① 구두계약 ② 서면계약 ③ 1회성 수시 매입 ④ 기타								

II. 계약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도매인은 3-1.부터 응답해 주세요.)

2-0. 농산물을 구매하실 때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 중 어느 쪽을 주로 활용하십니까?

- ① 구두계약 ② 서면계약 ③ 둘다 비슷하게 활용

2-1. 품목별로 구두계약이 선호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 ① 배추, 무 등 비저장성 노지채소
 ② 상추, 오이 등 시설채소
 ③ 사과, 배 등 과실류
 ④ 마늘, 고추 등 노지 조미채소
 ⑤ 품목에 따른 차이는 없음

2-1-1. 구두계약을 선호하는 품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면계약이 번거로워서
 ② 구두계약이 관행이라서
 ③ 상대방이 서면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④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⑤ 기타

2-2. 서면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O표해 주세요.

총 면적	총 물량	총 금액	개별 단가	수수료	규격 및 크기	등급과 품위	검수 방법	운송 책임	수확 책임	결제 조건	위약시 처분

2-3. 서면 계약시 계약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개월

(, , ,)

3-6-2. 청과물 매출 중 자체 브랜드(PB) 제품의 매출 비율은?

과일: _____% 채소: _____%

3-6-3.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는 일반 물량에 비해 검수나 관리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합니까?

- ① 매우 엄격함 ② 다소 엄격함 ③ 별 차이 없음
- ④ 다소 낮은 기준을 적용 ⑤ 매우 낮은 기준을 적용

IV. 검수 및 검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1. 물품의 검수 및 검품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 ① 산지 상차시 공급자에 의해
- ② 산지 상차시 구매자에 의해
- ③ 창고/작업장/경매장 도착시 구매자에 의해
- ④ 특별한 검수는 하지 않음
- ⑤ 기타

4-2. 검수의 기준은 무엇을 적용하십니까?

- ① 농관원 표준규격 및 등급
- ② 자체 검수기준 보유
- ③ 자체 기준과 표준등급 혼용
- ④ 경험에 따른 상품성 구분
- ⑤ 기타

4-3. 검수방법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 ① 전체를 포장해체하여 날개 검사
- ② 전체를 포장개봉 후 상단만 검사
- ③ 일부를 포장개봉 후 상단만 검사
- ④ 일부를 포장해체 후 날개 검사
- ⑤ 기타

4-4. 검수결과에 대해 공급자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 있음 ② 자주 있는 편임 ③ 보통
- ④ 가끔 있음 ⑤ 거의 없음

4-5. 그러한 의견 불일치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보십니까?

- ① 공급자의 품질준수 의식 부족 때문
- ② 표준규격 및 등급의 애매모호함 때문
- ③ 수송 중 변질 또는 파손 때문
- ④ 검수자의 전문성 부족 때문
- ⑤ 지나치게 엄격한 검수기준 때문
- ⑥ 기타

4-6. 귀사의 검수기준이나 검수자의 판단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객관적 ② 상당히 객관적 ③ 보통
- ④ 다소 주관적 ⑤ 매우 주관적

4-7. 검수 결과를 공급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심각한 이의제기는 없음 ② 객관적으로 재검사
- ③ 사업자(구매자)의 판정을 그대로 적용
- ④ 공급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 ⑤ 기타

4-8.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가격을 감액하고 매입 ② 반품하고 다른 물량 요구
- ③ 상품성 있는 일부만 입고
- ④ 반송 후 다른 공급자에게 공급요청 ⑤ 기타

5. 대금 결제 및 비용 정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5-1. 구매단가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①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준 ② 전국 상황을 검토하여 협의
- ③ 산지 시세기준 ④ 생산자 제시가격 기준 ⑤ 기타

5-1-1. 구매단가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비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높습니까?

- ① 동일하다
- ② 0-10% 정도 높은 편이다

- ③ 10-20% 정도 높은 편이다.
- ④ 20-30% 정도 높은 편이다.
- ⑤ 30% 이상 높은 편이다.

5-2. 시세변동은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 ① 수시로 바뀐 시세대로 구매
- ② 일정기간별로 반영
- ③ 시세가 일정수준을 넘을 때만 반영
- ④ 거의 고정가격 위주임 ⑤ 기타

5-2-1. ②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정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일

5-2-2. ③에서 일정수준을 넘을 때만 시세를 반영하는 경우 반영 기준은 몇 %
입니까?

(% 변동시)

5-3. 대금 지급은 어떤 조건으로 하십니까?

- ① 출발 전 선금 ② 도착 후 즉시
- ③ 최장 5일 이내 ④ 최장 10일 이내
- ⑤ 최장 20일 이내 ⑥ 최장 40일 이내
- ⑦ 최장 40일 이상

5-3-1. 대금지급이 정해진 기한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 있음 ② 자주 있음 ③ 보통 ④ 가끔 있음
- ⑤ 거의 없음

5-3-2. 대금지급을 위해 담보나 보증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4. 귀사가 거래처에 청과물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매입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4-1. (있다면) 귀사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물류비용 ()
- ② 광고 및 판촉비용 ()
- ③ 검품 비용 ()
- ④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비용 ()
- ⑤ 판매사원 인건비 ()
- ⑥ 포장비용 ()
- ⑦ 기타(구체적으로:)

VI. 분쟁 또는 불만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1. 청과물을 구입할 때 공급처의 계약 위반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 ① 거의 매일 발생 ② 3-4일에 한 번 발생
- ③ 일주일에 1번 ④ 한달에 1번 ⑤ 거의 발생하지 않음

6-2. 공급처의 계약 위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약속한 품위 위반
- ② 약속한 물량 납품 위반
- ③ 약속한 납품 장소 위반
- ④ 납품 일시 미준수
- ⑤ 기타(구체적으로:)

6-3. 공급처의 계약 위반시 처리 방법은?

- ① 명확한 처리방법은 없음
- ② 매입 대금 감액 또는 손실 비용청구
- ③ 해당 물량 반품 또는 입고거절
- ④ 경고 또는 주의를 주되 누적될 경우 계약해지
- ⑤ 기타

6-4. 공급처의 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이 양자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그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주일에 1번 정도
- ② 1달에 1번 정도
- ③ 2-3달에 1번 정도

- ④ 6달에 1번 정도
- ⑤ 거의 발생하지 않음.

6-4-1. 분쟁 발생 시 양자간 협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다?

- ① 마땅한 대책이 없음
- ② 손실을 안고 계약해지
- ③ 제3자의 중재로 조정
- ④ 재산압류, 소송, 고발 등 법적 조치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4-2. 위의 경우 분쟁이 종료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지체로 인한 손실 증가
- ②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곤란
- ③ 양쪽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제3자 부족
- ④ 불명확한 계약 및 거래관행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 ⑤ 기타

6-5. 청과물 공급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실행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5-1. (있다면) 가장 불편했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증거확보가 어려웠음
- ② 법적 절차와 서류가 복잡함
- ③ 비용이 많이 소요됨
- ④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5-2. (없다면) 아래 중 어느 것 때문입니까?

- ① 사회적 여론 때문에
- ② 그렇게 심각한 손해는 아니라서
- ③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④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7. 다음 페이지 보기 중에서 청과물 유통상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필요한지 순위별로 두 개만 골라주십시오.

- ② 하역기계화로 하역비 절감
- ③ 검품시스템,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시스템 확충
- ④ 도매시장 면적 확대로 물류 원활화
- ⑤ 저온저장고 등 품질유지 시설 확충
- ⑥ 유기농산물과 같은 고품질 농산물 확대 취급.
- ⑦ 중도매인의 규모화, 법인화
- ⑧ 시장질서 및 공정거래 확립
- ⑨ 소분포장, 가공 시설 확충
- ⑩ 도매시장 종사자의 의식개혁 및 교육
- ⑪ EDI 등 정보시스템 확충
-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6.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부분을 3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저온저장고 확충
- ② 소분포장 및 가공시설 확충
- ③ 배송장 확보
- ④ 지게차 활동 공간 확보
- ⑤ 구매업체 사무실 확보
- ⑥ 구매업체 휴게 공간 확보
- ⑦ 경매장 확장
- ⑧ 중도매인 점포 확장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7.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농산물의 수급상황을 잘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잘 모르겠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아주 그렇다

7-7-1. 7-7.에서 ①, ②번으로 응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7-8.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평소 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느끼신 문제점 또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_____)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과물 유통법 도입방안 연구

인 쇄 2006. 11

발 행 2006. 11

발행인 원철희

발행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5-19 농협용산별관 5층

전화 02-2077-2816~7 팩스 02-2077-2818

<http://www.newma.re.kr>

인쇄처 신양문화사 02-2275-8115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연구의 내용이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